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 -

- 날짜 : 2014년 3월 6일(목) 오전 10:00~12: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시청역 10번 출구)
- 주최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목 차

- 목차 2
- 일정안내 4
- 들어가며 | | 청소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5**
 - ❖ 십대 ‘밀바닥노동’ 실태조사의 목표와 조사방법 개요 : 배경내 7
- 1부 | | 다시, 십대 ‘밀바닥노동’을 말하다 11**
 - ❖ 십대 ‘밀바닥노동’의 파노라마 - 변화하는 청소년 노동의 오늘 : 배경내 13
- 2부 | | 청소년이 말하는, 십대 ‘밀바닥노동’ 27**
 - ❖ ‘밀바닥 노동’을 도맡아 온 청소년노동자 1
 - 지옥의 문을 열다 : 류일환 29
 - ❖ ‘밀바닥 노동’을 도맡아 온 청소년노동자 2
 - ‘어리고 말 잘 듣는 여자애’의 노동 : 류일환 38
- 3부 | | 은밀하게, 잔혹하게 : 불안정노동, 십대를 포획하다 43**
 - ❖ 더 멀리, 더 빨리, 더 위험하게!
 - 배달대행이라는 신세계의 배반 : 배경내 45
 - ❖ ‘화려한 파티’, 그 감춰진 뒷모습
 - 간접고용과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호텔연회장 서빙 : 권혁태 54
 - ❖ 한번 해보면 안 하고픈 ‘지옥 알바’
 - 위험노동의 일용화, 택배 분류 야간노동 : 이수정 65
 - ❖ 열정과 불안은 불태우라
 - 불안의 일상화, 무급의 장기화, 이벤트업체 노동 : 최은실 73

4부 베일 뒤의 그/녀들 : 십대의 가족배경과 노동 경험의 만남.....	83
❖ 일은 빠세고, '보도'의 유혹은 세다 탈가정 청소년과 노동 : 배경내.....	85
❖ 보이지 않는 음지의 노동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의 절박한 노동 : 김성호.....	94
5부 십대 '밑바닥노동'에 응답하다	103
❖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대안 - 토론 1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5
❖ 공공부조와 노동의 줄다리기 - 토론 2 김윤영(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 청소년의 노동.....	109
❖ 주거권과 노동권의 사이에서 - 토론 3 변미혜(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탈가정 청소년과 노동	112
[메모]	115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 -

일 정 안 내

[1부] 다시, 십대 '밑바닥 노동'을 말하다

- 9:40~10:00 등록
- 10:00~10:20 [영상 보고]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 10:20~10:40 [조사결과 발표]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 변화하는 청소년 노동의 오늘(배경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부] 십대 '밑바닥 노동'에 응답하다

- 10:40~10:55 [토론 1]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대안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10:55~11:10 [토론 2] 공공부조와 노동의 줄다리기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 11:10~11:25 [토론 3] 주거권과 노동권 사이에서 (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11:25~12:00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들어
가며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의 목표와 조사방법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의 목표와 조사방법

* 배경내

1. 무엇을 들을 것인가

청소년노동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밑바닥 노동'이다. 청소년의 존재가 밑바닥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놓인 위치가 밑바닥이라는 의미이다. 청소년노동자가 초저임의 중노동과 위험노동의 열악한 조건에다 '나이'와 '성별'의 위계 속에서 일상적 모욕까지 감수하며 일하고 있음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다. 문제는 알려졌으나,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지난 몇 년 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확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고약해지기도 했다.

2005년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발간을 계기로 출발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노동인권교육의 보급·확산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 간접고용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실태조사(2005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2008년), △ 건강·안전·폭력 경험을 중심에 둔 십대 '밑바닥노동' 실태조사(2009년), △ 배달노동 청소년 실태조사(2011년)를 통해 파악했던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주소는 정책 대안의 번지수를 찾는 주요한 밑자료가 되어 주었다.

2013년, 네트워크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십대 '밑바닥 노동'의 오늘을 다시금 살펴보는 실태 조사를 기획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 동안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한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고민할 때 새롭게 인식해야 할 변화된 지점,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한 지점을 발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기존 노동법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출현했거나 기존 청소년노동 정책이 고려하지 못한 청소년노동자의 삶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전체 실태조사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였다. 청소년노동의 얼굴이 바뀌었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과 정책 과제도 새롭게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아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 ✓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가 축소 또는 변경되면서 어떤 결과들이 빚어지고 있는가
- ✓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부정책도 보강되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수준은 실제 나아졌는가
- ✓ 불안정노동의 확산이라는 노동세계의 변화가 청소년의 삶과 노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가족배경 등은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가

2. 누구를 통해 들을 것인가

조사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구체적 현실을 증언해 줄 육성(肉聲)이 필요했다. 당사자인 청소년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현실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숫자가 아닌 스토리(story)를 듣고 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조사 방식으로 선택되었다.

그리하여 네트워크는 조사 대상으로 꼽힌 영역별 노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녀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함께 해석하며, 그/녀들의 목소리를 직접 영상물과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면접을 통해 만난 이들은 각 영역별로 한두 명의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개별적 경험 속에는 청소년노동의 오늘을 읽을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영상물은 이후 청소년노동의 실태를 소개할 때나 교육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편집·제작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3. 어떻게 만날 것인가

먼저 관련 기사나 자료, 네트워크로 접수된 상담사례 등을 통해 청소년노동의 오늘을 살피기 위해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과 주제를 선별했다. 네트워크 내부의 학습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모셔 사전 워크숍을 진행해 면접조사 목록을 보완했다.

면접조사 영역이 선정된 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영역의 노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소개 받았다. 소개받은 청소년들과는 대개 2~3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미 다른 활동이나 만남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청소년도 있었기에 짧은 시간에도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 적절한 증언자를 소개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활동가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단계부터 사후 아르바이트 경험 분석까지 함께 진행했다. 때로는 추가 조사나 사건 대응도 병행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사전 조사와 내부 워크숍을 통해 조사 방향을 기획하는 데 집중했고, 본격적인 조사는 2013년 8월말부터 11월까지 약 세 달 동안 진행되었다.

가족배경을 포함하여 사회적 차별 사유들이 청소년의 노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우리의 의도는 부분적으로만 실행에 옮겨졌다. 탈가정 배경, 빈곤가정 배경 이외에도 다문화, 장애, 출신학교, 학력, 성적체성, 학교 재학 여부 등이 청소년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조사영역	조사의 주요 목록	방법
1	청소년노동의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남/녀 청소년을 각각 인터뷰하여 청소년노동의 오늘을 살펴본다. ✓ 청소년 일자리의 변화, 성별에 따른 차이, 십대라는 나이의 취약성이 노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노동 지원정책에 대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본다. 	다경험 청소년 2인과의 면접조사
2	불안정노동 1 : 배달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특수고용 형태의 배달대행업체가 확산됨에 따라, 달라진 노동조건을 살펴본다. ✓ ‘비노동자화’가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배달대행 청소년 2인과의 면접조사
3	불안정노동 2 : 호텔 서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온갖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호텔서비스 노동의 현재를 살펴본다. ✓ 호텔연회장 서빙이 외주화된 현실에서, 소기업체들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풀 열쇠를 찾는다. 	청소년 1인과의 동행조사와 면접조사
4	불안정노동 3 : 택배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지옥 알바’로 불리는 택배노동의 속살을 살펴보고 누가 그 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하청의 하청 구조를 띠고 있는 간접고용 형식이 청소년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택배노동 청소년 2인과의 면접조사
5	불안정노동 4: 이벤트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면서 일한다? 고수익이 보장된다? 소위 이벤트업체 알바를 둘러싼 사회적 이미지가 현실인지, 환상인지 따져본다. ✓ 일용노동적 성격, 강도 높은 열정에 대한 요구, 장시간 교육의 필요성 등 이벤트 노동의 조건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벤트업체 대표 인터뷰, 삐에로 알바 청소년 1인과의 면접조사
6	가족배경과 노동 1 : 탈가정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과 주거의 위기에 놓인 탈가정청소년 또는 쉼터 거주 청소년의 노동 경험,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성산업으로의 진입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독자적 노동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탈가정 경험 청소년 1인과의 면접조사
7	가족배경과 노동 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노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노동을 하면서도 수급비 축소의 우려 때문에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는 음지노동·습지노동으로서의 성격이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따져본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하면서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 2인과의 면접조사

1부

다시, 십대 '밑바닥노동'을 말하다

●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 변화하는 청소년노동의 오늘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 변화하는 청소년노동의 오늘

* 배경내

1. 십대 '밑바닥 노동'은 어떻게 전개되나

1. 청소년 노동은 소수의 일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인권문제는 20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종합대책이 뒤따르면서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다. 조사 주체마다 결과의 차이가 크지만,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는 만만치 않은 규모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경유하면서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¹과 소득 양극화² 현상이 심화되고, 교육이 지위 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의 생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조사지역	조사대상	유경험률
노동부 (리서치21 의뢰)	2009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3~고3 3100명	3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	전국 중고등학생 확률 표집	중1~고3 6509명 (중3~고3은 4517명)	11.7% (중3~고3은 14.4%)
참교육연구소	2011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고등학생 1681명	26.9%
고용노동부 (중앙대산학협력단 의뢰)	2011년	전국 15개 광역시도 (제주 제외)	총 2,842명(중3~고3 2,700명, 비진학청소년 142명)	재학 27.4% 학교밖 62.0%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 '근로빈곤층'(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매년 발간한 고용전망 보고서를 추적해보면, 2000년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8%였으나 2007년에는 32.3%, 2009년 25.7%, 2010년 25.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33%에 불과할 만큼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2012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절반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현재 15%에 이르러, 10가구 중 1.5가구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6년 9.29%에 비해 더욱 증가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12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시장소득(근로소득+비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비율은 2006년 10.7%에서 2011년 12.0%로 늘어났다.

가장 최근에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고용노동부 조사를 살펴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총 조사대상자 2,842명 가운데 827명(29.1%), 그 가운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739명(27.4%), 학교밖 청소년은 88명(62.0%)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성별 유경험율을 비교해보면 남성 청소년이 32.2%, 여성 청소년이 25.9%, 학교 유형별 유경험율을 비교해보면 특성화고가 53.8%, 인문계고가 23.1%로 확인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학교밖 청소년의 노동 경험에 대해서도 따로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연거푸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조사의 대부분이 학교 재학 중이며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온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밖 청소년³이나 생활비 마련이 갈급한 탈가정 청소년까지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물론, 새로운 문제들이 속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집을 나오거나 가족의 생계형 이산(離散)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탈가정 청소년의 증가 역시 청소년노동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 수는 약 378만여 명, 이 가운데 2012년 현재까지 한번 이상 가출을 경험해본 중·고등학생은 12.2%, 약 46만 명에 이르고, 가출 유경험자 중 지난 1년간 1회 이상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1%에 달했다.⁴ 이 조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학교밖 청소년이면서 탈가정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까지 합치면 경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탈가정 청소년 지원기관들에서는 연간 20만 명 이상이 가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252명 가운데 귀가 의사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이 66.2%에 이르렀다.⁶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십대 '밑바닥 노동'의 속살들

2009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8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 최저임금에 겨우 턱걸이하는 초저임 노동, △ 장시간 고강도 노동, △ 쉬 없는 쫓김 노동, △ 밤 늦게까지 지속되는 야간노동, △ 모욕과 폭력에 찌든, 하인이나 다름없는 노동, △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하는 노동, △ 아찔한 위험 노동, △ 서비스업에서 강요되는 감정노동, △ 시간외 수당 미지급, △ 벌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항목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다.

3) 「201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1.9%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이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는 총 3만8887명으로 4년 전인 2007년 2만7930명보다 39%(1만95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통계청·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 통계」, 2013.05.02.

5) 이에 반해 2010년 경찰청 통계는 가출청소년의 수를 22,287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수만을 집계했기 때문이다.

6)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2013),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보도자료.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은 경기도내 쉼터 이용 가출 청소년 25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아 쉼터 운영 활성화방안을 제안했다.

[표 2]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조사 기관	노동부 (2009)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2009)	여성가족부 (2010)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2011)	고용노동부 (2011)
조사 대상 위반항목	중3~고3 3100 명	청소년 1,087명 (고등학생 1,070명, 중학생 5명)	중3~고3학생 아르바이트 유경험 자 652명, 학교밖 청소년 유경험 자(만15~18세) 100명	고등학생 1681명	2,842명(중3~고3 2,700명, 학교밖 청소년 142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85.1%	-	학생 80.8% 학교밖 74.0%	76.4%	77.0%
친권자후견인 동 의서 미제출	70.2%	-	학생 71.1%, 학교밖46.0%	63.6%	60.8%
최저임금 위반	37.6%	34%	학생 50.0% 학교밖 48.7%	주중노동46.8% 주말노동44.8%	46.7% (학생 44.9%, 학교밖 61.1%)
임금 체불 또는 일방적 삭감	15.7%	-	학생 18.0%, 학교밖 24.0%	26%	26.5%
법정 노동시간 초과(7시간, 1시 간 연장 가능)	8시간 이상 전 체 31.7%	6시간 이상 44.3%	학생 27.0% 학교밖 54.0%	-	8시간 초과 27.7%
추가근무 요구 & 가산수당 미지급	추가근무 요구 36.2% 가산수당 미지급 40.1%	-	추가근무요구 : 학생 15.8%, 학교밖 18.0% 야근 및 휴일수당 미지급: 학생 7.3%, 학교밖 7.0%	-	추가근무 요구 45.9% (학생 29.4%, 학교밖 39.6%) 가산수당 미지급 40.1% (학생 40.2%, 학교밖 40.0%)
휴게시간 미제공	-	휴게시간 따로 없다, 62.0%	-	-	-
야간 노동	-	-	-	20.8%	-
업무상 재해 관련 경험	4.7%	근골격계 질환 경험 59.0% 사고경험률 23.95%	학생 30.3%, 학교밖 청소년 27.0%	11.9%	27.7%
폭력	0.6%(폭행만 파악)	언어폭력 24.5% 물리적 폭력4.2%	학생 11.2%, 학교밖 청소년 15.0%(폭언 모욕) 학생 4.8%, 학교밖 청소년 4.0%(구타.폭행)	30.9%	43.4%
성희롱 (성폭력)	1.2%	2.6%	학생 4.8%, 학교밖 18%(행위별 중복응답)		6.0%
부당해고	4.1%	-	-	8%	11.6%
강제노동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함)	-	-	-	10.6%	-

[표3] 학생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교(2011, 고용노동부 조사)

	학생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4.9%	61.1%
폭력, 부당해고 등 불이익 경험	21.0%	42.7%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28.7%	45.5%

II. 십대 ‘밑바닥 노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나

청소년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간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0년 이후 청소년을 ‘근로조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한 근로감독을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⁷⁾, 경찰청 합동으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2008년 6월과 2012년 11월에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을까. 혹은 정부의 대책 자체가 변화하는 청소년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과의 심층 면접, 기획조사를 통해 청소년노동의 ‘오늘’을 들여다보았다.

1. ‘밑바닥’은 굳건했다

우리는 청소년노동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밑바닥 노동’의 현실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 청소년, ‘지옥의 문’을 열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최저임금은 받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쉼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하루 장시간의 뻘센 노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급 5천원을 ‘세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경험하는 임금 수준은 바닥이었다. 그 바닥 수준의 임금이 벌금이다 뭐다 각종 명목으로 떼이는 경우도 있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 손님들의 부당한 대우도 잦았지만 마음과 달리 웃음으로 응대해야 했다. 한 청소년의 말마따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경험이라는 현실은 여전했다.

7)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발족하였다가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했다. 2006년 3월에는 명칭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 최하층 노동 - 모욕의 일상화

청소년노동자는 고용관계의 종속성과 함께 정직원이 아닌 '알바'라는 취약성에 더해 '나이'의 위계로 인해 최하층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과 쌍욕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조건에 놓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싸게, 함부로 부러먹을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모욕인 셈이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도록 병풍 뒤 바닥에 앉아 쉬어야' 하는 조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십대 여성의 경우에는 '어리고 말 잘 듣는 여자애'다운 역할을 기대 받고 있었다. B는 그 역할을 거절하다 결국 3개월 만에 해고당했고, 새 일터에서는 나이를 위장하여 취업하면서 비로소 '누구야'가 아닌 '누구 씨'로 불릴 수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으로서는 존중을 기대할 수 없기에, 나이를 위장함으로써 덜 모욕적인 지위로 올라서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3) 목숨 내놓고 일한다 - 위험의 일상화

서비스업은 위험하지 않다는 일간의 오해와는 달리, 청소년노동자들은 서빙이나 주방 일을 하면서 데이거나 베이거나 넘어지거나 사고를 자주 경험한다. 장시간 오래 서서 대기하거나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에 종종 걸음으로 서빙을 하면서도 그저 '개인이 조심할 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속도'를 위해 무거운 쟁반을 들고 나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손님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맨손으로 음식을 나르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만큼 다칠 우려도 커지고 이동해야 할 횟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노동의 경우는 잦은 사고로 유명하다. 배달할 사람은 적고, 빨리빨리 배달하라는 재촉이 잦은 탓에 자연스럽게 신호 위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무거운 물건을 던져서 쌓거나 내려야 하는 택배 분류 노동도 매우 위험한 유형의 일이지만 별다른 안전장치나 교육 없이 위험을 피하는 일은 노동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로 치부되고 있었다.

4) 법은 멀고, '갑을 관계'는 강력했다

청소년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주들은 점심시간이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알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기준은 모른 척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위조하고, 근로감독관이 나올 때면 청소년노동자를 빼돌리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나서도 권리를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두기가 쉽지 않는데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를 '부러왔던' 사업주와 대면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 청소년의 말마따나, 일을 그만둔 뒤에도 '갑을 관계는 지속'되는 느낌이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노동행정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계도' 중심이라 실제로는 사업주가 몇 차례 더 '위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 되고 있다. 실제 A는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관의 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5) 자기 구원은 ‘무책임’으로 변주되다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자주 그만두고 ‘잠수 탄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한다. 그러나 저임금에 다 갖은 모욕까지 참기 힘든 노동조건이 강요되다 보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조건 속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근로감독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에도 십대 ‘밀바닥 노동’의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행정당국의 근로감독이 서류 검토 중심이고, 점검 대상 사업장도 서류 중심의 근로감독이 용이한 규모 있는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청소년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다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근로감독을 나가기 전 사전 고지하도록 한 현행 근로감독직무규정⁸ 역시 단속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감독이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보호 조항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안전 위험이나 폭력, 모욕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2. 십대 ‘밀바닥 노동’의 달라진 얼굴들

1) 청소년 일자리의 변화 : 줄거나 더 열악한 곳으로 이동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도 있고, 부모님께 용돈을 구걸하지 않고 ‘떳떳하게 벌어서 사고 싶은 걸 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청소년도 있다. 사회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서, 시간을 좀더 가치 있게 쓰고 싶은 마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 다양한 동기를 이끌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만, 막상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청소년 일자리가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는 힘들다. 청소년 노동이 공식 통계로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자들은 갈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의 대표 얼굴 또한 바뀌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개 전단지 돌리기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서빙이나 카운터 업무, 배달 등의 일을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청소년의 얼굴을 찾아보기란 어려워졌다. 경제위기, 노동빈곤 현상의 심화, 등록금 인상, 일자리 축소 등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과거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던 사업장이 20대 청년이나 장년들로 채워지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노동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축소는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 자체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용 시간의 감소나 특정 기간

8)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4호) 제17조(감독계획 통보)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에만 고용이 이루어지는 단기 고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 A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점차 출근시간이 늦어져 노동강도가 세지더니 사람 수를 줄이고 나중에는 일찍 퇴근시키는 일을 경험하였다. 또한 나름 괜찮다고 여겼던 사무보조 일도 성수기가 지나자마자 곧장 해고되는 경험도 있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나 고용조건의 악화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고용금지 업소나 야간노동 등 열악한 일터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A의 경우에도 사무보조에서 잘린 다음, 편의점 야간노동을 시작했다. 야간에 영업하는 유통·서비스업체가 증가한 데다⁹ 심야 시간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주간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1~2천 원 정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곤 한다. 특히 배달노동의 경우에는 대개 밤 11시나 12시, 새벽1시까지 배달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택배 상하차·분류 노동 역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야간노동을 제한할 경우 실제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2011년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15,964명 가운데 고용금지업소¹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4%였던 데 반해, 2012년에는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15,487명 가운데 유경험자가 8.3%로 올라섰다.¹¹ 이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여서, 학생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교밖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경험률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불안정노동의 확산 : 최악에서 한발 더 물러섰다

우리가 기획적으로 접근하여 만나본 청소년노동자들은 대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고용되거나 특수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건당 배달료를 받는 시스템인 배달대행과 기본금에다 건당 수당을 추가로 받는 콜센터 물품 판매도 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특수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택배는 용역업체를 낀 일용직이었다. 빼에로와 사인 스피닝(sign spinning) 이벤트 홍보는 파견업체, 호텔 서빙의 경우는 직업소개업체인지 불법파견업체인지가 불분명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안정노동은 단지 고용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건의 후퇴, 관계성과 생활의 불안정화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었다.

① 더 멀리, 더 빨리, 더 위험하게 : 배달대행

최근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거나 잔심부름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요식업계의 입장에서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배달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관리'하는 부담과 노동법 준수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필요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보강하거나 한산한 시간대에 지출되는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반면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 노동자와의 관계는 고용-노동 관계가 아니다. 사고가 나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고,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 등 각종 법적 보호도 누릴 수 없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게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내고 직접 음식을 사서 주문한 손님에게 배달하

9)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2014년 3월 3일 현재 채용정보에 따르면, 오전~오후타임의 채용 정보 건수는 총 2,142개인데 반해, 저녁~새벽 타임은 총 1,507개, 저녁타임(18:00~24:00)만은 총 4,309개, 새벽타임(00:00~06:00)만은 총 122개에 이르렀다. 저녁 타임이나 새벽 타임의 일자리는 대개 유통·서비스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10)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통물영업, 만화대여업 등이다.

11)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와 「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참조.

여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많이 될수록 비교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발을 들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고용’ 업체’에서 일할 때와 비교할 때 수입은 비슷하데 더 빠르게 일을 해야만 하는 배달대행의 ‘함정’을 알아차린다. 그러다 보니 배달 일에만 생활을 온전히 빼앗겨 하루는 더 고단하고 외로워졌다. 게다가 직접고용 형식보다 더 자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배달이 늦어져 반쯤이라도 들어오면 그 손해를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② 무료노동과 중간착취 : 호텔연회장 서빙

호텔연회장 서빙은 다수가 청소년노동자로 채워질 만큼 여성청소년 알바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최근 호텔연회장 서빙은 주로 전직 호텔 직원 출신들이 차린 외주업체를 통해 채용되어 호텔로 파견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호텔리어, 조인, 휴플렉스 등 수많은 호텔 전문 구인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일자리(호텔, 시간대)를 지원하면, 구인사이트에서 출근 여부를 결정하여 주고, 당일 해당 호텔로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는 방식이다.

우리 네트워크에는 호텔연회장 서빙을 하면서 임금과 수수료를 떼어먹었다는 상담이 여러 건 접수되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호텔은 필요 노동력보다 인원이 넘치게 데려왔다 싶으면 구인업체들에게 현장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구인업체는 근무시간보다 40분 전에 출근하고 15분~20분 늦게 퇴근하면서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떼먹었다. 점심시간도 30분밖에 주지 않았으면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했다. 심지어 계좌로 입금된 임금에는 타행이체 수수료 5백 원까지 제한 채 입금되어 있었다. 해당 업체와 연락을 취해보니, ‘산재보험료를 제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인사이트의 정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실제 청소년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감독한 호텔은 ‘용역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구인사이트 관계자는 업체의 성격에 대해 답변을 잘 못하고, 그 업체의 자문 노무사조차도 ‘직업정보소개업체인지 파견업체’인지 답을 회피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스무 곳도 넘는다고 한다. 반면 서빙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모 호텔의 시급은 E가 받았던 시급에 비해 1,000~2,000원이 가량 더 높다. 하루 7시간이면 7,000~14,000원인데, 당일 80여 명이 일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56만원에서 112만원이 중간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처럼 간접고용 형태를 통해 중간에서 사라지는 임금이 상당한 것은 물론, 누가 법적 책임을 지닌 사용자인지도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③ 위험노동의 일용화, 택배물품 분류 노동

속칭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노동의 경우 하루 10시간~12시간 밤샘 노동을 하지만 일당으로 6만~10만 원 정도의 돈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가정 청소년들처럼 당장의 생계나 주거가 해결되지 않은 이들이 주로 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² 택배 물류단지가 집결돼 있는 충북지역이나 경기지역의 청소년들도 학교 재학 유무와 관계없이 다수가 택배 상하차 노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우리는

12) 머니투데이, “청소년 일당 10만원 ‘지옥 알바’ 따라가 보니 : ‘택배 상하차 알바’ 미성년자에 고임금, “가출 부추겨” 논란”, 2013.01.10. 이 기사에서는 택배 아르바이트가 마치 가출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가출 이후의 생계나 주거가 막막하기 때문에 ‘지옥 알바’라고 불리는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심지어는 가출 청소년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도일보, “가출청소년 8명 합숙, 택배시키며 금품갈취”, 2013.01.07.

13) 2009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실시한 <2009 대한민국 : 십대 ‘밀바닥 노동’의 현실> 실태조사에서도 충북지역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청소년 2명이 평일 야간에도 택배 분류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일하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학생이라고 증언했다.

택배 분류 노동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0세 대학생 2명을 섭외하여 잠입조사를 요청했다. 한 명은 이전에도 몇 차례 택배노동의 경험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경험이었다.

택배 분류 노동은 초보인 '단기 알바'에게 중량물을 쌓거나 던져 올리는 가장 힘든 일이 배치되는 위계적 작업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고, 실 시간도 없이 언제 쌓아둔 물건이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위험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다. 폭언과 고함을 중심으로 작업지시가 이루어지는 험악한 작업 환경을 견뎌야 하는 긴장과 불안감도 크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잦았는데 그 경우 일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 기획조사에 참여한 두 사람도 일을 견디기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 택배분류 노동 역시 전문 택배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인력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모집해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작업환경의 위험성도, 임금 지급의 책임도, 노동법 준수의 책임도 모두 외주화되어 있다.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갑의 갑을 찾아야 하는 첩첩산중의 길이 만들어져 있다. 자신을 '데려간' 업체에게 임금 보장과 안전을 요구해야 할지, 실제로 '일한' 업체에게 요구해야 할지 몰라 지쳐 포기하기 쉽다. 야간노동과 연장노동에 따른 추가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도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른다. 고된 밤샘 노동의 대가로 지불 받아야 할 일부는 인력업체가 가져간다. 일자리가 없어, 당장의 생계가 갈급해 '지옥 알바'를 택했지만, 그 절박한 노동자들이 수고한 대가를 중간에 가로채는 구조가 택배 분류 노동의 구조였다.

④ 불안의 일상화, 열정의 무급화 : 이벤트 홍보 노동

결혼식, 돌잔치, 개업식 등 갖은 행사 보조와 촬영 등이 이루어지는 이벤트 업계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이 몰리는 영역이다. 특히 이벤트 거리 홍보는 청소년과 20대 초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벤트 홍보 노동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게 제시되어 있는 편이지만 생활이 불안정하고 계속 '열정'을 갖고 무급 교육기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 힘든 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뼈에 분장을 하고 거리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십대 청소년, 상업·정치 광고판을 들고 돌리는 홍보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대표를 만나 이 분야의 노동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애로우애드 코리아는 '청소년 친화적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어 우리의 조사에 협조해 주었다.

홍보 이벤트 업무의 경우 '놀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흥겨울 수 있지만, 실제 그 흥겨움의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무거운 작업 도구(각종 분장도구, 화살표 모양의 큰 광고판 등)를 들고 일찌감치 도착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 시간 노출된 채 일을 해야 하는 고단함은 예상보다 크다. '실력이 늘면 시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청소년들은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견디고 있었다. 과거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마땅히 일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일정기간 수습 및 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채용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노동자를 채용할 회사에게 있었다. 그러나 점차 고용관계가 다단계화되고 회사의 교육, 인사 등 업무파트가 외주화되면서 사업주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교육비용 자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뼈에 알바의 경우,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도, 작업에 필수적인 분장도구 구입비도 노동자의 몫으로 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행사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하러 가는 길에 행사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잦으며,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도 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무급으로 계산되는 준비시간, 마무리 시간, 훈련시간 등 각종 시간을 감안하였을 때는 시급 1만원 정도의 시급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허약한 셈이다.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경우에도 교육자체를 회사 내에서 시키지 않고 외부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실력을 쌓은 후 실력이 갖춰진 인재를 취업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력이 늘어도 이 일을 통해 경력을

쌓아나가기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였다.

홍보이벤트 영역의 외주화에 따른 사업의 영세성은 필연적으로 홍보이벤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열정만으로 무급 교육기간을 견디도록 강요하고, 마땅히 사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작업도구의 구매 비용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높은 시급 제공을 구실로 높은 노동강도, 파견노동에 따른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교통비, 행사의 취소라는 위험부담까지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은폐되고 있다. 노동법상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행사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장시간과 준비시간, 분장을 지우는 시간 및 정리시간도 무급 처리되고 있었다. 행사 중 다칠지도 모르지만 안 다치게 조심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안전교육도 없고, 산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당장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다.

3) 베일 뒤의 노동들 : 가족배경이 청소년노동에 미친 영향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가족배경이 노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① 일은 빠졌고 '보도'의 유혹은 섰다 : 탈가정 청소년과 노동

십대여성의 탈가정 경험에 대한 기존 조사는 주로 성매매 산업으로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탈가정→성매매' 공식이 과잉 되기 시작했고, 실제 그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정책 역시 '조기 발견과 쉼터 연계 입소'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십대여성이 탈가정 상태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부모와의 갈등을 역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전략, 노동경험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만난 십대여성 I(18세)는 1년 반 동안 탈가정과 가정 복귀를 계속하면서 억압적이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교적 동등하고,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었기에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I에게 탈가정 기간 동안 노동은 생활비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것이었으나,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노동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에게 선물이라도 사 드리면서 일방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I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서 지금까지 받아본 최고 시급은 5천원이었고, 어떤 일든 빠세고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I는 탈가정 기간 동안 노래방에서 '보도'를 뛰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도망쳐 나왔지만, 사정이 급한 탈가정 십대여성에게 한 시간에 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보도' (노래방 도우미)의 유혹은 세다고 말한다.

I의 말처럼, 가출 이후 생계나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지인의 도움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일 자리마저 구하기 어렵거나 더 많은 소득을 필요할 경우 성매매나 청소년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¹⁴ 그 일을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가정 청소년의 조건을 감안한 대안적 일자리가 있다면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다. I는 현재 청소년지원기관의 연계로 일급제 인턴십을 거쳐 월급제 자립훈련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급으로 받을지, 월급으로 받을지는 청소년이 직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탈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은 주거 지원 확대와 함께,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등 노동 지원 정책도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

14) 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잠잘 곳이 없을 때'(28.3%)와 '용돈이 없을 때'(25.2%),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19.6%)의 순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24.5%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답했다.

② 음지에 숨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과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오래 되었다. 제도의 사각지대 자체가 워낙 큰데다 급여수준이 불충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엄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다. 이런 조건에서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청소년들도 추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선다. 우리가 만난 J의 경우,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였다가 어머니가 녹내장으로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조건에서도 수급비에 기대어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K도 빚까지 갚으면서 수급비를 쪼개고 쪼개서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노동에 주로 접근한다. 따라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업장만 찾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부당한 내용이 끼어들기도 한다. 임금도 현금으로 받거나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다 보니 임금 협상력을 전혀 가질 수 없어 안 그래도 불평등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맺어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더욱 왜곡될 우려가 크다.

그들에게는 차분하게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고된 노동이라도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힘든 현실 속에서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고자 해도 수급가정의 청소년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제공되는 정보의 일부는 부정확했으며, 내일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은 넘지 못할 벽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꿈이 있어도 현실 안에서만 꿀 수 있는 구겨진 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청소년의 노동은 복지제도, 노동행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물론 비청소년의 노동도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의 노동 소득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거나, 소득 노출을 우려로 노동관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서에 진정,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에 조회, 통보 등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Ⅲ. 십대 '밑바닥 노동'을 '존엄한 노동'으로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은 △ 점검 대상업체 확대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강화, △ 수도권, 광역시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 도입 △노동관계법 홍보 강화 △ 노동인권·노동관계법 교육 확대, △ 일제 신고기간 지정,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구제체계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체의 법 위반율은 낮아지지 않고 점검대상 사업장의 선정 역시 임의적이며, 점검 항목도 매우 제한적이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노동법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 사업주의 인지도도 여전히 낮고, 신고·구제기관도 부실 운영돼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표 4]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

대책명 추진내용	2005 정부 합동 종합대책	2008 노동부 종합대책	2012 정부 합동 종합대책
<p>사업장 지도·점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주요 법위반 사례 반복 사업장 처벌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점검 실시: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 단속,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지도·점검(7~8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다수고용 시기(방학기간 등), 지역,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실시 ○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사업장 대폭 확대('12년 1,900개소→'13년 3,800개소, '12년 근로감독관 1인당 2개소→'13년 근로감독관 1인당 4개소) ○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연중 상시 감독, 점검 횟수 연 2회(방학기간)에서 연 4회 이상 확대 ○ 관계부처 합동 점검 연 2회에서 연 4회 확대 ○ 점검대상 사업장의 10%에 대해 최근 6개월내 법 위반업체에 대한 확인감독 실시, 반복적 위반업체는 즉시 사법처리 ○ 성희롱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집중 감독 ○ 무기명 신고 사업장 및 「청소년 근로조건 지키미」 또는 「청소년 리더」가 신고한 법 위반 사업장은 불시감독 ○ 신고 포상제 도입·운영 ○ 청소년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사(사업장 감독 점검 표 보완) ○ 지역·업종별 맞춤형 감독 : 대학가 주변 등 지역별 청소년 고용 밀집지역 사업장 감독, 지방관서별로 업종 특화하여 집중 감독
<p>교육·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 교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 교사 교육 - 직업교육연구시범학교 워크숍 때 노동관계법 교육 - 실업계고교 CEO 연수 -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 청소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 활용 교육 실시 - 실업계학교 중심 노동관계법 교육 - 직업지도 대상 학교, 일터 현장체험 중·고교생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 범죄예방교실 등 『청소년교실』 운영시 노동관계법 교육 ○ 다수고용 사업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협회를 통한 사업주 교육 ○ 청소년의 법정 근로조건, 직업 등에 대한 사회교과목 편성(중장기 과제) ○ 캠페인 등 홍보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 NGO단체 등 민관 합동 캠페인 - 각급학교 및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 제작배포 - TV,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 등 홍보 - 관계기관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활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다수고용 업체 대표와 노동부장관 ‘함께 알자 캠페인’ 조인식. 회원 사업주 자체교육·홍보 지원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유도 ○ 방학 전 중등교사를 통한 집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대상,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지. -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와의 분기별 간담회와 홍보 -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확대,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 등과 공동으로 인식개선 캠페인 ○ 학교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제도·정책 포함 -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제도 교육 실시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때 고용관계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대처요령 등 포함 ○ 자율 개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청소년 다수 고용업종을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캠페인 협약 확대('12.10 18개소 → '13년 50개소) ○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를「청소년 리더」로 확대·운영('12년 중·고교 30개팀 145명 → '13년 중·고교·대학생 45개팀 200명)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키미」 신설: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홍보 등 수행 ○ 민관합동「가칭」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 공동 실시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 및 알바신고센터 홍보

<p>피해 구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 신고 매체 다양화 - 「청소년 워크넷」에 피해신고 코너 설치 -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피해 신고시 노동부로 접속처리 ○ 고용안정센터에서 청소년 직업지도를 위해 학교방문시 청소년근로 피해사례 상담 및 구제요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신고기간 및 전담자 지정 운영 ○ 주요 포털사이트, 싸이월드, 알바몬 등에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유관기관단체에서 법정 근로조건 위반사례 발견 시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효율적 상담·조사 등을 위해 가급적 여성감독관으로 지정 ○ 안심알바신고센터 방문조사(담당교사 입회) 원칙 ○ 「청소년 리더」통해 근로조건 위반·의심 사업장 발굴 ○ 모바일 신고체계 운영 -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운영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콘텐츠 탑재 ○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개설 ○ 온라인 상담,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모바일 문자상담(#1388) 실시 ○ 신고센터 확대 및 내실화 - 알바신고센터를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추가·설치('12.9월 128개소 → '13년 200개소) -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청소년 부당처우 상담·신고 창구 개설 - 청소년 상담원 복지센터(190개소)에 알바신고센터 설치·운영(비진학 청소년 집중) - 성폭력·성희롱 피해시 '여성긴급전화 1366'과 '청소년전화 1388' 신고체계 운영 계속 - 신고센터 교사, 상담원 등을 대상 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 - 신고센터 연계 강화, 운영평가
<p>괜찮은 일자리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청소년워크넷」 개설운영 - 청소년의 취업지원 및 직업상담을 위하여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아르바이트 콘텐츠를 별도로 설치 운영 -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근로 관련 기본적 법령 안내 - 일자리 정보를 지역별·직종별·연령별 등으로 상세 게재 - 사이버 진로 및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넷의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 구인·구직 등 양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권익침해 사전예방 	
<p>성과 점검을 통한 평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근로 보호 T/F 팀』 구성·운영 - 관계부처, 청소년 및 청소년보호단체, 시민사회단체, 사업주단체, 청소년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제도개선안 수렴 - 매분기 실적 분석·평가, 보완 추진할 시책 발굴 ○ 실태조사 및 법정 근로조건 인지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단체와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정기(상·하반기) 간담회.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하여 현안문제 해결 공동 대응 ○ 실태조사 실시 - 향후 "청소년 보호대책"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여가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TF」운영 - 관계부처 담당 과장,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관련 부처간 협조방안 논의
<p>제도개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근로 관련 근로기준법령 전반적으로 검토 후 제도개선안 마련 		

나아가 요란하게 발표된 정책들에 비해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법 개정¹⁵이나 노동시장 정책은 미비하기 이를 데 없다. 시간외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중심이 아니라 불안정고용 관련한 법률의 정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청소년 야간노동 증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근로기준법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청소년 고용만 기피하도록 만들고 청소년의 필요 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야간노동 전반에 대한 제한 정책, 총 노동시간 제한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와 모든 업체에 시간외수당 전면 적용 등을 통해 소득 수준을 높이는 종합적 보호정책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불안정고용, 탈가정, 기초생활수급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조건을 고려할 때, 청소년 노동정책뿐 아니라 복지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등도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립훈련매장 등 아르바이트와 직업교육 경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독자적 정책도 필요하다.

15) 청소년노동에 영향을 끼칠 법 개정으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화(2007년 법 개정), 최저임금 주지 의무 신설(2008년 법 개정),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노동자에 대한 수습 감액 규정 적용 제외(2011년 법 개정) 등이 유일하다.

2부

청소년이 말하는 십대 '밑바닥 노동'

- 우리 사회 '밑바닥 노동'을 도맡아 온 청소년노동자1
: 지옥의 문을 열다
- 우리 사회 '밑바닥 노동'을 도맡아 온 청소년노동자2
: '어리고 만만한 여자애'의 노동

‘밑바닥 노동’을 도맡아 온 청소년노동자1

: 지옥의 문을 열다

* 정리 : 류일환

○ 조사 시기

- 2013년 10월 19일 면접조사

○ 조사 방법

- 다양한 노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노동자 A의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노동자들이 거치는 일반적 노동과정을 파악함.

○ 피면접자 소개

- A(19세, 남, 박건○)는 진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겪은 뒤 탈가정하여 ‘먹고 살기 위해’고 기집 알바, 푸드코트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 사무보조 알바 등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해왔다.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다.

1. 첫 번째 일자리: 지옥의 문을 열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대개 빈곤하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그렇지 않든,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독립 자산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의 빈곤은 보편적이다. 청소년이 탈가정하였을 때 그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A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겪다 돈 7만원을 손에 쥐고 탈가정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탈가정 이후 A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장시간 열악한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제가 집을 나와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알바밖에 없는 거예요. (...)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에 피곤해서 자 버리게 되는. (...) 제가 알바 하려고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알바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A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불안정하고 열악한 조건의 노동을 감수했지만,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알바하려고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알바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A의 말처럼, 저임금 노동이 삶을 잠식해 버리는 상황은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7만원으로 한 달에 살아야 된다는 그 답답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어요. 3달을. (...) 제가 포기하게 되게 많은데 주휴수당도 포기했고, 쉬는 것도 포기했고 다 반납하면서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아 몇 달만 참고 돈 벌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몇 달만 참고 돈 버는데 그 돈은 사실 몇 달 동안에 또 사라져버릴 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작으니까. (...) 또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죠. 지옥의 문을 연 거죠.

경제적 기반도, 경력도 없는 청소년 노동자가 진입한 노동현장은 ‘밀바닥’이라고 표현할 만했다. A가 처음 일하게 된 음식점은 주휴수당, 휴가, 휴게시간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급여의 일부를 업무상 실수에 대한 벌금으로 제하는 등의 노동권 침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 ‘밀바닥’은 폭력의 위협이 근거리에서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A는 ‘손님들 앞에서’도 모욕적인 폭언을 일상적으로 경험했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A는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고 자기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 대해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

주휴수당이라거나 아니면 월차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 정신 없이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저기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놔두면은 그만큼 또 월급에서 까이는 거예요. (...) 그냥 뭐 잘못하면 막 욕을 해요. 진짜로 막 쌍욕을 해요. 손님들 앞에서. 진짜 그건 신기한데.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너 이거 월급에서 까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음식점은 특성상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있고, 안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안 오는 시간은 보통 준비를 하고 닦고 청소하고 그러는 건데. 하다 보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 건데. (...) 앉아서 쉬고 있으면 혼내요. 왜 쉬냐고. 정해진 휴게 시간도 안 주면서.

남자 분들이 일을 했었는데. 성적인 농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고기 썰던 칼을 이렇게 팡 찍으면서 저를 이렇게 속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때 느꼈던 그 ... 뭐라고 그러죠? 그 공포스러움?

2. 두 번째 일자리: 체계화된 착취

A가 두 번째로 일하게 된 곳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푸드코트였다. 대기업 직영매장은 개인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화된 착취의 다른 이름인 경우가 많다. A는 대기업 직영 푸드코트에서 체계화된 착취를 통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였다. A는 일에 능숙해지는 만큼 출근시간이 늦춰져 일의 강도는 세지는 반면 임금은 줄어드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였다. 인건비 절감이라는 기업

의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 강화와 임금 감소를 통해 실현되었다.

처음에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푸드코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점점 일을 좀 빨리 하게 되고, 능숙해지니까 빨리 하게 되니까는 출근시간을 점점 늦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일은 7시에, 내일은 7시 반에. 근데 푸드코트는 10시에 딱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6시 반에 출근을 하건 7시 반에 출근을 하건 해야 되는 일은 고정되어 있는데, 계속 조금씩 출근시간을 늦추니까 일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10시에 푸드코트 연 다음에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벽에 계속 그런 게 붙어있어요. 인건비 절감. 이번 달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바도 보면서 기분이 상하지만 매니저는 보면서 미치는 거죠. 매니저가 다 담당을 하는 거니까. (...) 그 사람은 저랑 같이 출근해서 마감까지 같이 뛰는 사람이에요. 밤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20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데. (...) 청소년 알바를 다섯 명을 썼었어요. 저희가 본사에서 그런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줄여라. 오전에서 한 명 오후에 한 명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자르고 2명만 남기게 되는...

인건비 절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게 일이 없을 때는 집에 가게 하는 거. 그런 게 주휴수당이나 법적인 건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다 췌어요. 근데, 최대한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찍 퇴근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

A가 경험한 위의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등 법적인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줄이는 등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실태를 보였다.

일단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들어갈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서약서를 작성했어요. (...) 근데 근로계약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본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넌 벌써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인한 적도 없는데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뭐죠? 이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까지 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노동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줄여 임금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A는 결국 푸드코트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계약된 시간대로만 하면은 저는 90만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90만원을 받으면 지출구조가 40만원이 방세예요. 40만원이 나가면 10만원은 교통비에다가 이제 30만원이 남는 거죠. 그런데 30만원도 이제 이리저리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데 본사에서 계속 그렇게 돈을 줄여라. 인건비 줄여라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월급이 줄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첫 달에 98만원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차츰차츰 줄어가더니 55만원이 찍힌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어떻게 그건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당장 방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3. 세 번째 일자리: 일회용품

A의 세 번째 일자리는 사무보조업무였다. 처음에는 비교적 잘 대해주던 그곳에서 A는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문자로 하고 통지가 왔다. A는 그 경험을 통해 ‘내쳐지는 기분이 뭔지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알바는 사무보조 알바였어요. (...) 엑셀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 사실 정말 좋았던 거고 편했던 거고. 사람들도 지금껏 알바를 깔아뭉개는 그런 어떤 알바를 하찮게 여기는. 근데 다행이 그런 건 없었어요. 거기는. 힘들면 쉬라고 그러고 막 과자도 주고. 월급도 잘 줬어요. 주휴수당이나 이런 거 안 줬지만.

성수기 딱 끝나니까는 제가 딱 퇴근하고 내일 봐요. 이렇게 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성수기가 끝났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충격을 먹죠. 어 왜 이러지?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근데 제가 전날 퇴근하면서 책이랑 핸드폰 충전기랑 이런 걸 두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도 할 겸 제 물건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택배로 붙여 주겠다고. 근데 그 말이 저는 어떤 말인지 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냥 미안한 거죠. 대들보가 돼 달라고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미안한 거죠. 비성수기라고 이렇게 딱 잘라 버리고 했던 게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짐작은 되더라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좀 배신당한 느낌인 거죠.

여기서 오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정작 비성수기 되니까 툭 잘라 버릴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는 일회용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 내쳐졌다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렇게 그냥 마무리 되었어요. 사람들은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잘렸어요.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정규노동 일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나, ‘일하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노동자들은 더욱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었다.

4. 네 번째 일자리: 야간근무, 생활의 파괴

A의 네 번째 일자리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였다. 야간노동이었지만 야간수당 같은 것은 없었다. 주휴수당도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한다. A 역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4시간 몽롱한 상태에서 생활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 하루 12시간을 야간에. (...)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출근하면 사장님한테 문자가 와요. 덩동- 어 안녕?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절 보고 있는 거야. CCTV로.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하게 만드는. 사장님의 입장에서서는 쟁기는 건데.

조건은 하루 12시간에 시급 5000원 그리고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노동법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하라고. 다만 나한테 청구하지 말라고. 아. 주휴수당이라고 있어? 아.. 그런데 나한테 청

구하지는 말아달라고. (...) 편의점의 특성상 아파도 내가 아파도 내 일을 사장님이 해야 하니까. 사장님이 할 사람이 없다고 나오라고 하면.. 아프다고 해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졸렸어요. 돈은 많이 받았어요. 150만원? 120만원? 이렇게.. 그런데 사실상 알바를 야간에 알바를 12시간을 뛰고 오전에는 자게 되고 하면서 정말 이걸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장님이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월급을 150만원을 받는데. 사장님을 빚을 내서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나. 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빚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24시간 내내 잠을 잤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그게 낮에 자면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피로가 안 풀리니까 가면서 자고, 가서 자고, 24시간 동안 자는 거예요. 그냥 쪽.

5. 다섯 번째 일자리: 노동자가 아니다?

A의 다섯 번째 일자리는 콜센터였다. A는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전에 했던 일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A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하였다.

거기는 월급이 이제 좀 많이 줘요. 120만원?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직장의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120만원이면 많이 받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든 일은 누군가 피해를 준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 80만원짜리 핸드폰을 후려쳐가지고 20만원에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따내는 거예요. (...) 제가 실적이 안 나오면 저만 돈을 덜 받으면 되는 건데. 다 얽여 있는 거예요. 이 실적이라는 게. 그 래가지고 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잘못해도 다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눈에 띄는 점은, 그곳에서 A는 노동자로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일을 하고 기본급과 기타수당, 야근수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지만, A는 자신이 개인사업자 신분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까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자유...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기본급이 80만원 이고 기타수당 10만원 야근수당 10만원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20만원 해서 120 받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기타수당이 사라져요. 이게 안 들어가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 때까지 일한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겠습니까 하면 이 수당이 빠진다고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신분이 될 경우, 사용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유급휴가와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상의 보호장치에도 예외가 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특수고용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특수고용화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6. 아무도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았다

A는 사업주들이 노동법 준수 책임과 근로감독을 피해나가는 매우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사업주들은 점심시간이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알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기준은 모른 척 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심지어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도 위조하고, 근로감독관이 나올 때면 청소년노동자를 빼돌리기도 했다.

제가 제 주휴수당이나 이런 걸 다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50만원 정도 못 받았거든요? 세 달 일하면서? 그걸 나중에 근로감독관님이랑 같이 가서 받아 냈는데. 그 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아. 애가 말했으면은 줘줄 텐데. 나는 주휴수당 같은 거 몰랐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사람들 점심시간 시급에서 빼는 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잖아요? 근데 근로 계약상에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 어떤 조건인지도 명시도 안되어 있고, 제가 사인을 하면 거기에 적는 (...) 제가 본 건 백지였고. (...) 너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이랬더니. 나중에 근로 감독관이 오면은 넌 그 날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창고에 들어가서 자재 정리를 하고 있어라.

그 ‘밑바닥’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A는 노동권 침해에 대한 행정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감독을 나올 때 사전에 연락이 되어 사업주가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시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A는 ‘계도’ 중심의 근로감독이 실제로는 사업주가 몇 차례 더 ‘위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근로감독관이 올 때 알려줄 테니까 그 날 아예 출근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자재 정리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감독을 하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아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나 언제 갈게 하고 약속을 하고 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몇 번은 봐주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번 봐주는 거 쌓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실 몇 번 봐준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몇 번 해라. 근데 막 선심 쓰듯이 막 봐주는 척 하고 스티커 붙이라고 하고 저희는 최저임금을 지킵니다. 이런 거 스티커 붙이면은 어드벤처지 주고 이거 진짜 최저임금 준다고 해놓고 최저임금 안 주거든요? 아직까

지 신뢰가면 2-3000원 줘요. 시급을.

청소년 노동자가 사업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속되는 조사 등 처리과정은 청소년 노동자에게 매우 큰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A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사업주와 '갑을관계'가 지속되는 느낌이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게 왜 저는 알바를 끝냈지만 아직도 갑과 을의 관계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계속 네. 네.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가서 체불임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3자 대면을 계속 한대요. 몇 번을. 근데 그 3자 대면이 사장님이랑 알바랑 근로감독관이랑 이렇게 세 명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이 정말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피하고 말고, 청구를 취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중에. 치사해서 안 할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면하는 거 자체가 싫은 거죠. 대면하는 거 자체가 싫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로감독관이 보호자의 느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제가 뭐라 할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대리인을 자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실제로 사장님한테 가서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된 게 있기도 하고

7. 청소년 노동자는 무책임한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주요한 편견 중 하나는 그들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의 무책임함을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 고용을 기피하는 주요한 변명거리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랑 가가지고 돈을 받을 때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로감독관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소년들 아시겠지만 써보면 맨날 지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아시지 않느냐고 이런 애들 어떻게 돈 주겠냐고. 그런데 사실 자기가 약속 안 지켰잖아요. 너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나 A의 증언을 들어 보면 이는 그야말로 편견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는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조건 속에서 '밀려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처우 등 청소년노동자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라는 편견 아래 은폐되고, 그 결과 청소년 노동자는 무책임하다는 편견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두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안 나왔어요. 바로 다른 알바를 구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매니저님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사실 알바를 못 구하면 매니저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매니저가 막 그렇게 일은 능숙하겠지만 두 명으로는 못하거든요. 항상 알바를 하면은 미안하게 끝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제가 거기서 매니저님들이랑 되게 친했어요. (...)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50만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 청소년들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미안해지는 것 같은데. 알바 하다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와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50만원 이렇게 받는 경우.

욕 듣고 이런 거 싫으니까 (...)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하기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도 못 줘요. 안주죠. 그냥 그만뒀는데 왜 줘? 이러면서. (...)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안 나가면 월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가기 싫다고.

사실 잘못된은 청소년 알바한테 없어요. 막 이렇게 잘못된 것도 없고 다만 상황이 그들을 내모는 거고. 거기에 밀려났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인지는 다양하겠지만 그 사정에 의해서 밀려나온 사람들인 건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밀려나온 맥락을 떼놓고 그냥 이렇게 청소년들이 연락도 없이 그만뒀버렸다고 말을 해버리면 무책임한 청소년 알바가 나오게 되는 거죠. (...) 사장님이 원하면 내일부터 나오지마 가 되고, 무책임한 사장 소리 안 듣는데. 저 아빠가 못나가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못나올 것 같아요. 그건 왜 청소년이 무책임한가..... 그건 아빠가 무책임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야자를 안 빼줘요. 그건 선생님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청소년이 계속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되는가.....

8. 청소년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주들이 이처럼 청소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와 착취는 행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보면서 써먹기 좋고 적당히 돈 안 줘도 뭐라 안 한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해도 적당히 일 잘하고 주는 대로 묵묵히 받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제 기준으로 제일 높은 시급이 뭐냐면 시급 5,000원이예요. 알바는 4,860원 고정이거든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됐다는 말이 (...) 5,000원어치의 값어치를 니가 했냐? 고 말하기 전에 질문을 뒤집어서 내가 5,000원어치 밖에 안 했냐?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탈가정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는 그들이 ‘탈선’했다고 보는 인식에 기대어 특히 더 마음대로 부러먹어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면접 보러 올 수 있냐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씩. 앉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앉혀가지고, 어. 이름이 뭐야. 이래가지고 이름을 적고, 나이는? 어? 학교 안 다녀? 안 다닌다고 하고, 집은? 어 여기 앞이에요. 아 여기 앞이야. 아 그럼 학교 안 다녀? 그러면 오래 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너 돈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솔직히 너 가출한 거 안다고 모를 것 같느냐고 근데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140, 150 주는데 없다고. 다 60, 70 주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8시간 일하면은 6,70 받거든요? 제가 12시간 일하고 주 6일을 일하니까. 150 이렇게 받는 거지. (...) 그런 식으로 마치 자기는 선심을 썼는데. 왜 넌 이해하지 못했느냐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정말 소름이 돋았고,

아래 A의 이야기처럼 청소년을 한 사람의 인격체이자 노동자로 보지 않는 인식이 이런 야만의 기델 언덕이 되고 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두 부류였거든요? 청소년이 뭐 이런 일을 하나? 공부나 할 것이지. 두 번째는 기특하다. 어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청소년은 노동해서 안 되는 존재 내지는 노동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수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가 기인하는 것 같아요. 이들을 노동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시켜주고 용돈을 주는 존재.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내가 용돈 얼마 줄지 정도는 제가 결정해서. 좀 감액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노동을 제공했고 계약한 만큼의 그걸 받아낼게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뭔가를 욕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 자기가 돈 번 만큼 쓰는 건데. 어떻게 쓸 건지는 자기가 배분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유를 물어대시고. 뭔가 청소년들이 어 나 이거 하고 싶어서 돈 벌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두렵게 만드는지. 제가 알바 하면서 만났던 청소년은. 알바 왜 해요? 돈 벌어서 뭐하고 싶어요? 이러면 아. 저. 다음 여자친구랑 기념일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벌어서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할 게 없어서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생계를 위해서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들여다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 스스로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청소년을 비청소년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 비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당연하듯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이것이 청소년 노동을 '밑바닥'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좀더 편하게 사건을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절차의 변화가 시급하다.

‘밑바닥 노동’을 도맡아 온 청소년노동자 2

- ‘어리고 말 잘 듣는 여자애’의 노동

* 정리 : 류일환

○ 조사 시기

- 2013년 10월 19일 면접조사

○ 조사 방법

- 여성 청소년 노동자 B의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성과 나이의 위계관계에 주목하며 파악함.

○ 피면접자 소개

- B(19세, 여, 홍서○)는 학교의 종교 강요 문제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달림을 당한 후 자퇴를 하게 됐고, 학교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다 결국 집에서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음식점 알바, 패스트푸드점 알바, 병원 진료보조, 콜센터 등 다양한 종류의 노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사이 아버지가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B는 집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집에서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1. 최하층 : 위계질서와 차별 속에서

B는 푸드코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직급체계에서 가장 하층에 있게 된다. 시급에서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은 하층으로서의 차별을 경험한다.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못 쉬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 들어오는 거 보면은 140, 150 이렇게 받고. 매니저들도 거의 최저임금 받거든요. 매니저도 저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시간도 더 많고, 받는 돈도 시급으로 따지면 비슷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일하다 다쳤는데도 위에서 해주지도 않고.

근데 매니저가 그랬어요. 자기들은 좀 더 쉬운 일 하고 편한 일 하는데 아무래도 알바한테 시킨단 말이예요. (...) 기름 가는 일이나 후라이요. 하수구 청소나 설거지나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한 단 말이예요.

근데 했는데. 하면서 아우 너무 힘들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매니저님이 좀 도와 줘요. 그랬더니 어 싫은데? 싫음 너희가 매니저 해. 헐.. 그 때 좀 화나기도 하고 근데 되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걸 보면서 되게 얼마나 그 위에 본사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매니저랑 알바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매니저가 알바들한테 시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노동의 공간 내에서의 차별을 생산하는 시선은 사업장 내에서의 직급체계-위계관계 뿐만 아니라 일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인 인식에도 드러난다.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쓰게 하고 추운데도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풍경은, 신봉제 사회의 최하층민을 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배달을 4만원 이상 시키면 근처로 도보 10분 이내는 배달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는 여의도니까. 시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다 사무실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노동자들인데. 저희가 최하위 노동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보는 것 같았고. 배달 갈 때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됐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도 파견이거든요. 저희랑 처지가 다를 게 없는데도 되게 무시하고.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추운데도 유니폼만 입고 가야 하고. 빌딩숲이어서 더 추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바람이 불어서 쓰고 있던 유니폼의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추웠어요.

2. 복장규제 : 권력에 적응하고 복종을 훈련하다

B는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불필요한, 엄격한 복장규제를 경험했다. 그 복장규제는 고객이 보는 곳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곳까지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업장의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규율을 훈련시키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까만 색 바지에 까만 신발을 신어야 했어요. 저는 그 때는 정말 집 나온 초기라 돈이 없었거든요. 머리 망이랑 까만 신발이랑 이런 거를 제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제 돈으로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 신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새까만 거라야 되요. 그래가지고 또 샀는데. 이번에 그 신발은 또 미끄러운 거예요. 미끄러운데도 그냥 그 신발 신으랬어요. 신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카운터에서 서 가지고 일을 해서. 신발이 보이지를 앓고 고객도 신경 안 쓰는데 그게 규정이라고 따라야 된대요. (...)또 제가 입술이 되게 잘 트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립밤을 카운터 옆에 이렇게 딱 놔두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뭐라 하고 어떻게 누가 매장에 이런걸 놓냐고 막 뭐라 하고. 그리고 칫솔 같은 것도 밥 먹고 나면 이 닦아야 되는데 칫솔 같은 것도 매장에 두면 안 보이게 두는데. 왜 이걸 여기에 이렇게 두느냐고. 네가 뭔데. 여기에 이렇게 두냐고 뭐라고 하고. (...)너무 추워서 위에 다른 거 입으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요. 추위 죽겠는데. 냉장 창고 청소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못 입고 했었어요.

이런 훈련과 통제는 B에게 학교에서의 억압과 통제를 떠올리게 했다. B는 '결국 학교의 진짜 역할은 말 잘 듣는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자유롭게 못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결사의 자유가 없고 그런 게 노동자들의 현실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학교보다 형식상으로는 자유롭게는 하겠죠. 하지만 약간 노동자를 노동자끼리 통제하게 한다? 이게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걸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도부를 거쳐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데. 학교의 진짜 역할은 말 잘 듣는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다 졸업을 해야지 정규직이고 좋은 노동자가 되고 좋은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소위 말하는 중도탈락 이런 학생들은 파견직이나 비정규직 밖에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체제에 잘 순응하고 적응한 학생들이 그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노동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불순분자들은 소위 말하는. 하찮은. 이런 거고.

3. 어리고 말 잘 듣는 여자애?

B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진료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이 편한 편이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좋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할 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만두고 콜 센터에서 일하였는데, 3개월 만에 해고당했다고 했다. 청소년과 여성은 우리사회의 서열의식체제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만만한’ 존재들이다. B는 첫 번째 일했던 콜 센터에서 그만두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말 잘 듣는 어린 여자애’를 기대하는 시선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였다.

어린데도 돈을 똑같이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며 사장이 잘랐어요. 처음에 저를 뽑을 때 저를 노예처럼 부려 먹으려고 뽑았던 거죠. 근데. 아닌 거야. 애가 좀 데리고 있어보니까. 노예처럼 일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잘랐나 봐요. 기대하던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일할 때 커피 타는 것도 저한테 시키고, 청소하는 것도, 시키고 이런걸 저한테 다 시키려고 일부러 저를 뽑았나 봐요. 18살이니까. 근데 제가 계속 싫다는 의사 내비치고 하니까. 자른 거죠.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던 B는, 지금 일하고 있는 콜 센터에 취업할 때에는 나이를 올려서 말하고 취업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으로서는 존중을 기대할 수 없기에, 나이를 위장함으로써 덜 모욕적인 지위로 올라서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지금 일하는 데서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의를 빌렸어요. 비청소년인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스물두 살이에요. (...) 어리고 말 잘 듣는 여성청소년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데는.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바 좀 쉬운 거 받고 싶었고, 어리고 말 잘 듣는 그런 것도 받기 싫었고. 스물 두 살이어도. 그 이들 입장에서는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훨씬 더 지휘가 향상된 것 같아요. 나이가 다르니까 받는 대우도 다르고. 전에 일했던 데서는 다 저보고 막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 씨.

B는 사무보조 일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직무에 대한 차별과 직장 내 만연한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괜찮은 축에 속하는 일이 '사무보조'이지만, '사무실 여직원 일'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듯한 비참함을 느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일들은 사무보조인데. 사무보조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떨이 비우고 커피 타주고, 청소하고 이런 사무실 잡일에 이런 여직원. 여직원. 뭔지 알죠? 그런 거? 그런 것 밖에 없는 게 되게 비참한 것 같아요. 사무실 여직원 일을 시키려고 남자를 뽑지는 않잖아요. 또 여성은 콜 센터 같은 데서 좋아하니깐. 막 힘쓰는 일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하고. 근데 또 배달 알바나 이런 거는 여자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좀 뭔가. 싫어요. 싫기도 하면서 편하기도 하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알바나 이런 건 서비스 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더 일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여성을 더 많이 뽑고 착취하기 쉽고, 쉬워 보이고, 돈 조금 쥐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은 막 만지고 '많이 컸네. 시집가도 되겠다. 커피 좀 타와라 손가락 좀 가져와라.' 이런 걸 다 거기서 겪었거든요. 지들끼리 사장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 역에 가다가 여자 연예인을 봤는데 다리가 예쁘다 어찌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를 딱 보다니 ○○이도 예쁘다고 다리가 좀 굵어서 그렇지. 그래서 성적인 그런 걸 받기도 했고, 수치심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언제 치마 같은 걸 입고 간 적이 있는데. 누구 보여 주려고 그렇게 입고 왔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되게 기분 나쁘고, 약간 이게 성희롱이구나.

B는 나이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문화가 직장 내에서 '잡무'를 나이 어린 여성에게 전가하는 차별로 이어짐을 경험하였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도 있었다.

'넌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커피 타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저를 직원이라고 안 부르고 여직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여자라서 이런 취급 당하는구나. 어린 여자라서 이런 취급 당하는구나 이런걸 느꼈고. 개 같아요. 싫죠. 다 막 언니 언니 해야 하고. 지금 일하는데도 나이가 다 많거든요. 언니 오빠 하고 팀장님 실장님 이렇게 부르죠.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죠. 돈 별라면 어쩔 수 없고. 하다못해 식사하러 가도 수저 이런 거 제가 놓아야 되고. (...)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짱 싫어요. 잡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4. 미숙한 존재 또는 부모의 소유물?

현행 법률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는 이러한 동의서가 오히려 청소년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낮게 만드는 실태를 경험하였다. 보호자의 동의는 청소년이 고용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착취를 예방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청소년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보호자 동의가 아닌 공적 보호체계로 전환할 필요한 이유이다.

사실 좀 괜찮아 보인다는 일자리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든 뭐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 청소년을 굳이 뽑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뽑을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청소년을 뽑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법에서 부모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일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청소년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알바를 할 때도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을 더 많이 뽑고 힘들고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의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노동을 할지 말지는 제가 정할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닌데 제 마음대로 제가 노동하는 거인데 그걸 왜 굳이 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부모동의서 그런 게 있으므로 해서 제가 면접을 봤다가 탈락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좋네요.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일부터요. 어 좋네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열여덟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럼 부모동의도 해야 되고,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큰 족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동의의 절차는 청소년을 비청소년과 동등한 인격체로가 아니라, 미숙한 존재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여성 청소년 노동자를 ‘말 잘 듣는 나이 어린 여자애’를 바라는 시각과 잇닿아 있다. B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을 미숙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청소년을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고 착취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고.

은밀하게, 잔혹하게 : 불안정 노동, 십대를 포획하다

- **더 멀리, 더 빨리, 더 위험하게**

: 배달대행노동이라는 신세계의 배반

- **‘화려한 파티’, 그 감춰진 뒷모습**

: 간접고용과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호텔연회장 서빙노동

- **한번 해보면 다시는 안 하고픈 ‘지옥 알바’**

: 위험 노동의 일용화, 택배 분류 야간노동

- **열정과 불안은 불태우라**

: 불안의 일상화, 무급의 장기화, 이벤트업체 노동

더 멀리, 더 빨리, 더 위험하게!

: 배달대행노동이라는 신세계의 배반

* 정리: 배경내

○ 조사 시기

- 2013년 9월 24일 면접조사

○ 조사 방법

- 인천지역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 C와 D의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 실태를 분석함.

○ 피면접자 소개

- C(18세, 남, 채성○)는 ★★업체에서 1년 가까이 배달대행을 계속하고 있고, D(18세, 남, 김은○)는 피자집과 족발집에서 배달노동을 하다 두 달 전부터 ○○업체에서 배달대행으로 일하고 있음.

- C는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배달대행 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D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 이후에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음. 모두 인천지역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고 있음.

오토바이 음식 배달은 남성 청소년들의 대표적 아르바이트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이나 서류, 휴대폰 등을 배달하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배달음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대행업체는 갈수록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식업계의 입장에서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배달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관리'하는 부담과 노동법 준수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필요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보강하거나 한산한 시간대에 지출되는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속칭 '꺾기'라고 하여 손님이 뜬 시간대에 노동자에게 휴무를 강요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된 바 있는데, 배달의 경우는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만 일시적으로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이다.

1. 배달대행이라는 신세계

청소년들은 대개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배달대행 일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다. 배달이 주로 밤시간에 집중되어 있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 배달 일을 하는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이다.

C는 대개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낮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열세 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다. 배달이 뜸한 낮에도 계속 대기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학교를 다니는 D는 학교가 끝난 뒤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여덟 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다.

C: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어요. (배달) 건당 2천원 받아요. 낮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요. 가끔씩 '일찍 퇴근해라.' 그래서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바쁘면 새벽 1시까지 하고. 낮에는 배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게임도 하고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래요. 쉬고 싶으면 말하고 쉬어도 되는데, 저는 계속 일해요.

D: 학교 끝나고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어요. 요일을 정해 놓고 매주 한 번씩.

배달대행업체를 가면 업체에서 지정해주는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일을 시작한다. 대신 오토바이 대여료(리스비)를 매일 지불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 사장이나 관리자가 가맹업체를 모집하고 전화주문을 받아 노동자들에게 배달 갈 곳을 배당해주는 방식으로 일이 돌아간다.

C: 돌아다니는 방식이 업체마다 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어디 가라' 이런 지명을 받고 움직이고. 어떤 데는 무전기 방식으로 돌아가고, 다른 데는 핸드폰 콜을 찍어가지고 업체에서 배달을 올리면 기사들이 찍어서 가고.

D: 처음에 가면 오토바이를 정해주죠. 대여료는 하루에 8천원. 가게 전기세 1천원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9천원씩 내요. 사무실로 출근해서 배달(주문)이 뜨면 순서대로 한 명씩 가는 거예요. 배달이 없으면 사무실로 복귀해가지고 쉬고 있다가 다시 배달 들어오면 가는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퇴근 시간에 리스비 내고 하면서 정산하고, 무전거나 카드기 반납하고 퇴근하는 식이에요. 오토바이는 계속 자기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퇴근할 때도 가져가고. 하루 평균 2-30건 정도 배달하는 것 같아요.

배달대행업체는 음식배달을 위주로 운영되지만, 그 외에도 서류배달이나 심부름배달도 함께 하고 있었다. 시의 경계를 넘어 먼 곳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C: 저희는 건당 2천5백 원 받아요. 인천 전역을 돌면서 일해요. 서류배달도 해요.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로 가져다 주거나 그런 것도 하고. 서울까지 가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잔심부름. 그건 기본료가 4천원이에요. 집에서 나가기 힘들 때 어디 가서 뭐 사다 달라고 하는 심부름. 그 집으로 가서 물건 가격하고 배달료 4천원 포함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생기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 기름값, 식사비, 물값까지 모두 노동자 개인 부담이다 보니 하루 13시간씩 일하고도 하루 벌이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본인이 얼마나 빨리 배달을 다녀올 수 있느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운전과 지리에 서툰 초반에는 수입이 거의 바닥인 생활을 감내해야 한다.

C: 리스비 내고, 중간중간 오토바이 기름 채워 넣어야 하고, 밥값이랑 물 같은 거 사 먹으면 하루에 나가는 돈이 3만원 이상 들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집을 나와서 잘 곳도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배달하면 아예 길을 모르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5천원 벌 때도 있고, 만원 벌 때도 있고. 그게 점점 나아지면서 세 달 이상 하니까 (길을) 다 알겠더라고요. (...) 요즘 평일에는 평균 한 6만원, 주말에는 8, 9만원 정도 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니까 만족해요.

배달대행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달하는 노동자가 먼저 업체에 들러 음식값을 치르고, 배달한 다음 주문한 손님에게서 받은 돈의 차액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중간에 반품을 하거나 하면, 그 손해는 오롯이 배달노동자가 져야 한다. 업체에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배달 도중 주문이 취소되면 업체가 손해를 보거나 손님이 책임을 진다. 반면, 배달대행의 경우, 주문을 받은 음식점은 이미 음식값을 챙겼으니 뒷전이고, 배달대행업체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배달 청소년에게 떠넘긴다.

C: 만약에 물건이 2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업체에 가서 1만 8천원에 사요. 손님한테 가면 2천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갖는 거예요. (...) 처음에 일 시작할 때 5만 원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게에다가 외상을 하고 다시 손님한테 받아서 다시 가게로 가서 그 물건값을 다시 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D: 음식점 들러 물건을 사고, 그걸 가지고 손님한테 가서 물건을 다시 팔아서 돈을 받는 거예요. 손님이 반품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저한테 물어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행에서는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길을 헤매서 늦게 가거나 해서 물건을 반품 받으면 자기가 그걸 사서 먹어야 돼요.

2. 청소년에게 고작 허락된 자리

배달노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스크’는 매연, 먼지 따위의 흡입을 줄이거나 방한의 도구이기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반면 ‘마스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대 폭주족에 대한 이미지, 야간까지 이어지는 일의 특성 등과 맞물려 ‘비행’의 이미지를 덧씌우게 된다. 실제로 만나본 배달노동 청소년들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일에 이끌린 것은 맞지만, 청소년이 ‘뒤통나게 돈을 벌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으나 할 수 있는 일이 배달 말고는 별로 없어서’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C: 솔직히 저희 또래의 배달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가정형편이 진짜 어려운 애들도 있는데,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을 안 하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폭주나 이런 애들을 봐가지고 무조건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 타는 걸 보면 ‘아, 재네 들은 다 그런 애들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저희로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D: 저도 맨 처음에 배달할 때는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했었죠. 한 번 이렇게 일 시작하다 보니까. 돈을 만지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하면은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니까 답답하죠. (용돈을 받아도) 필요한 만큼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거죠. 달라고 하기도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떳떳하게 돈 벌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사고 그러려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대개 건당 배달비를 곧장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고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배달대행 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늘 모자란 청소년들에게, 특히 탈가정 청소년에게는 한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매일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큰 매력이다. 배달대행에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다. 청소년보다는 20대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배달대행업체이기도 하다.

D: 청소년은 3-4명? 많았을 때는 7명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나갔어요. 지금 자격증 시험공부 하면서 한 서른 살 후반 되는 아저씨도 한 분 계시고요. 20대 후반 형도 한 분 계시요. 그래도 청소년이 더 많아요.

C: 많은 사장님들은 어린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토바이 험하게 타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대부분 20대 이상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돈은 벌어야 되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대행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대행은 10대 상관없이 아무나 와도 다 쓰니까, 면허만 있으면. 일단은 사람을 구해 와서 일을 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대행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 제가 지금 혼자 생활하거든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는데 여기는 그냥 하루에 번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싶어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못 그만두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해야 되니까.

3. 배반당한 기대

배달대행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지만 또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고용’ 업체에서 일할 때와 비교할 때 수입은 비슷한데 더 빠르게 일을 해야만 하는 배달대행의 ‘함정’을 알아차린다. 당연히 청소년들의 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함정을 알아차린 청소년들이 사라진 자리를, 다시 고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진 청소년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C: 원래는 한 90%가 다 십대였거든요.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십대는 저랑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원래 다른 피자 집이나 그런 데는 그냥 배달이 없어도 시간당 5,000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배달 없으면 아예 돈을 못 버니까. 배달 많아도 벌어들인 거에 비하면 솔직히 못 번다고 생각해요. 업체를 가도 그 정도는 받으니까, 더 쉽게 일하고. 대행을 하게 되면 놀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달 하다가. 몇 주 하다가 그렇게. <대행업체 일자리가 더 떨어지는 일자리인가요?> 그렇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업체는 다 알아서 해주는데 대행은 자기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애들이 그걸 몰라요. 업체랑 비슷하겠지 하면서 들어가봐요. 들어가서 며칠 해봤는데, 업체랑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한 명씩 나가는 것 같아요.

D: 처음엔 편해 보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업체에서 일하면 잡일 같은 거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런데 배달대행에서 하면은 그냥 배달만 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고 건당 2,500원씩 받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스비, 밥값, 기름값 이런 거 다 빠니까 비슷한 것 같고. 배달은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배달을 많이 뛰는 건 가는 지역도 더 넓어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지역도 거의 전 지역. 인천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부천으로도 넘어가고. (...) 애들이 다 못 버티고, 어리니까 아직 육체적으로 버티지 못하니까 도망가거나 그래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빠져나가고 싶는데... 가게에 사람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저마저 빠져나가면 가게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나가겠어요.

4. 더 멀리, 더 빨리, 더 위험하게!

배달노동은 사고가 잦기로 유명하다. 빗길 운전이나 과속, 신호 위반 등은 배달노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청소년들도 배달을 하면서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의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청소년노동자의 오토바이에 실려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C: 아는 애들이 배달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하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사고도 많죠. 저도 사고 많이 나봤고... <지난 1년 동안 일하면서 사고가 몇 번 정도 났어요?> 저는 4번, 5번. 제가 바빠가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가다가, 차가 자기 신호가 떨어져서 유턴을 했는데, 제가 그 차를 들이박았어요. 다행히 운전자가 제가 유턴하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박는 순간 '아! 큰 일 났다. 많이 다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은 들죠.

D: 한 번 크게 넘어진 적은 있었어요. 80킬로 정도에서 사거리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토바이에서 저는 튕겨져 나가고, 오토바이만 따로 전봇대에 부딪혀서.. 오토바이는 폐차 들어갔고. 한 달 정도 잘 못 걸었어요. 그 때 제가 배달 처음 해가지고 비오는 날 미끄러운지 잘 몰라가지고 브레이

크 잡다가. 그 때 그 이후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배달이 엄청 무서웠죠.

문제는 배달대행의 경우, 일반 업체에서 배달노동을 하는 경우보다 더 사고의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주문이 폭주하는 시간, 배달이 늦어져 반품이라도 들어오면 그 손해를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C: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게, 업체들이 바쁘면 저희들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업체 가서 물건을 다 받으면 5개, 6개 이렇게 신고 배달 갈 때도 있어요.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다 보면 신호 위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위험하게 탄다든가 하다가 차를 박을 수도 있고. 이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나고 싶어도. 주문 취소당하면 내 돈이 나가니까. 되게 부담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위험하게 타고 신호위반 하고. 업체에서도 계속 저희 사장님한테 재촉을 하거든요. 왜 우리 집 가게 주문 들어온 거는 배달 안 가냐, 왜 빨리 안 오냐 하면, 사장님이 저희한테 또 재촉을 하죠. '배달 빨리 해라, 배달 많이 밀렸다.' 그러면 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위험하게 타는 것 같아요. (...) 일반 가게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배달 갔다 와서 물건 신고 또 가면 되고. 그런데 대행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위험하긴 하죠.

D: 친한 친구 두 명도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어요. 며칠 사이에. 한 명은 배달대행인데 출퇴근 하던 중에 친구들 잠깐 만나러 가다가 죽었고, 한 명은 면허 따고 친구 오토바이 빌려 타다가 죽었고. 그럴 때마다 좀 무섭죠. 진짜 배달하기 싫죠. 그것도 한 3, 4일 이렇게 지나면 잊혀지고. 그런 소식 들으면 며칠 동안은 헬멧도 쓰고 신호 위반도 잘 안하고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차가 막혔는데, 뒤에 물건은 실려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역주행 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웬지 일하는 내내 웬지 좀 쫓기는 기분일 것 같네요. 무전기는 계속 울리고, 뒤에 음식은 실려 있고, 빨리 안 오냐고 성화는 계속되고> 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일반)업체에서는 진짜 마음 편히 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청소년노동자들이 배달노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체할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노동이 음식점 서빙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빙의 경우 손님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별로 부딪힐 일이 없는 배달 일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C: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 대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배달하는 애들이 고깃집 가서 서빙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일단은 배달은 그냥 오토바이 타고 물건만 갖다 주면 되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서 다른 데 가서 몸을 쓰고 하다 보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배달을 하는 것 같아요.

5. 홀로 감당하기

‘임금노예’, ‘착취공장’과 같은 말들처럼 자본주의적 임금관계에 예속된 노동자들의 전형적 모습은 한 사업장에서 장시간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소년들은 사업장 불박이로 고객을 지속적으로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을 배달노동의 큰 장점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 역시 만만치 않다. 배달이 늦어 주문이 취소되면 오롯이 청소년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된다.

D: 대행을 하면은 배고플 때도 바쁘면 밥을 못 먹잖아요. 배고플 때 일은 해야 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배달 늦었다고 화내고 짜증내요. 저희는 그냥 시켜서 가지만 한 건데 욕먹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는데 다른 차가 나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면 더 짜증 나가지고 가끔 택시기사 아저씨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도 화 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다음날 되면 다시 풀려서 오고. (...) 제가 서빙도 석 달 정도 해봤는데, 서빙할 때는 딱히 스트레스는 안 받아본 것 같아요. 서빙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덜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막 이렇게 불안한 심리도 없고, 마음이 편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C: 비울 때 주로 스트레스 받고, 업체에서 빨리 배달 가라고 재촉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해야 하니까. 일단 다 사회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꼭꼭 참고 있어요.

배달대행노동의 경우는 하루 종일 위험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이 그 모든 시간들을 홀로 감당해야만 한다. 밥을 챙겨먹는 일도, 기름을 넣는 일도 혼자서 하는 일들이다. 언제 배달이 생길지 모르는 상시 대기상태에 놓여있고, 홀로 배달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시간도 없다. 일이 힘들다 보니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도망치듯 오늘은 그만 두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일이 잦다 보니 ‘정 붙일’ 사람이 없다. 배달이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친구들과 소소하게 보내는 일상적인 시간들도 포기해야 한다. 외로움. 배달대행노동의 길은 그림자다.

C: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게 안에서 밥을 준다거나 해주시는데, 대행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니까. 자기가 밥을 혼자 먹든가 계속 혼자 챙겨야 되고. 대행은 정 붙일 사람이 없어요. 이 일 하려면 친구들 만나는 거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되요.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밤에 밖에 못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일상적으로 피씨방을 간다거나, 당구장을 간다거나 아예 그런 걸 못해요. 일상적이게 사소한 생활들이 다 없어져요. 하루 종일 배달만 하니까.

게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사무실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

C: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시키기는 하죠. 심부름 같은 거, 사무실 청소 같은 건 거의 막내 애들이 하나까. 제가 막내다 보니까 별 것 아닌 것들은 거의 도맡아 하고. 저는 배달 간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배달 왔으면 무시하는 거 있거든요? 어른들이 막 대하고. 처음 봤는데 반말 막 하고, 이렇게 늦게 왔냐 막 화내고 되게 많이 막 무시하고... 힘들고 비올 때 배달해도 손님들이 맛있게 먹겠다는 한 마디면 저희는 다 풀려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물건을 주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문을 쾅 닫아 버리고 그러면 '진짜 배달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죠.

D: 무시당하는 게 있죠, 어리다고. 뭘 하든. 물건을 주러 가도 좀 잘못하면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도 어리니까 쉽게 생각하죠.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화나서 손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었어요. 처음부터 화내시고 짜증내시면 배달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 양해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업체에 전화해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한 번 더 하려다가 손님이 업체에다 뭐라고 하면 그 업체는 또 저희 회사에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외로운 하루의 끝에서 같은 배달노동을 하는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간다.

C: 배달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는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배달하는 애들 끝나는 시간 거의 똑같아요. 12시, 1시. 그러다 보면 심심하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오늘 어쨌냐 저쨌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밥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러면은 24시간 하는 집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저희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밥 먹고 그냥 공원 같은데 가서 얘기 좀 하다가 헤어지고... 생활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6. '노동자가 아니다.'

같은 배달 일을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기대하기 힘들다. 실업수당, 퇴직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이다. 업체로서는 배달이 뚝한 시간에 굳이 시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 관리와 노동법 준수에 따른 부담을 덜고, 대행업체는 일할 사람을 모집해 업체로부터 배달 주문을 받아 배정해주는 간단한 일로 손쉽게 돈을 번다.

D: 업체에서는 이렇게 직원을 쓰는 거보다는 배달대행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직원이 일하다 그만두면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에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도망갈 위험도 없고...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배달대행 업체 쓰면 한 건에 2천원, 2천5백 원씩만 내면 마음 편히 쓸 수 있잖아요. 업체들이 배달대행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고 한 달에 15만원씩 내요. 저희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가 50개 정도 되거든요? 회비 받아 사무실 월세, 전기세 내고... 사장님 두 분이니까 반씩 나눠서 2, 3백 정도씩

벌어간다고 들었어요.

문제는 배달대행의 경우,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산수당이나 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012년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해 배달대행노동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일종의 개인사업자라는 행정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¹⁶ 그러나 실제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이들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대등한 사업자 관계라면 업무에 대한 동등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배달대행노동 청소년들에게는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없다.

D: 배달 늦게 가면은 업체에서 저희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좀 잘하는 애들만 멀리 보내고, 두 개 세 개 쪼여주고, 먼 데에서 또 먼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다른 애들은 받는 돈은 비슷한데 바로 앞 근처에 가기도 하는데, 배달 잘 한다고 멀리 보내면 더 짜증이 나죠. 사장님한테 항의해 봤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계속 자기만 생각하고 말하니까. 저희 입장은 거의 생각 안 해주시는 거죠. <항의를 하거나 거절할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죠. 해봐도 안 되니까.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하는 일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¹⁷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대책은 없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배달대행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멀리,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몰며 오늘도 배달을 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킨 '특수고용직'에게 갖은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주문이 취소되거나 사고 발생시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¹⁶ 경향신문, "배달대행 알바, 10 대 착취 활개", 2012.06.04.

¹⁷ 문화일보, "문신 보이며 알바생 협박 돈 빼앗아", 2012.08.24. 인천 계양경찰서는 10 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으로부터 지각, 보호,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4 차례에 걸쳐 모두 2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 대표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받아들인 합의금도 수리비 명목으로 빼앗고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게 협박했다.

‘화려한 파티’, 그 감춰진 뒷모습

: 간접고용과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호텔연회장 서빙노동

* 정리: 권혁태



- 조사 시기
- 2013년 9월

- 조사 방법
- 호텔 사업장 서빙 노동을 경험한 E와의 면접조사와 안심알바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함.

- 피면접자 소개
- E(17세, 여, 차혜○)는 롯데리아, 치킨집 등 음식점 주방과 서빙 노동을 주로 경험해 왔고, 호텔연회장 서빙 일을 잠시 경험한 뒤 현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1. E의 이전 노동경험

E는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을 하기 전에 음식점 서빙, 롯데리아 카운터, 치킨 집에서 주방 및 서빙 일을 한 적이 있다. 롯데리아에서 일을 했을 때는 출퇴근 시간을 전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업무준비 때문에 출근시간보다 항상 10~15분 더 일찍 도착해야 했고, 업무종료시간보다 항상 10~15분 더 늦게 퇴근했다. 그러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롯데리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분이라도 지각하면 10분당 1,000원씩 벌금을 물렸다고 한다. 업무상 필요한 준비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지각을 했다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부당한 처우를 받자 E는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진정 사실이 알려지자 매장 매니저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못 받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E는 청소년단체 활동가와 함께 매장을 찾아가 추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과 벌금으로 떼인 임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치킨 집 노동경험도 E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었다. 하루 일당을 3만원으로 하고 1주일마다 주급으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당시 사장이 ‘청소년들은 책임감이 없어 좀 힘들다 싶으면 일 안 나오고 잠수를 탄다’며 ‘4일치 정도는 깔아놓겠다(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E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자 사장은 ‘그만두지 말고, 일을 더해라, 4일치 12만원은 못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장의 말투가 협박 같아서 E는 그냥 ‘알겠다’라고 말하며 나올 수밖에 없었다. E는 못 받은 12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또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했다.

2. 청소년 알바의 대명사,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은 호텔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가족모임 때 음식물을 나르고 참석자들의 시중을 드는 일이다. 주로 주말에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물론 주중에도 일이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있다. 하루, 이틀만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도 많이 일을 하는 곳이다. E 또한 당일 연회장 서빙노동 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다.

저희 알바가 70-80명 정도 됐어요. 그 외에는 호텔 직원들이랑 같이 일했어요. 호텔 직원 한 스무 명 정도? 알바 절반이 열여덟 열아홉 언니 오빠들이었고요. 스무 살 좀 넘은 사람들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같은 경우는 단기 알바로 하루 하루 하는 것 같고요. 스무 살 넘은 사람들은 장기 알바로 하는 것 같아요. 남자에 비해 여자 알바가 더 많아요.

청소년들이 이곳의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주로 호텔연회장 서빙 구인전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호텔리어, 조인, 휴플렉스 등 수많은 호텔 전문 구인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구인사이트는 직업정보제공업체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텔로부터 연회장 서빙 업무를 도급 받아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다. 또한 전직 호텔 임직원출신들이 이들 구인사이트업체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구인사이트가 호텔과 청소년노동자 사이에 끼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구인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말, 주중 호텔 서빙 노동을 할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가 호텔 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쪼개 올라와 있고, 각 일자리 별로 시급, 근무시간, 호텔위치, 준비물 등이 기재되어 있다.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일자리(호텔, 시간대)를 지원하면, 구인사이트에서 출근 여부를 결정하여 주고, 청소년노동자는 당일 해당 호텔로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체계화된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의 구인과정이 이미 일반화 되어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OOOO(호텔연회장 서빙 구인전문사이트)가 있어서 OOOO에서 제가 일하고 싶은 호텔을 선택하면 그 쪽에서 연락을 줘요. 제가 선택하는 호텔마다 시급은 다 다르고, 저는 시급 5,000 원을 받고 일했어요. 사이트에 출근 시간이란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3시부터 10시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괄호치고 출근 2시 20분까지 해야 한다고 늦으면 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2시 20분까지 가면 호텔 입구에서 직원이 출석체크를 해요.

저는 그날 2시 20분까지 호텔에 도착해서 출근을 찍었어요. 오후 3시에 OOOO 팀장에게 가서 출근을 또 찍고 이렇게 출근체크를 두 번해요. 2시 20분부터 3시까지는 옷을 갈아입고 인원 체크를 하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업무 설명, 일하는 것 설명을 듣고, 4시부터인가 4시 30분까지 저녁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또 다시 모여서 다시 한 번 일하는 것 얘기해 해주고, 6시부터 손님이 오면 그 때부터 저희는 서빙을 하고, 손님 가면 9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 저희는 그냥 음식을 서빙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음식 드신 것 빼내고 이렇게 서빙을 해요. 손님이 가면 원형 테이블하고 의자랑 그런 거 다 있는데, 저희가 다 음식물 따로 모으고 다 정리를 하고요. 스무 명 정도는 따로 부엌에 가서 숟가락 포크 그런 거 닦아요. 그래서 저희는 10시까지 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시 15분까지 그 일을 했고,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해서 10시 15분까지 일을 했는데, 연회장에서 의자랑 상 정리하는 분들은 10시 이전에 업무를 마쳐서 옷을 갈아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은 당일 연회장 식사 시작 40분 전에 도착하여 업무에 관해 설명을 듣고 테이블을 준비 하며, 식사가 시작되면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등 뒷정리까지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것이다. ‘출석 체크를 2번 했다’는 E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실제 일을 하는 곳은 호텔 1 곳인데 호텔과 구인사이트 관계자가 따로따로 출석 체크를 한다.

3. 갑의 횡포: 인원 넘친다고 되돌려 보내기도

호텔연회장 서빙노동자를 구하는 과정이 호텔이 아닌 구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막상 당일 호텔에 도착해보면 서빙 인원이 예상보다 넘친다며, 현장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생긴다.

OOOO 사이트에서 25명 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좀 넘치면 호텔 직원이 △△△△, □□, OOOO 팀장들을 불러서 OOOO 직원한테 너희 알바생들 넘쳐서 알아서 자르라고 그런 말을 저희 앞에서 했어요.

E의 사례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경우 호텔연회장 서빙을 하러 갔다가 머리스타일, 구두, 벨트, 스타킹/양말 색깔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냥 되돌아 오는 사례도 있었다. 호텔에서 일을 하기로 해서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출근을 했는데(당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노동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이로 인해 청소년노동자들이 받은 보상은 없다.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막상 일도 못하고 돌아온 청소년들, 돌아오면서 그들이 느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4. E가 호텔에서 했던 일

E가 호텔에서 일한 시간은 낮 2시 20분부터 밤 10시 15분까지였다. 2시 20분까지 호텔에 도착한 E는 40분 동안 2차례의 출근체크를 하고, 호텔로부터 유니폼을 수령한 후 옷을 갈아입는다. 옷은 연회장 옆 창고에서 갈아 있다. 그리고 호텔과 구인사이트는 이 40분 동안 인원을 체크해서 넘치면 일하러 왔던 노동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운 좋게 첫 번째 ‘갑’의 횡포를 무사히 피한 E와 당일 서빙노동자들은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호텔 직원으로부터 당일 서빙 노동에 관한 설명, 관련 교육, 지정 테이블 배치를 받는다.

저희 연회장이 테이블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원테이블을 5개로 나누면 10개가 되고요. 4명이 4테이블씩 나눠서 하도록 구역을 나누고 맡게 되는 테이블은 몇 번 몇 번 테이블이고, 음식 나오면 서빙 하면 되고, 치우면 되고, 그리고 VIP석은 직원들이 할거니까 너희들이 안 가는 게 좋다. 만약에 그릇을 깨거나 와인 같은 경우 깨거나 그러면 너희가 다 물어내야 되니까 조심해라.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식사를 한다.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종종 뷔페 같은 호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식사는 직원식당에서 별도로 제공된다. 30분간의 식사시간이 끝나면 6시 연회장 식사 시작 전까지 당일 업무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듣고, 식사 준비 업무를 한다. 그리고 6시부터 손님들이 오면 음식 나르기 등의 서빙 업무를 하고, 중간 중간에 대기를 한다.

6시부터 손님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몇 명만 물을 따르러 가고요. 그 외에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대기 해라', 그리고 음식도 나르다가 좀 손님이 음식을 들고 있을 때 저희가 할 게 없으면 '대기해라', 일 중간 중간에 할 게 없으면 '대기해라', 이러면서 휴식을 가져요.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음식을 서빙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음식 나르는 구석에서 기다리다가 '음식 날라' 이러면 그 앞에도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음식을 주면서 저희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연회장 옆에 왼쪽 B구역 오른쪽 A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 저희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문 바로 앞에 병풍이 쳐져 있어요. 손님들이 저희를 안 보게끔. 그러면 저희는 병풍 뒤 바닥에 앉아서 손님들 안 보이게끔 숨어 있다가 음식이 나갈 때가 되면 음식을 받고 그 병풍 앞으로 가서 출입구를 통해서 음식을 서빙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서있고, 움직이는 직업이어서 알바생들이 발 아프다고 앉아서 쉴 때는 신발을 벗고 있고요.

음식이 좀 뜨거웠는데 그거는 호텔 직원이 '음식 뜨거우니까 조심하 들고 다니라'고 저희한테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쟁반이 있는데 이번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은 다 손으로 서빙하는 걸 원한다고 해서 쟁반을 쓰지 않고 다 손으로 직접 두 개, 세 개, 네 개씩 들고 이렇게 서빙을 했어요. 장기 알바나 직원들은 그런 일을 잘하기 때문에 네 개씩 들고요. 저는 뜨겁다고 그냥 양손에 하나씩 두 개 들고 서빙을 했어요.

자기 또래의 누군가는 고급 호텔연회장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였겠지만, E와 같은 청소년노동자들은 손님들로부터 감춰져야 하는 존재였고, 손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뜨거운 음식 그릇을 날라야 했다. 이렇게 9시경 손님들이 가기 전까지 서빙 업무를 하고 나면 이후 1시간 좀 넘게 정리 업무를 한다. 정리업무는 테이블 정리, 음식물 처리, 설거지 등이다. 이렇게 그날의 노동을 마친 시각은 10시 15분이었다. E는 업무 중간 중간 병풍 뒤 바닥에 앉아서 쉬었다고 했지만, 호텔이 E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30분에 불과했다.

(실제로 알고 있었던 조건이랑 일했던) 시간은 좀 달랐어요. 3시부터 10시까지로 써 있었는데 2시 20분까지 출근을 했고 10시 15분까지 일을 했어요. 그 외에 근로조건은 사이트에 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휴식시간은 밥 먹는 것까지 합쳐서 30분 주셨고요. 그런 것도 사이트에는 휴식시간이 4시간당 30분씩 되어 있는데, 지켜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기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쉴 수 없고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아닌 '노동'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노동을 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E는 이날 낮 2시 20분부터 밤 10시 15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 25분을 호텔에서 일했다.

5. 무료노동 강요와 이체수수료 공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7시간 이내이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0.5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가 넘는 노동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이기 때문에 0.5배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E가 받기로 한 시급은 5,000원이고 2시 20분부터 10시 15분까지 일을 했으므로 노동시간 7시간 25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37,083원을 받아야 하며, 25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1,042원과 15분의 야간노동에 대해 625원을 각각 가산수당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E가 이날 받아야 할 임금은 총 38,750원이었다. 호텔연회장 서빙노동을 마치고 며칠 후 호텔이 아닌 구인사이트에서 청소년노동자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준다(사이트에 가입할 때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E는 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까?

사이트에서는 시급 5,000원으로 해서 3시부터 10시까지 일했는데, 3만원이 들어 왔고요.

〈그러면 3시부터 10시까지 일한 거라고 치더라도 이걸 7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7시간 분 임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7시간이었다면 저는 35,000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는 30,000원정도 들어 왔고요. 거기서 만약 (휴게시간) 30분을 빼다 해도 32,500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만큼도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1시간 분의 임금이 원래 주기로 했던 거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체 수수료도 청소년노동자에게 전가했다. E의 통장에는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이 공제된 채 29,500원이 입금돼 있었다. 게다가 구인업체는 1시간 45분에 해당하는 시급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떼 먹었다. 구인사이트에 공고된 노동시간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E를 비롯한 당일 청소년노동자들은 낮 2시 20분부터 밤 10시 15분까지 일을 하였다. 하지만 구인사이트에는 이러한 노동시간을 애초부터 모호게 기재해 놓고 있다.

[시급 0000원 / 출근시간 2시 20분까지 / 근무시간 3시부터 10시까지(또는 행사 종료시) / 근무시간 중 1시간은 식사&휴게로 공제].

실제 근무시작은 2시 20분부터이지만 마치 3시부터가 근무시간인 양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애매하게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공고하고, 1일 근로에 대한 총액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청소년노동자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우며, 꼼꼼히 살피더라도 액수가 몇 천원 수준이라 포기하고 만다. 구인업체로서는 쉽게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구인사이트에 기재된 이 내용들은 오히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로도 사용된다. 구인사이트는 당일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출, 퇴근 시간을 직접 기재하라고 했다. E는 그 자리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출, 퇴근시간을 정확히 기재하려고 했고, 40분간의 대기시간과 15분의 초과노동시간이 임금에 포함되냐고 직접 물었다.

제가 2시 20분에 출근을 했는데도 0000에서 3시로 쓰라고 해서 3시로 썼고요. 제가 10시 15분까지 일을 했어도 제가 퇴근을 찍으러 가면 10시 15분을 쓰는 게 아니라 10시로 쓰라고 0000 팀장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10시 15분까지 일을 해서 저는 퇴근시간을 10시 15분이라고 적었는데

10시 15분 지우고 10시로 쓰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시 15분까지 했는데 왜 10시로 쓰냐?’ 그랬더니 ‘아, 그냥 15분은 네가 봉사한 걸로 치자’며 ‘10시까지로 사이트에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10시로 썼다’고 해서 저도 10시로 썼고요. 그리고 제가 2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2시 20분부터 3시까지 일한 40분도 돈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사이트에 2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쓰여 있지만 근로시간은 3시부터 10시부터 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동의하고 일하러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시간은 임금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냥 봉사한 걸로 치자, 사이트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너도 동의하고 일하러 온 거 아니냐’는 구인업체관계자의 말은 초과근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구인사이트의 애매한 공고 내용, 출퇴근 시간 기록 허위 기재 강요, 구인업체 관계자가 E에게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구인업체가 고의적으로 청소년노동자들의 1시간~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떼먹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서 심지어 이체수수료까지 공제한다. 이와 같이 만연한 무료노동 강요와 임금공제는 여타 청소년노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6. 임금차액지급 요구에 대한 구인업체의 황당한 답변

안심알바신고센터에는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을 했다가 위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접수된 사례가 흔하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자가 진정을 하거나 전화로 지급을 요구하면 못 받은 임금을 청소년노동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해결하였던 경험이 있는 E도 입금된 임금 액수를 확인 한 후 구인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E와 구인업체 담당자간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자.

E: 제가 저번 주에 알바를 했는데요, 알바 한 돈이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요.

업체: 어떻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E: 제가 근데 2시 20분부터 출근을 하고 10시 15분까지 일을 했거든요.

업체: 네.

E: 근데 거기 OOOO쪽에서 출석체크를 3시로 적으시고 10시 15분에 적으려고 했는데 10시라고 적으셔서.

업체: 네. 원래 2시 반에 출근하라고 한 것은 준비하려고 2시 반에 올라오라고 한 거구요. 근무시간표는 3시부터인데 2시 15분은 아마 애매해서 잘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 털 들어왔다는 거예요?

E: 네.

업체: 아 그러면 일단 30분 그럼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E: 네. 아 2시 20분부터 3시 사이요?

업체: 예, 그렇죠. 그걸 처리해드리는 거죠.

E와 직접 통화한 업체관계자는 관리자로 보이지 않았다. 실무자가 이름 등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순순히 30분 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보내주겠다고 바로 답변한 것을 보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어 문제를 제기하면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1시간 45분에 대한 임금은 업체가 고스란히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체수수료 공제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E: 아 그리고 수수료 500원은요?

업체: 타 은행이라서.

E: 타 은행이라서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지불해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지불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업체: 아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라고 홈페이지에 써놨잖아요. 신한은행이 아니면 다 본인 것에서 공제되거든요. 저희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공제되는 거예요.

이체수수료는 자신들이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금은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면서, 그 부담을 청소년노동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E가 30분에 대한 임금을 더 받더라도 그 임금 총액은 6시간 30분에 대한 것이다. 실제 E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25분이다. 이체수수료와 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55분에 대한 임금은 왜 주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구인사이트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히다.

E: 근데 30분 쉬는 건데 1시간이 쉰 걸로 한 거니까 2,500원이 덜 들어온 것 같아서요.

업체: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이면 저희가 1시간이 공제되거든요. 산재보험비랑 그것 때문에 1시간이 공제되는 거예요.

E: 그럼 몇 시간부터 1시간이 공제되는 거예요?

업체: 7시간부터 (1시간 공제), 그리고 5.5시간부터 7시간까지는 30분

E: 근데 저는 1시간을 쉰 게 아니라 30분을 거기서 휴식시간을 주셨거든요.

업체: 30분 식사시간요?

E: 네.

업체: 네. 원래 30분 식사시간이랑, 산재보험비가 빠져서 1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E: 산재보험비요?

업체: 네.

구인사이트는 산재보험료로 5,000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1시간 임금을 뺐다고 말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되어있다. 설사 산재보험료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E로 인해 이 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5,00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업체 담당자가 산재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오인해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다(일용직노동자라도 고용보험료는 납부한다). 일당이 32,500원이면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액은 200~3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인사이트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있는 것이다.

7.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인 대우

청소년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노동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용자, 관리자의 비인권적인 대우 일 것이다. 고가의 음식,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호텔연회장 속 ‘화려한 파티’, 그 이면에도 이러한 비인격적, 비인권적 대우가 감춰져 있었다.

호텔 직원이 저희한테 △△△△, □□, ○○○○ 각 업체별로 두 줄로 앉아라 이러면서 좀 시끄럽게 떠든다 싶으면 욕설을 하세요. 저희한테 ‘조용히 해라’이러면서 욕을 하구요. 그러다가 저희가 떠들다가 조용히 안 한다 싶으면 일어나서 ‘너 일어나서 저 문보고 서 있어’ 이렇게 해요. 호텔 A팀 B팀 나누어서 대기할 때 어떤 언니 같아요. 언니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좀 있다가 다시 떠들자) 호텔 직원이 좀 화가 났나 봐요. 너무 떠들어서. 그래서 ‘너 일어나서 저기 연회장 문 보고 서 있어’라고 해서 그 언니가 일어나서 연회장 문을 보고 서 있었어요. 대기시간에 계속 서있다가 음식이 나가자 들어와서 음식 들고 서빙한 거예요.

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시킨 것은 물론, 청소년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자(호텔 정직원)의 욕설과 반말도 일상화되어 있었다.

어... 그냥... 욕 다했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이러면서. 욕 다했어요. ‘너희 왜 이렇게 떠드냐’하시고. 직원들끼리도 ‘아이 씨발’이러면서 하고요. 대기할 때 호텔 직원들이 저희랑 대화를 했어요. 그냥 평범한 대화를 했는데 ‘너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 할 때도 좀 욕설을 썼고요. (호텔 정직원) 언니랑 저희랑 대화를 했는데, ‘여자들은 존나 이빠야 된다’고 그러면서. 호텔 정직원 중에 남자분도 있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자 호텔 여자 직원이 장난 삼아 ‘공부 존나 열심히 해도 나처럼 이렇게 손발이 힘들다’고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욕설을 좀 했어요. (호칭은) 저희를 따로 부르지는 않았었구요. 그냥 가리키면서 ‘너, 너, 너, 너’ 이렇게 인원 체크 하고, ‘너, 너, 너, 너, 너. 몇 명 따라와’ 이런 식으로 (반말로)

호텔 정직원의 이러한 폭력적인 언행은 사회, 사용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거리낌없이 청소년노동자들에게 분출하는 모습에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막 대해도 무방하다는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인 대우가 노동 강도나 임금 수준보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E가 일했던 이 호텔연회장은 다른 호텔연회장보다 호텔 정직원의 태도가 비교적 관참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호텔 알바는 다시 안 할 생각이예요. 일이 다른 제가 일했던 서빙 같은 일보다는 호텔 알바가 쉬웠는데요. 직원들이 저희한테 막 대하는 게 너무 많고, 좀 그래서 일하기 싫어요. 다른 언니가 2~3번 다른 호텔들에서도 일 해봤는데 이 호텔이 그래도 제일 관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지 않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호텔 정직원의 태도가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음에도,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라면 다른 호텔연회장은 어느 정도일까?

8.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와 사용자 책임의 모호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자를 모으고 노동시간을 체크하고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구인업체였다. 이 호텔과 구인업체간의 관계를 보면 호텔과 이들 구인업체가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구인업체가 모집한 청소년노동자들을 호텔연회장에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안심알바신고센터 관계자가 다른 호텔과 다른 구인사이트 업체에 이와 관련된 확인 전화를 해보았다.

〈안심알바신고센터-호텔 관계자 통화〉

안심알바센터: 혹시 근로계약을 쓰셨나요?

호텔: 저희는 업체구요,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아닌 거기 용역회사에서 썼겠지요?

안심알바센터: 네, 그러면 ◇◇◇◇◇(구인사이트)이 용역업체인가요?

호텔: 네, 외주업체.

안심알바센터 :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심알바신고센터-◇◇◇◇◇ 관계자 통화〉

안심알바센터: 왜 근로계약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요 직업정보소개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네.

안심알바센터: 다른 자격은 있으세요?

◇◇◇◇◇: 다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심알바센터: 아니 그러니까 직업 정보...

◇◇◇◇◇: 아니 전 지금 근데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심알바신고센터-◇◇◇◇◇ 자문 노무사 통화〉

안심알바센터: 직업정보를 제공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노무사: 네네.

안심알바센터: 네 근데 이렇게 파견하시면 될까요?

노무사: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런 업체가 내가 보기엔 지금 한 스무 군데 정도가 있어요.

안심알바센터: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네네. 스무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애매한 그런 법에 이걸 뭐 파견도 아니고 직업정보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성격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참 뭐 제가 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호텔은 용역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구인업체 관계자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 업체의 자문 노무사라는 사람조차 파견업인지 직업정보사업인지 애매하게 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업체가 스무 곳도 넘는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인업체의 이 도급업무가 불법파견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호텔연회장 서빙 노동 과정을 보면, 서빙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들은 구인업체가 아닌 호텔측 관리자와 직원이다. 구인사이트가 하는 일은,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연회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파견사업을 하면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한다. 근로자 파견사업은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다. 탈법적인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형태가 호텔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호텔로서는 용이한 인사관리와 책임전가가 가능하고, 구인업체는 구인업무와 인사관리 업무를 대행하면서 중간수익을 챙기는 이해가 상호 부합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탈법적 고용형태는 중간착취 즉 청소년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군가가 가로채는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호텔이 이와 같은 고용형태로 호텔연회장 서빙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 호텔은 일일 서빙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곳도 있다. 서빙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모 최고급 호텔의 시급과 앞서 E가 일했던 호텔/구인사이트의 시급을 비교해보면 직접 채용하는 호텔의 시급이 1,000~2,000원이 가량 더 높다. 하루 7시간 임금으로 치면 그 격차가 7,000원~14,000원이다. 단순 비교가 무리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간접고용 형태로 중간에 사라지는 임금이 상당 수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관행처럼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거나 산재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떼는 노골적인 거짓말도, 호텔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대외적 이미지 등이 고려돼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같은 고용형태는 모호한 사용자 책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다. E 또한 구인사이트인 OOOO에 전화를 해서 직접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통장 입금자 명의를 수정이 가능하고, 일이 끝나면 누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 없으며, 인터넷에는 OOOO가 직업정보소개업체라고 써있고, 일은 호텔에서 했으니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석체크 하는 직원한테 돈이 언제 들어오냐는 말을 물었을 때도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일을 하고 며칠 안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제가 일한 임금은 호텔에서 주는지 OOOO에서 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OOOO 가입할 때 (기재한) 계좌번호를 OOOO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OOOO에서 주는 것 같아요.

탈법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애매하면, 임금체불, 산재 등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노동자로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호텔이나 구인사이트가 서로 책임이 없다고 떠 넘기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모든 불편과 손해를 청소년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호텔과 구인사이트간의 책임공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9. 탈법적 고용형태의 틈바구니에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연회장에서도 다른 청소년노동에서 자주 접했던 임금 떼먹기, 비인격적인 대우를 예외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연회장 서빙노동이 다른 청소년노동과 달랐던 점은 탈법적인 고용형태가 체계적이고 공개적이며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간접고용,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위장도급. 이 낱말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나타내는 키워드였다. 노동인권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 어두운 키워드는 호텔연회장 서빙 청소년노동자들에게도 확산되어 있었고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청소년노동자들이 호텔연회에서 일을 하려면 이 탈법적인 고용형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노동자는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른 채 정당한 노동대가의 어떤 부분을 은밀하게, 나머지 어떤 부분은 노골적으로 호텔/구인업체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우려가 되는 것은, 행정/사법당국이 이러한 형태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호텔과 구인사이트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 아예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러한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현재 구인사이트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허가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간접고용 형태가 합법적으로 존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인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노동자 파견시 제한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파견법 개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해보면 다시는 안 하고픈 '지옥 알바'

: 위험 노동의 일용화, 택배 분류 야간노동

*정리: 이수정

○ 조사 시기

- 2013년 11월

○ 조사 방법

- 택배물품 분류 야간노동 경험이 있는 F와 G의 면접을 통해 드러난 노동 실태 분석.

- 면접을 통해 파악하기 힘든 택배 노동 구조와 고용형태 등은 신문 기사와 개인이 작성한 글 등을 참고하였음.

○ 피면접자 소개

- 학교를 다니고 있는 F(20세, 남, 최기○)와 G(20세, 남, 김승○)는 학업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을 찾던 중 방과 후에 일할 수 있는 야간노동을 찾게 되었음.

- F는 택배 야간 분류 노동 경험이 2~3회 있었고, G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음.

- F와 G는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데, 택배 야간노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 두 사람을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였음.

1. 구직 과정부터 겁먹게 하는 '지옥의 알바'

F는 학업과 야간노동이 가능한 24시간 영업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은 매일 혹은 월, 수, 금 등 고정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비해 택배 야간 분류 노동은 일할 수 있는 날 인력사무소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몸은 고달파도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인력사무소는 대개 도심 외곽으로 이동이 쉬운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바로 일당을 지급받는 점도 이 노동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였다. F가 택배 분류 노동을 선택한 조건처럼, 탈가정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도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분류 야간노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물류센터가 밀집해있는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도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중, 주말 아르바이트로 야간 택배노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배 물품 배송은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나 쇼핑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우체국이나 전문 택배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택배물품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일은 전문 택배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모집한 노동자들을 소개 받아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택배 혹은 00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은 하지만 △△택배, 00택배 등에 직접 고용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입고 일한 빨간 조끼 등 번호로 소개받은 인력사무소를 구분할 뿐이었다.

F: 어느 회사에서 공고를 냈었던 거 같아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00택배, 그러니까 뭐 △△택배도 그렇고 다들 방식이 인력사무소가 하는 방식이고 한가지 다른데도 있었는데 무슨 ***쇼핑? 거기에서는 ***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써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G: 빨간색 조끼였나 노란색 조끼였나 하는데 뒤에 숫자가 있었어요. (...) 저는 5번이었는데 그게 아까 인력사무소 별로 똑같은 인력사무소는 같은 번호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녁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일하는 택배물품 분류 야간 노동은 속칭 ‘지옥의 알바’로 통한다. 낮 동안 전국에서 모인 물품을 밤새 지역별로 분류하고, 상당한 무게의 물건을 화물차에 싣고 내리는 일(이하 상하차 작업)을 반복하는 중노동이기 때문이다. 택배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보다 인력소개소를 통한 하루 단위의 노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며 연령은 10대부터 4~50대까지 다양했다.

F: 음... 여성분도 있었던 거 같고요. 여성분은 물류 분류작업을 하는 쪽에 몇 분 계셨던 거 같고, 그리고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했던 거 같아요.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저에게 노하우를 알려 주셨던 분은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저희 2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일이기도 하고 그래서였나 봐요. 그리고 30대 분들도 많았고 좀 다양했던 거 같아요.

하루 단위의 단기 노동이 주가 되는 이유는 물품분류와 상하차 작업이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과 일하는 시간이 야간에만 이뤄져 장기간 일할 경우 버텨내기 힘든 업무라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노동자들이 일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택배 노동 경험 유무와 나이 등을 묻고 고된 노동과정을 암시하며 거칠게 응대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F: 어떤 데 전화를 했더니 거기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 이거 정말 힘든 일이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야 되고 막... 또 뭐라고 했더라? ‘쫄빵이’ 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여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뭐 시간도 안 맞지만 그런 생각했고.

택배 물류센터는 주로 대전이나 평택 등 도심 외곽이나 소위 물류의 중심이라고 하는 충청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에서 일을 구하는 경우라면 오후 4시 반 정도까지는 인력소개소에 도착해야 평택이나 대전, 이천 등지의 물류센터로 함께 이동할 수 있다. F와 G는 일한 다음 날 학교 수업 시간을 맞추려고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한 구로지역의 택배 물류센터를 택했다고 했다.

F: 그.. 택배 알바를 하려고.. 알바를 찾아보는 거는 알바 천국 그 있잖아요. 모바일 앱이 있어서 그걸로 들어가서 알아봤는데 학교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다른 알바 장소들은 다섯 시 반까지 모여서 대전이나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맞아서 더 알아보다가 여기 구로에 있는 이 작업장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따로 어디 안 가고 한 여섯 시 반까지 와도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2. 3인 1조 관리방식과 위계적인 작업 환경

택배물품 분류 노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다. 화물차가 도착하면 물건을 내리는 하차 작업이 있고, 내린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다시 화물차에 싣는 상차 작업이 있다. F가 했던 일은 상차 작업(화물차에 택배 물품을 싣는 일)이었다. 크기와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물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오면 화물차에 차곡차곡 싣는 일이라고 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 ‘조심하라’ 정도의 주의사항과 ‘일하는 도중에 그만 두고 가게 되면 일당 없다’는 ‘엄포’만 있을 뿐 하는 일과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 인력소개소를 구분하는 등 번호가 적힌 빨간 조끼를 입고 작업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3인 1조로 작업이 이뤄진다.

F: 일했던 거는 물류작업 같은데 저는 상차 일을 했거든요. 상차 일은 저기 컨베이어벨트에서 물품들이 내려오면은 화물차에 차곡차곡 싣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거는 그냥 처음에 한 50명 정도 모여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빨리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짐을 내려놓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인력소 직원에게 들었던 거는 여기는 일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시간 일하고 간다 해도 그 시급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 열 두 시간 근무하는 건데 거기서 아마 아마도 오늘 그 추가 추가로 하게 될 거다 뭐라더라? 추가로 더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알겠다고 하고 배치를 받았었죠.

3인 1조의 구성은 직원 1명, 경력직 1명, 단기 ‘알바’ 1명이다.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과 혹시라도 단기 ‘알바’가 도중에 돌아갈 경우에도 최소 인원이 남아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였다. 3인의 일은 소속과 경력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직원과 경력직은 주로 지시하거나 물품을 바코드로 찍는 일 등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일을 하는 반면 단기 ‘알바’는 일 시작부터 끝까지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고 화물차에 싣는 일을 반복한다. 한 조 3명 사이에 “어떤 계급 같은”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다. 초보인 ‘알바’에게 가장 힘든 일이 강요되는, 위계적 구조였다.

F: 그 구조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인력사무소 별로 이렇게 쭉 서잖아요. 그 거기에서 바로 세 명씩 끊는 방식이 아니라.. (...) 제가 보면은 그 세 명, 두 명 중에서도 한 명은 인력사무소

직원인 경우가 많은 거 같고, 한 명은 거기서 몇 개월이고 일을 해서 하는 식인 거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세 명이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초보인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택배 아니 화물들이 오면 그걸 쌓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쌓는 일을 초보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쌓는 물품들을 찍어야 되니까 찍는 작업을 그 인력사무소 직원인 사람이 그 찍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베테랑과 초보가 물품 올리다가 이 직원은 심지어 잠깐씩 어디로 가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시간에 베테랑이 찍고 초보는 또 혼자서 쌓는 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거기에서도 되게 어떤 계급이라고 할까 직책이 나눠져 있어요.

한 조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F의 경우 조가 배치되자마자 나이를 묻고 바로 반말을 듣는 등 배려가 없었던 반면 G의 경우 조가 “잘 걸려서” 일하는 내내 험악한 분위기 없이 배려하면서 일했다고 했다.

F: 그 처음에 조가 짜져서 세 명이 모이게 됐을 때... 첫 번째 화물차가 들어오기 그 잠깐 사이에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 일을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그 순간부터 반말을 바로 들어요. 그리고 말 많이 나온 대로 어떤 설명이 하나도 없고,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닥치는 것만 계속 하는데 뭔가 내가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거 같고 또 이 사람은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거 같고, 나한테 반말하고 폭언하는데...

G: 저는 정말 사람이 잘 걸린 거 같아요. 저는 다 존대어 써주셨어요.

주로 고함과 지시를 통해 일이 진행되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체 일 순서의 어디쯤 있는 일이고 일을 하다 생기는 돌발 상황은 무엇이고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서툰 일에 적응하라 돌발 상황에 대응하라 늘 긴장하면서 있어야 했다.

F: 작업장 안에서 곳곳에서 고함소리가 들리고 욕 소리가 들리고 그 때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다들 욕을 들었다고 하고 한 명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고 하는 식으로 아무래도 업무강도가 더 세다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도 거친 분위기였어요. (...) 거기 택배작업장 자체가 어떤 고함으로, 고함이라는 방식 위주로 이렇게 이뤄지는 곳인 거 같았어요.

택배분류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쉬기 시작하는 저녁 7시부터 일이 시작된다. 처음 하는 고된 일을 긴장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몸이 몇 배로 더 피곤해진다. F는 무거운 상자를 짐 없이 들고 내리는 동작이 반복되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자만 봐도 무게가 어려워 겁이 난다고 했다.

F: 무슨 부산에서 보내는 거였는데 오징어박스인가? 그건데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저도 한 스무 개 정도 오고 사과박스 스무 개 정도 오고 하니까 그것도 오면은 아 이거는 무게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니까 크기를 보면 무게가 짐작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본 거에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아 또 이거구나 해

서 예 막 겁이 나고 그랬죠.

국제암연구소(세계보건기구 산하)는 이미 2007년에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했다. 그 유해성이 인식되면서 주간과 야간에 교대로 24시간 작업하던 사업장이 주간에 2교대로 일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신속한 배송을 목표로 경쟁하는 택배 회사들의 야간 노동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졸음을 쫓아가며 야간 12시간 동안 초긴장 상태에서 중량물 작업을 반복하는 현장에 처음 갔던 G는 노동강도와 일하는 시간에 비해 임금이 “진짜 적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12시간 일하면 65,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시간당 약 5,400원 꼴이었다. 2013년 당시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이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50%이상을 적용해보면 적어도 시간당 7,290원이 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면 65,000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야간에 이뤄지는 노동이고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임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은 임금이었다.

F: 12시간 일을 하면 6만 5천원을 받고. 추가를 하면 또 추가해서 한 시간에 5천 원씩 해서 더 받는 식인데, 한 시간에 5천원으로 계산을 하면 될 거 같아요.

G: 아니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그랬는데 나중에 하고서 나올 때는 진짜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하고 또 저는 도중에 나왔으니까 저는 막차 때문에 11시에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한 거의 두 배의 시간 동안 하고 6만 5천원밖에 안 받는 거는 너무 적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청소년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하루짜리 단기 알바는 꽤 많이들 한다면서요?

3. 돈도 못 받고 도망가다 : ‘일회용’ 취급되는 단기 ‘알바’

F와 G는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함께 일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늘 있는 일처럼 무덤덤했다고 했다. 왜 일하는 도중 가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고, 가기 전에 소지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 당황했다고 했다.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G는 일 시작 전에 인력사무소로부터 들었던 말(“도중에 가면 일당이 없다”)대로 몇 시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데 마치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F: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제가 소개받은 그 인력사무소 직원이랑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중앙사무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냥 작업장내의 중앙 쪽으로 가봤더니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깐 그 인력소 직원을 불러주고 그래서 그 직원한테 내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어 그러면은 사무실 쪽으로 가 있으라고 되게 태연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있었더니 그 창고 문을 열어주고 제 짐을 빼고 나왔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 이렇게.

G: 정말 약간 사람을 부품으로 쓰는 듯한.. 아직 기체가 발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4. 한번 해보면 절대 안 한다 : 임금갈취와 위험한 노동의 책임 전가

F는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관리자의 폭언에 항의하고 도중에 나온 적이 있었다.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직원이 몇 시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고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시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00택배 물류센터 역시 12시간 노동시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듯 일러두고 일을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을 못 받을까 봐 힘들어도 도중에 그만두지 못하고 참으면서 일했다고 했다.

F: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유가 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한다고.. 말했다시피 일당개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몇 시간 일했다고 시급을 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일하는 동안 한 6시간 일했을 때 그만두고 싶은데 그거를 그만두지 못 하는 거죠. 돈을 아예 못 받으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들 좀 한 달 정도 택배를 한 친구가 유일하게 있고 제 친구들 대다수는 한번 해보고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실제로 못 받았죠. 이번에 이 친구가 막차 때문에 그 중간에 갔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돈을 아예 못 받았죠. (...) 저번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랑이를 했기 때문 같아요. 폭언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락을 했었던 처음에 연락했던 인력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와서 네가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때 동안 일한 돈하고 차비까지 없어서 얼마 정도 돈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 실랑이를 했으면은 받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가 저번에 싸워서 그 돈을 받았을 때 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그 싸우는 과정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자 싶어서 말을 안 했죠.

이처럼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일한 시간 만큼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경험이 없는 초보자를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간접고용하고 중간에 가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취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을 시작하기 전 인력사무소 측에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면 일을 마친 후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일하기로 한 시간을 다 못 채우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했다.

F: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겠다 싶은 점이 뭐냐 하면은, 계속 어떤 책임을 다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도 뭐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다 본인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일당으로 지급되니까 시급으로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저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뭐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거의 쉽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 그니까 마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럼. 그니까 ‘너도 중간에 나가면 돈 안 받을 거지?’ 하는 식으로... 여기는 원래 일당 받는 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 처음 일하면 중간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깐 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앞서서 했던 말이 막 걸리고 하니깐 거기 분위기도 그렇게 친절한 분위기도 아니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임금 갈취 뿐 아니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밤을 꼬박 새면서 피곤한 몸으로 반복하는 중량물 작업, 택배물품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가며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맨손 작업, 고성으로 작업 지시가 이뤄지는 거친 분위기 등 ‘지옥의 알바’로 불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다. 특히 나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뿐 아니라 폭언과 험악한 작업 환경을 견뎌야 하는 긴장과 불안함이 몇 배는 더 힘든 노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였다. 처음 택배물류 일을 한 G의 경우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언제 쉴 수 있는지, 쉬는 곳은 어디인지, 물 먹을 곳은 어디인지 등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데다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 했다.

G: 휴게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령껏 쉬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인데 어떻게 요령껏 쉬죠?(...) 이게 딱 정해놓고서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오는 거 있으면 또 찍고 그래야 되니까 뭔가 막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화물차 안에 높이 물건을 쌓아야 하는 작업이지만 사다리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없었다.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뻗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택배 상자를 계단 삼아 쌓고 또 쌓았다. 쌓아 놓은 물건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자 더미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몰아넣고 “잘 쌓지 않으면 네가 다친다”고 무책임한 말만 하는 일터였다.

F: 어... 사람 키... 제 키의 한 1.5배정도? 그 몇 톤 트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아지면 그러니까 손을 뻗을 때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던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던지냐 하면 던질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던져서 그, 그 빠진 구석이 없게 다 던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민한 상황이었던 거는 그거를 잘 못 쌓으면 앞으로 고꾸라져... 실제로 한번 넘어진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쌓지 않으면 네가 다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 사다리는 없고 높은 데를 올라갈 때는 그니까 한 줄을 이만큼 쌓았다고 하면, 다른 줄을 요만큼 쌓은 다음에 이걸 밟고 올라가서 쌓고 이러기도 했어요.

노동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이 예측되는 작업 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구한 터라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알리거나 조치를 취해 줄 직원이 가까이에 있지도 않았다.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은 손쉽게 취약한 단기 ‘알바’에게 전가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알바’ 현상이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단시간과 단기간의 고용 유지와 긴 실업 상태를 반복되는 불안정한 노동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노동자는 직접 고용이 이뤄지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서비스 판매직 일자리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청소년들은 직접고용에서 탈락되어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으로 밀리고 있다. 택배 분류 야간노동은 인력사무소를 통한 단기·임시직 간접 고용 형태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무

시되기 쉽다. 간접 고용은 노동자와 사업주 1:1 구조가 아니라 노동자 1명이 상대해야 할 사업주가 여럿 있는 구조다. 이런 고용 구조에서 나이, 성별, 경험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첩첩 산중을 넘어야 한다.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아보다 지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간접고용 청소년노동자가 늘면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조차 멀기만 한 현실이 더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야간노동 자체를 없애고 불안정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고된 업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적 규율을 동원하는 노동통제 방식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 노동자들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도 절실하다.

열정과 불안은 불태우라...

: 불안의 일상화, 무급의 장기화, 이벤트업체 노동

*정리: 최은실

○ 조사 시기

- 2013년 8월, 12월

○ 조사 방법

- 삐에로 알바 경험을 가진 청소년 H와의 면접조사, 청소년 노동자를 주요 고용하여 이벤트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애로우애드 코리아' 대표와의 면접조사를 동시에 진행

- 이벤트 노동이 신규형식의 노동으로서 장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하고 근무일정이 불안정해 면접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단기간의 이벤트 노동 경험만으로 이벤트 노동의 다양한 문제를 알기가 어려워 이례적으로 이벤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최근준 대표의 도움을 받아 이벤트 노동을 알아보는 면접을 진행.

○ 피면접자 소개

- H(19세, 남, 허진○)는 남들과 똑같은 일, 단조롭고 심심한 일을 거부하는 열정을 갖고 있음. 삐에로 분장을 한 홍보 노동을 연습과정을 거쳐 시작하였으며, 이 일을 1달 가량 계속하고 있었음.

- 최근준 대표(이하 '최근준'으로 표기)는 대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애로우 애드'(Arrow AD)의 싸인 스피닝(sign spinning, 광고판 돌리기)을 접하고 이 일을 시작한 뒤, 현재는 '애로우애드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음.

1. 이벤트 노동의 알바시장으로의 진출

이벤트업체 노동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소수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의 '알바'와 달리 시작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일정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낮은 임금이어도 생활비가 하루하루 필요한 알바 노동자가 진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장시간 매우 낮은 교육비만으로 살아가야 하거나 심지어 무급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벤트 노동이 소위 ‘알바’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 없는 이벤트 행사 보조로부터 시작되었다. 부페 서빙, 웨딩 보조, 각종 행사진행 보조 등 주요한 행사를 보조하는 일을 초간단 업무설명으로 대체하면서 이벤트 노동이 알바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존의 저임금, 허드렛일이라는 인식의 ‘알바’와는 달리 노동강도가 높고 감정노동이 심하지만 깔끔한 사업장, 격식을 갖춘 복장,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노동강도와 감정노동은 기껏 최저임금보다 500원, 1,000원 높은 시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제 이벤트 행사 보조는 청소년들이나 생활이 갈급한 취약한 노동자군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행사 이벤트 보조업무의 알바화로 재미를 본 이벤트 시장은 과감하게 높은 시급을 제시하며 이벤트 노동 중 홍보 이벤트 부분을 알바 시장에 내놓았다. 입간판이 규제되면서 인간간판이 등장했지만, 기타의 홍보 이벤트는 최소한 1달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알바로 대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뼈에 홍보, 퍼포먼스 홍보 등에 있어서 간단한 교육만으로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구인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허울뿐인 문구일 뿐 실제 대부분의 홍보 이벤트는 1달여의 교육이 무급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과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알바 노동자가 상당기간의 무급 교육 및 훈련을 거쳐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말 그대로 ‘우려’였을 뿐이었다.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자 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기꺼이 한 달을 무급으로 버텼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벤트 노동을 하고 싶었던 그들의 ‘열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 이벤트, 그 흥겨움의 양면성

‘이벤트!’라는 어감에서 우리는 특별함을 느낀다. 즐거운 것, 흥겨운 것, 나를 위한 것. 이벤트 노동에 뛰어든 젊은 열정은 그 특별한 것을 제공하는 ‘나’와 우울한 일상에서 나로 인해 즐거워할 ‘당신’을 그리며 한달 또는 그 이상의 배고픔을 참아내고 치열한 이벤트 노동의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이벤트 노동은 매번 다른 업체와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며, 작업 방식도 노동보다는 놀이에 가깝다. 때문에 식상하지 않은 일, 특별한 일, 활동적인 일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청소년 노동자들이 이벤트 노동에 진입하는 주요한 이유는 ‘일이 심심하지 않고, 노동 자체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노동 중 손꼽히게 높은 시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H: 일할 때는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논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이랑. 풍선도 만들어주고,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전 사람들 대하는 걸 좋아해서 되게 좋아요. 놀면서 하고 있어요. (...) 일 시간도 길지도 않고, 6만원 벌려면 12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12시간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저는 일단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랑도 장난 치고, 여러 지역 가보는 것도 좋고

최근준: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벤트 업은 생각보다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데. 애들의 첫 직업이 여기라는 거... 일단 오게 된 루트는 높은 시급 때문에.

하지만 홍보이벤트 노동은 성수기-비수기의 차이가 커서 비수기에는 이벤트 노동만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행사 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짜여지지 않아 생활 안정성, 임금 예측성이 떨어져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홍보이벤트 업체를 차리지 않는 한 홍보이벤트 경력을 통해 다른 일로 발전시키거나 전환하기 어려워 장기간의 무급 교육기간을 거치는 위험을 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동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인지 홍보이벤트 노동의 초기에는 대학생 이상의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음에 반하여 현재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최근준 : 초기에는 청년 창업이다 이런 것에 끌려서 20대 중반들이 많이 왔어요. 20대 중반들이 늘어나다가 점점 청소년들로 변하더라고요. 사실 그 때는 회사에 식구가 2~30명 있으면 미성년자가 한두명 정도? (...) 저희도 원인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5년이 지난 현시점에는 청소년들이 80% 이상이에요. 회사 전체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나간 친구들도 있고, 연습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H: 보통 제일 오래 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1년,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비가 많이 오면 가는 도중에 캔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싫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만두는 이유는 불규칙적인 게 제일 크죠.

3. 홍보이벤트의 노동 조건

이벤트 노동은 그 수행 이벤트에 따라 노동자의 채용방식,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에 면접조사가 이루어진 뼈에로 홍보와 싸인스피닝이 속해 있는 홍보이벤트 분야의 노동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홍보이벤트 노동의 경우에도 업체 상황에 따라 노동환경이나 일하는 방식은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홍보이벤트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간이 무급으로 진행된다는 점, 약 40~45분 노동과 15~20분의 휴식시간을 반복한다는 점, 짧으면 1~2시간에서 길면 5~6시간씩의 이벤트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 업무 일정은 카톡을 통해 공유되며 일정이 되는 사람들이 해당 노동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정이 잡힌다는 점, 따라서 당연히 이벤트 노동의 수요에 따라 노동 일정이나 시간이 매우 불규칙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유사하였다.

1) 작업수행을 위한 필수 교육에 대한 의무 전가

홍보이벤트업을 조사하기로 시작하였을 때, 가정 먼저 궁금했던 것은 이벤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 기간 동안 생활비가 꼭 필요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교육을 유급으로 받는지 무급으로 받는지의 여부였다. 면접결과 이 기간은 무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H가 다니는 회사를 비롯, 다른 뼈에로 이벤트 회사들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지만 모두 무급이었다. 교육 참여가 강제는 아니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실력이 늘면 시급이 높아진다는 ‘당근’ 효과(기대효과)로 무급 조건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H: 처음에 일 시작하면 그 회사에 연습실이 있어요. 연습실 가서 처음에는 걷는 연습을 해요. 못 걸 으니까 걷는 연습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걷는 연습 하고. 그렇게 연습을 1,2주 정도 시켜놓고 걷는 연습과 동시에 풍선도 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부는 것도 잘 안되니까 연습하고. 그리고 분장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좀 된다 싶을 때 실습을 한 번 나가요, 일 시작하기 전에 실습을 한 번 나가서 애 행사 내보내도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때 행사 나가는 거예요. (...) 실습을 할 때는 임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한 번 나가는 거니까. 그냥 임금 받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행사할 때 임금 받고 하는 거예요. (...) 월요일, 화요일이 의무교육이어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에도 행사가 또 있으니까. 연습실 안가고 행사로 바로 나가고. 행사가 없을 때는 연습실 가서 연습할 사람은 연습하고 행사가 없으면 또 쉴 수도 있고. 일단 2시까지 가야 돼요 2시까지 연습실에 가서 늦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욕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 (...) 교육 받는 건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러 가는 거니까 따로 임금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연습을 안 하는 거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요? 혼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연습을 하면은 더 잘해지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연습을 많이 나오면 연습 출석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2시 이전에 와서 연습했다. 스티커 붙이고 그러다 보면 연습 나오는 횟수도 늘어서고 그러다 보면은 임금 올라가는 게(영향이 있죠). 스티커 붙이는 거랑 관계도 있으니까. 연습 나오기만 하는 것보다 잘 나와서 연습을 많이 해서 잘 해야죠. 실력이 올라야 임금도 오르고.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경우에는 교육자체를 회사 내에서 시키지 않고 외부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실력을 쌓은 후 실력이 갖춰진 인재를 취업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육을 유급으로 시키면 교육만 받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회사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연습 기간을 외주화한다는 측면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연습기간 무급화가 회사의 수익성만을 위한 선택은 아닌지 의심된다.

<연습기간은 임금은 없는 거죠?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최근준: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육 받다가 교육비 받고 나가면 저희는 할 일이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생각한 게 교육에 대해 이 친구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가 활성화 되고, 지들이 재미있어서 하다가 돈도 벌고, '저희는 돈 벌러 왔어요.' 그러면 '연습해.' 이게 아니라, '사인 스피닝이 좋으면 즐겨라. 이제 돈도 벌고 싶으면 와라.' 그 때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과거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마땅히 일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일정기간 수습 및 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채용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노동자를 채용할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소정의 수습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점차 고용관계가 다단계화되고 회사의 교육, 인사 등 업무파트가 외주화되면서 사업주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교육비용 자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회사가 다단계화, 외주화될수록 낮은 단계에 있는 회사와 외주화된 회사는 규모가 작아지고, 이 곳에 채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낮아진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회사는 도저히 교육과 훈련에 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니, 스스로의 비용으로 자격을 갖추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 그것이 바로 다단계 구조, 외주화 시장에서 노동자가 살아남는 방법이 되었다. 홍보 이벤트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 회사 내 영업부, 홍보부, 광고부 등에서 소화하던 영역인 홍보이벤트는 홍보이벤트 회사로 외주화되었으나, 상시적인 업무가 아닌 만큼 영세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홍보이벤트 회사는 이러한 영세성과 불안정성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였고, 홍보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무급의 위험을 감수하고 실력을 쌓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2) 높은 노동강도

빠에로 노동의 경우 짧게는 1~2시간에서 통상적으로는 식사시간 포함 6시간까지 이루어진다. 보통 45분 일하고 15분 쉬며, 15분 쉬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쳐 시간당 만원을 받는다. 업체별로 홍보이벤트 노동자의 일의 내용과 파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업무강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일정 정도의 휴게시간 보장은 필수적이었다.

H: 6시간 중에서 한 타임은 밥 시간으로 줘요. 일하다가 6시간 중에 1시간 빼면 다섯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간에 45분을 일하고 15분을 쉬어요. 그게 한 타임인데 그걸 다섯 타임을 하면 일이 끝나요. 두 타임 세 타임 하고 밥 중간에 먹고 이제 두 타임 하면 끝나는 거죠.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경우, 무게감이 있는 광고판을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빠에로 이벤트보다도 활발한 신체 활동을 요한다. 따라서 최근준 대표는 충분한 휴식시간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40분 일하면 20분을 쉬도록 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그만큼 쉬는 시간도 늘어나도록 하고 있었다.

최근준: 40분 하고 20분 쉬어요. 한 시간 마다. (일이) 힘들어요. 사람인데 쉬어야죠. 한 시간 두 시간 짜리(행사)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 하잖아요. 40분하고 쉬면 끝나버리니까.. 그 때는 솔직히 직원이 나가요. 왜냐면 애들을 하라고 하면 어디서 지하철 타고 와 가지고 한 시간 딱 하고 8,000원 받고 집에 가면 하나하나니까. 그리고 한 시간 해도 최소 두 시간 임금은 줘요. 그런데 4시간 이후 6시간 정도 할 때는 쉬는 시간을 늘려요. 30분 30분. 그게 대신 첫 타임부터 들어가고. 30분씩 여섯 번 한다가 규정인 거죠.

3)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시급? 높은 시급 뒤에 숨은 비밀

현재 통상 '알바'로 호칭되는 다양한 노동의 시급이 '최저임금'을 간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홍보이벤트 노동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시급이라고 할 수 있다. 뺨에로 노동의 경우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의 1.9배인 시급 1만원이 하한선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계산상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까지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고 식비도 보장되며, 한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주 만에 정확하게 계산된 임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청소년들은 매력적으로 느꼈다..

H: 임금은 6시간 일하면 밥 시간 한 시간 빼면 5시간이잖아요? 5시간을 일을 하는데 6만원이에요. 가게에서 한 시간 더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만원을 더 받고 한 시간을 더 연장 해주고, 일을 한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밥 시간까지 해서 총 7시간이잖아요? 가서 분위기가 좋거나 해서 연장 하시려면은 절 불렀던 이벤트 회사에 전화해서 한 시간 연장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분들끼리 합의하고, 저한테 따로 월요일에 (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을 오래하다 보면 임금도 올라요. 한 1년 정도 하면 8만원 정도까지 오르고 또 10만원까지 오르거든요. (...)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에 2주 전에 일했던 것들을 2주 후 월요일 날 임금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행사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잦으며 무급으로 계산되는 준비시간, 마무리 시간 등 각종 시간을 감안하였을 때는 홍보이벤트 노동의 시급이 높다고 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H도 높은 시급만을 이유로 홍보이벤트 노동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 (시급만 생각하면) 다들 그만뒀을 거예요. 지역이 멀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인천 가는 데만 2시간이에요. 2시간 걸려 가고, 행사 시작 한 시간 전에 가서 분장하고 옷 갈아 입고 해야 되거든요. 1시간은 진짜 (분장)해야 되거든요. 3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행사하면 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또 오면은 분장도 지우고 해야 되니까. 한 3시간 걸리고 그러면 12시간이에요. 12시간 어디서 일하는 거나 거기서 뺨에로 일하는 거나 받는 돈은 비슷해요. 그거 다 알면서도 뺨에로 하는 게 일단 재미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장난도 치고. (뺨에로 일하는 분들은)다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들 이거든요.

4) 잦은 사고 위험과 안전교육의 부재

높은 뺨에로 다리 위에서 일을 하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탈을 쓰고 일을 하거나 몸만한 광고판을 돌려야 하는 홍보이벤트업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주의점 등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의 사업장의 경우 선배로부터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장비를 잘 정비하는 것 외에는 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야 했다.

H: 기술이 뛰어 나면 안전사고가 덜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높이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사고날 수 있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거나. 교육을 받거나 안내를 받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선배들한테 따로 항상 얘기를 듣죠. 돌 때는 뒤에 얘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해서 뒤를 보고 돌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행사장 갈 때는 행사장 근처 바닥을 항상 보고 바닥이 평평한지 아니면 울퉁불퉁 한 게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건지 그들이 어딘지 이런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 사고가 난다는 건 넘어지거나 그런 건데.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넘어지면 팔뚝이 나가거나 그럴 수가 있대요. 팔뚝이 나갔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원비는 다 치료 해주지만 보통은 안 넘어지게 연습을 다 완벽히 시켜놓고 그러고 내보내거든요. 장비 점검도 항상 하고, 월 화 연습할 때는 행사장에 한 3번 나가면 발판을 또 갈아야 되거든요. 다 찢어져 있으니까 발판도 갈아야 되고. 보통 장비 다 고치고 연습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라. (이런 게) 안전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행사 중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나 반복적인 신체사용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도 관련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적절한 산재교육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준: 어우 다치죠. 애들이 더 많이 다치죠. 손이 찌일 때도 있고. 병원비나 그런 건 다 법인카드 처리. 본인 탔은 절대 없구요. <교육 중간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맨 처음 그거를 읽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친구도 그거대로 쪽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일용직도 산재가 되요? <네. 산재가 되요.>

5) 주요 작업도구조차 자비 구매

뼈에로 노동의 경우 분장도구 및 백분, 풍선은 자비로 사야 한다고 답하였다. 고가의 뼈에로 다리와 의상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지급받은 장비의 정비는 노동자가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기타 뼈에로 분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백분, 화장술, 퍼프, 입술이나 분장에 필요한 색조용품, 기타 분장도구 일체는 노동자가 사야 한다.

H: 분장도구는 자기 거예요. 분장도구는 따로 자기가 사야 돼요. 키다리 장비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분장도구는 자기 거고요, 의상도 회사에서 주니까. 그냥 갖고 다니면서 집에서 빨고. 땀 많이 흘리니까 한 번씩 빨고 (...) 풍선을 줘야 되는데 풍선도 비싸거든요. 계속 사다 보면 비싸서. 저희 회사는 풍선을 줘요. 풍선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도 있고, 별로 지원 안 되는 그런 회사가 많데요. 듣기로는. 근데 저희 회사는 지원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풍선이 부족하거나 장비 뭐가 고장 났다 그러면 회사로 가서 장비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고 풍선 있으면 풍선 공짜로 (...) (분장도구는)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처음에 백분이라고 있어요. 뼈에로 분장할 때 하얗게 바르는 건데. 그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거는 회사에서밖에 못 사요. 어디 화장품 가게에서 팔지 않는 거여서. 화장품

도 아이라인 이런 것도 화장품 가게 안가고 다이소 같은데 가고 그러거든요. 천원 이천 원 싸게 구매 하나까. 스폰지 퍼프 이런 것도 다 구매해가지고 파우치도 사가지고 거기 담아가지고 다니고, 백분 초기 지급 받고 그거 다 썼으면 회사 가서 사야 되는데. 한 이만한 통에 이만 오천 원 정도

백분이나 분장도구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으며, 오로지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다. 그 비용도 고작 시급 만원에 감격해야 할 노동자에게 만만한 비용도 아니다. 백분에 분장도구를 사려면 최소 3만원에서 4~5만원은 든다. 교육기간까지 견디 만큼 오랫동안 일할 생각으로 시작한 뺨에로 노동이지만,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일정에 임금은 안정적이지 않고 생활도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결국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무급교육뿐만 아니라 분장도구까지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초기비용 부담까지... 사용자는 준비된 노동자에게 일감을 줄 뿐, 모두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있었다.

6) 교통비마저 자비 부담

뺨에로 노동의 경우 교통비의 경우 전철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은 자비로 이동하여야 했다. 10여키로에 달하는 뺨에로 다리와 복장, 각종 분장도구를 챙겨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별도의 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교통비마저 청소년에게 물리고 있는 것이다. 식사는 통상적으로 이벤트를 요청한 회사 쪽에서 제공하고, 쉬는 장소는 따로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서 쉬었다.

H: 교통비는 자기가 부담하구요. 인천이나 좀 먼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끔가다 픽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실장님들이. 아니면 이벤트 업체의 실장님들이. 몇 시까지 성북 역으로 와라 이러면은 가서 실장님 차 타고 같이 행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하철 타고 장비 다 들고 가는 거죠.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무겁긴 하죠. 들고 다니기 귀찮기도 하고 (...) 식사 같은 경우는 그 가게 사장님이 사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제가 가서 제 돈으로 먹고 영수증을 받아서 일주일 치를 모아둬요. 그 다음에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이주 전에 일했던 거랑 밥 값이랑 같이 줘요. 식비는 제공돼요.

4. 일용노동, 불안정한 수입과 일정의 일상화

노동자는 임금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과 영위를 위해서 일정하게 정형화된 노동일정과 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일정한 수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정규직 노동을 원하는 것이며, 일정과 수입이 불안정한 일용직을 기피하게 된다. 과거에는 건설업이 일용직 노동을 대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 일용직 노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벤트 노동도 일이 있을 때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벤트 노동의 특성상 이벤트 행사를 요청하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이 발생하는데 일정이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급하게 요청되고 불규칙하다. 그러다 보니, 다음달의 수입이나 일정을 조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상시 대기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때로는 행사를 요청한 측의 사유에 의해 이미 출발한 이후에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날은 아무런 수입도 없이 교통비만 날리고 쉬어야 하기도 한다.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일정과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간의 무급교육까지 견뎌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노동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된다.

H: 단점은 이제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5시간에 6만원이면 진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 시간 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분장 지우고 옷 갈아 입고 이런 거 말해주고, 비가 많이 오면 가는 도중에 캔슬 날수도 있고, 일도 딱 항상 규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가지가 안 좋은 거죠. (...) 6,7월 좀 안되다가 8,9월 잘 되고, 10월 달은 또 바쁘네요. 그 때 가보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투잡을 땔 생각이예요 (...) 개선이 필요한 거는 스케줄이 내일 행사가 있냐없냐 이게 바로 전날에 나오거든요. 안정적이게 평일이면 평일 이렇게 일정이 짝 잡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행사를 그렇게 많이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도 빼에로가 많고 그 회사에도 빼에로가 스무 명 정도 있을 테니까. 행사가 좀 많았으면 안정적이기도 할 테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5. 떠돌이 노동, 분리된 노동

홍보이벤트 노동의 경우 교육 이후에도 연습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 소속만을 둔 채 사업장 밖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 즉, 홍보이벤트 노동은 일용노동일 뿐만 아니라 고용된 사업장과 실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파견형 노동이다. 파견노동의 경우 파견되는 곳의 환경에 따라 경험하게 될 상황과 위험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홍보이벤트는 청소년이 또는 비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이 혼자서 모든 상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무런 문제없이 행사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우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지시·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돌발적인 사고 및 위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일을 하러 온 노동자 혼자서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체사정상 노동자를 한 명씩 요청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 일을 하게 되면, 그 행사장에서 이벤트 업체에 전화를 해요. 그 이벤트 업체에서 빼에로 팀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한 명씩 보낼 때도 있고, 두 명 보내달라면 두 명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혼자 가서 일하는 것 보다 친구랑 둘이 가면 친구랑 놀면서..> 그럼 더 재미있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명씩?> 보통 혼자 가면 나레이터 누나 분이 계셔서 나레이터 누나랑 놀면서 장난치고 춤추고

때문에 애로우애드 코리아의 경우 홍보이벤트를 수행하는 청소년들을 한 명씩 파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혼자 당황스러운 상황을 접했을 때, 부당한 대우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준 : 저희 기본이 혼자서 안 된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부탁할 경우는 직원이 가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조금 서운한 게 있더라도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랑 친한 애들만 가죠. 왜냐면 솔직히 저는 거기 없어서 모르는데, 애들이 부당한 대우 받을 경우를 저도 떠올려보면, 애들이 어릴 때 열여덟 열아홉 때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 사장한테 쉽게 전화는 못하거든요.

6. 열정이 계속되기 위하여

H를 만났던 여름, 6일을 연속으로 일하고도 자신의 열정으로 이룬 뼈에로 노동이 너무 즐거운 H는 피곤할 줄 모르고 내내 신나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힘들고 지친 노동자들과는 달리, 하고 싶은 일을 찾은 H는 생동감이 넘쳤다. 애로우애드 코리아에서 만난 청소년도 지금의 일이 신나 죽겠다는 몸짓이었다. 얼마나 올바른 노동의 모습인가. 면접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들의 열정이 현실에 부딪혀 작아지고 소멸하지는 않았을까?

홍보이벤트 영역의 외주화에 따른 사업의 영세성은 필연적으로 홍보이벤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열정만으로 무급 교육기간을 견디도록 강요하고, 마땅히 사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작업도구의 구매 비용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높은 시급 제공을 구실로 높은 노동강도, 파견노동에 따른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교통비, 행사의 취소라는 위험부담까지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은폐되고 있다. 노동법상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행사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장시간과 준비시간, 분장을 지우는 시간 및 정리시간도 무급 처리되고 있었다. 행사 중 다칠지도 모르지만 안 다치게 조심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안전교육도 없고, 산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당장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다.

어떠한 강력한 열정이 이러한 현실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열정이 소멸되지 않고 보호되고 보장되기 위해서, 이벤트 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도 노동권을 비롯한 인간적 삶과 노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4부

베일 뒤의 그/녀들 : 청소년의 가족배경과 노동경험의 만남

- 일은 빠졌고 '보도'의 유혹은 쏠다

: 탈가정 여성청소년과 노동

- 보이지 않는 음지의 노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의 절박한 노동

일은 빠졌고 '보도'의 유혹은 섰다

: 탈가정 여성청소년과 노동

* 정리: 배경내



- 조사 시기
- 2013년 10월 19일 면접조사

- 조사 방법
- 탈가정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집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을 만나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특히 탈가정 상태에서 주거나 노동 경험에서 더 취약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여성 청소년을 만났음. 면접자와 스토리텔링 수업을 통해 여러 차례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피면접자 소개
- I(18세, 여, 김혜○)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집을 나온 이래, 집으로 복귀했다 다시 집을 나오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였음. 탈가정 상태에서 음식점과 키즈카페, 짧은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1년 반 정도의 탈가정 생활을 접고 난 뒤에는 방송고를 다니면서 청소년기관의 소개로 새로운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음.

1. I의 탈가정과 가정복귀 스토리

I는 7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신 뒤,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았다. 건설노동을 하시는 아버지의 늦은 귀가와 원거리 출장으로 혼자 지내야 하는 일이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I에게 의지가 되었던 건 친구들이었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 줄어들었고, 아버지 없이 혼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아빠가 술을 싫어해요. 근데 엄마는 술을 진짜 좋아했어요. 저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나이트에 갈 정도로. 저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탄 남자랑 막 놀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가 그런 걸 알게 돼서 아빠랑 엄마랑 심하게 싸운 것도 많이 봤어요. 엄마는 술 먹고 떡이 돼 가지고 막 아빠한테 매달리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일곱 살 땐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던 말이에요.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과정은 못 들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땀가 그때 가서야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엄마랑 이혼한 계기가 너네 엄마가 딴 남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자기 좀 놔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라고. <아빠가 일하시는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익숙해요. 평일엔 늦게 오시고 주말에는 낚시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시간을 주로 보냈죠.

그러나 I의 늦은 귀가는 아버지의 화를 건드렸다. 딸을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압박은 아내의 바람이 사유가 된 이혼의 아픔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들어 I의 아버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단속은 I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구속으로 다가왔다. 대드는 딸에게 아버지는 역정과 폭력으로 맞섰다. 빌어도 때리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때리는 일이 계속됐고, 갈등은 깊어졌다. I의 탈가정(가출)은 그 결과였다.

통금 시간이 빠졌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친구네 집에서 자고 싶은 건데 그것도 반대하시고... 제가 그 때는 일찍 일찍 다녔단 말이에요. 밤 8시면 집에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왔다고 혼내고. 그래서 아빠가 날 때리는 것도 남들보다 심하게 때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짜증나고 억울한 거예요. 이웃사람들은 우리 집을 다 아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가 이해할 거라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람들 말대로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짹짹 빌었어요. 근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할수록 더 때리는 거예요. 너무 열 받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잘못 안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맞기만 했거든요? 근데 말 안 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갔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나. 막 속으로 빠득빠득 굶으면서 두고 보자고. (...) 그러다 아빠랑 무지 심하게 싸운 적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짐을 싸고 나와 버렸어요. 처음에는 편안했죠. 이제 내 세상이다, 완전. 그러다 가출을 하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싸우게 됐어요, 아빠랑. 그래서 또 나왔죠. 그렇게 1년 반 동안 반복을 했어요. 중3때 나와서 고1 겨울 때쯤에 끝났어요.

중3부터 고1까지 1년 반 동안 이어진 탈가정의 굴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탈가정 생활의 고단함도 있었지만 I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I의 탈가정 이후 아버지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건설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I와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돕는 촉매 구실을 했던 것 같다.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너를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고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득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잘 해주다가 또 다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들으니깐. 아빠가 욕하고 그래서, 다시 화가 나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빠한테 또 설득돼서 또 들어오고... <지금도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없어요. 정신을 차렸으니깐. <아버지가?> 아니 제가. <아버지도 정신 차리셨네.> 아빠가 가끔씩 욕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빠한테 마인드 컨트롤이 생겼어요. 또 아빠가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병이 있어요. 간질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길가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병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주기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엑스

레이 찍고 약값하고 그러면 120만원이 넘게 들어요. 아빠가 한 두세 번 저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너는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고, 자식 두 명은 키운 기분이라고, 남들보다 돈이 두 배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빠한테 잘하라고. 그런 게 미안하기도 하고 것도 있고... 아빠랑 저랑 둘이 서로 마음을 잘 표현 못한단 말이에요. 표정만 막 안 좋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깐 진짜 내가 아빠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가출하고 돌아오게 된 제일 큰 계기가 갑자기 아빠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성격인데, 갑자기 아빠가 많이 아프대요. 아빠가 갑자기 치아가 주저 앉았대요. 아빠가 걸으로는 그렇게 성질 내도 치아도 주저앉고 아프다고 하니까. 좀 뭐랄까. 걱정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됐죠.

탈가정과 가정복귀를 반복하는 동안, I는 학교도 그만두게 됐다. 여성 청소년에게 '가출' 경험은 '성적 문란함'과 연결된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는다. 요즘 여성 청소년에게는 '조건(조건 만남의 줄임 말로서 성매매의 한 형태)했다'는 낙인이 대표적이다. I도 탈가정 이후 출석을 제대로 못한 사이 '조건 했다'는 소문이 고등학교까지 따라올라와 결국 자퇴서를 내게 됐다. 탈가정 경험, 특히 여성 청소년의 탈가정 경험을 대하는 사회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것이 오히려 탈학교, 탈가정을 더욱 강화시켰다.

중3때 담임이 좋은 분이셨어요. 어떻게든 졸업은 하라고 그러셔서... 집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중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하기는 했어요.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됐는데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내가 조건을 한다, 막 뭐다, 애들이 이리길래 화가 나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출을 했죠. 아빠는 학교 다녀라, 다녀라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2. I의 탈가정 이후 생활

1년 반 동안의 탈가정 시기 동안, I는 친구나 아는 사람 집을 몇 군데 옮겨 다니며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I의 경우는 아무 연고도 없이 탈가정을 결행하는 청소년들보다는 조건이 좋았다. 아버지와 둘이 사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네 집에서 I를 받아들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친구네 집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다. 친구와 친구네 아버지께 많은 신세를 졌지만, 탈가정 이후 가장 큰 주거문제가 해결되었던 덕분에 I의 방향(?)은 덜 좁고 덜 외로울 수 있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어 의지도 되었다.

처음으로 가출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알던 친구가 아빠랑 사는 게 그렇게 짜증나면 차라리 나와라,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네 아버지도 집에 와 있어도 된다고 하시고. 처음에는 아빠한테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걱정되니까 안 나갔는데... 가출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1년 6개월을 방황하면서 산 건데, 가출은 할 게 안 돼요. 아파도 아무도 몰라줘요. 아파도 아무도 몰라주는 게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아픈 게 제일 힘들었어요. 춥고, (...) 친구네 집에 있다가 친구랑 저랑 둘이 동시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때가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추워 미치겠는 거예요. 빌라 옥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나마 따뜻하다고 갔는데, 계속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대리석 같은 바닥이니까 찬기가 확 올라오고... 야, 우리 어떻게든 따뜻하네 가 있자. 여기 저

기 계속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아는 오빠가 혼자 산대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너무 부러먹는 거예요 진짜. 자기네 집이라고 진짜! 설거지, 자기가 먹은 건데 막 우리가 설거지하고, 진짜 눈치 보면서 지내고, 그 오빠 잘 때 우리도 자야 되고. 우린 더 놀고 싶은데, 우린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데, 그 오빠는 오토바이 배달을 해야 되니까 빨리 자야지 다음날 또 배달을 하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고 몰래 나오다가 욕먹고...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가 친구네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집에 가겠다'고, 잘못했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친구네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같이 와라.' 그래서 '아빠 고마워. 갈게, 빨리 갈게.'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제 친구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저처럼 가출하고 다녀서 아버님도 잘 아시니까. 만약에 여기 없으면 다른 데로 갈 걸 아시니까. 그래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친구네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개네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희는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개는 기초수급자란 말이에요. 아버님이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셔서 대리운전을 하세요. 벌어봤자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애다가 가스도 끊긴 상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 돈 받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근데 계속 제 친구랑 뭐라도 사먹으라고 주시는데... 정말 미안했어, 진짜.

<그 친구네 집에서 살 때에 찢겨진 아니지만 내 가족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겠네요?> 네. 많죠.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없는데 옆에서 친구가 의지해주니까. 정말 그게 제일 고마웠어요. 친구가 자해를 했거든요. 커터 칼, 유리병 상관없이 그냥 그었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주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할 때, 서로 막 도와주니까.

부모님의 통제가 싫어 집을 나왔지만, 집 바깥의 삶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 좋았지만, 그 자유는 곧 무료함으로 다가왔다. 주거와 생활비의 불안정 문제도 절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됐다.

가출하고 정말 막 살았죠. 오토바이도 훔쳐서 타고, 배고프면 훔쳐 먹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랑 같이 배고프면 슈퍼에 가서 몰래 훔쳐먹고 집에 와서 핸드폰 만지고 티비 보고 그러고 있다가 자다가 또 나와서 오빠들하고 같이 술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아침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놀다가 아침에 해 뜨고 나면 또 자고, 그리고 저녁에 또 일어나고 그랬죠. 가출을 하고 나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억압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누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 그러다 친구랑 지나가는 길에 카드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이런 거 쓰면 안 좋다 했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해보자. 그래서 빼빼로를 하나 사서 구입을 해봤어요.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용카드인가 봐!' 그래서 계속 썼죠. 걸렸어요. 이틀 만에. 80만원 썼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패딩도 막 사 입고 그랬거든요. 그게 법인카드였어요. 물건 다 빼앗기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보호관찰 받고 그랬죠.

<가출 경험이 뭔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됐던 게 있었나요?> 네. 다시는 그 길 안 가면 되니까.

츨고 배고픈데 왜 먹을 거리와 잠자리가 제공되는 쉼터에는 가지 않았을까? | 역시 쉼터가 통제가 심하고 낯선 이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쉼터를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랬던 I도 집을 나온 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후배들에게는 쉼터를 권한다고 한다. I가 실제 쉼터를 경험했더라도 후배들에게

쉼터를 권했을지는 알 수 없다. I의 쉼터에 대한 신뢰는 최근 만나고 있는 이동쉼터 교사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맺음이 쉼터를 억압의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요즘엔 후배들이 '언니, 나 집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한심하고 대책이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제가 쉼터를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야, 너 쉼터가 진짜 편해. 따뜻해. 밥 주고 따뜻하고 컴퓨터 할 수 있고. 이보다 최적화 된 곳은 없다. 가라. 나 몇 곳 아는데 보내줄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애들은 싫어해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렇겠죠. 거기 있는 애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킬 것 같다고 겁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랑 동지라고, 더 좋아할 거라고... 선생님들이 따박따박 따지면서 왜 가출했냐, 어서 집 들어가라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절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보호해줄 거라고, 네 말을 들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꼭 들어가라고.

3. 뻥센 알바, 잦은 이동, '보도'의 유혹

I는 탈가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겨우 닭갈비집에서 서빙을 시작할 수 있었다. I는 당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시급 5천원(2012년 당시 최저임금은 4,580원이었다)을 받으며 두 층으로 된 식당의 계단을 오르내렸다. I는 고작 시급 5천원을 받았으면서 '시급이 셋다'고 말했다.

고1때 같이 가출한 친구랑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막상 알바를 하려고 하니깐 청소년증이 필요하다 하고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부모동의서도 들고 오라고 하고... 근데 저는 가출한 상태니까 부모님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와요? 청소년증을 어디서 구하고... 학생증을 만들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낸 건데... 그래서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강남에 있는 닭갈비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손님이 오면 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2층으로 음식을 올리는 기계가 하나 있었어요. 주방 쪽에. 근데 하필 고장이 난거예요. 다 들고 날랐어요. 물을 막 다섯 통씩 가지고 가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일했어요. 거기 시급이 셋거든요. 오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90만원 받았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복장을 입고, 형편이 여유로운 어머니들을 상대하며 키즈카페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다.

키즈 카페에서도 일한 적 있어요. 거긴 완전히 영유아였던 말이에요, 신생아. 기어 다니는 애들. 제가 앞치마, 샬라라를 안 좋아해요. 근데 앞치마도 레이스 있는 거, 핑크색으로 입히고. 옷은 와이셔츠인데 목에는 리본 달려있고... 정말 싫었어요. 거기에 애기들이 침 흘리고... 어머니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트가 깔려 있어서 음식 반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매트에 묻으면 그게 잘 안 지워지는 소재라서 이유식 반입이 안 되는데, 어머님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유모차 막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바퀴 세 개 달린 거, 애기랑 엄마랑 마주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어머님 이 유식 반입 안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애가 더럽다는 거야? 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잦은 사업장 이동에 대해 흔히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서’, ‘참을성이 없어서’에서 이유를 찾곤 한다. 탈가정 상태에서 생계고가 컸을 텐데도 1가 일을 자주 그만두었던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 서비스업종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나, 사업주가 청소년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쉽기 않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걸 참아낼 만큼 높은 시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찾아 계속 두리번거리며 노동시장을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다.

닭갈비집도 두 달인가 일하고 그만뒀고, 키즈카페도 너무 열 받아서 거기도 한 달 하고 그만뒀어요. <생활이 어려웠을 텐데, 일을 자주 그만뒀네요?> 진상인 손님이 진짜 많거든요. 주점 떠는 손님. 이거 시킨 거 맞는데 아니라고 막 뭐라고 그러고. 술 취한 손님 특히. 소주병을 막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도, 아 정말 웃는 얼굴로 ‘네네’ 그래야 하고. 키즈 카페도 사장님이 짜증났어요. 애기들 있으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고. 뽀뽀 닦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닦았는데 또 아니라고 막 그러고. 핑크색 레이스 입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려고 하니 짜증밖에 안 나고. 정말 화가 났죠. 애기들 침 흘리는 거 잘 안 닦이더라고요. (...) 막 툭툭 쏘듯이 애기만 안 하면 장기간으로 할 수 있어요. 지는 안 하면서 막 시키기만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짜증나는 거죠. (...) 아무래도 어리니까 좀 깔보는 게 있죠. 그런 게 많았어요, 깔보고 그런 것들. 돈도 제대로 안주고 애들이 뒷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는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나 노래방 도우미와 같은 성서비스 산업 쪽에 솔깃해지곤 한다. 1의 경우도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친구와 함께 속칭 ‘보도를 뒀 적’ 있다. ‘돈이 궁하니까 그냥 알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올 것 같아서’였다. 하루에 2~30만원을 벌 수 있는 고수익 직종이었다. 그러나 1은 ‘그것도 할 게 안 돼서’ 딱 5일간 일하고 도망치듯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빠져 나왔다.

다시 가출하고 나서 그 친구네 말고 다른 친구랑 지내고 있었는데요. 진짜 너무 돈이 궁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진짜 못 살겠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 알바를 했어요. 주민등록증 사서. 그 친구가 예전에 한 번 일한 적이 있다고, 진짜 돈이 궁한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돈이 궁하니까 그냥 알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올 것 같다고 해서 했죠. 하루에. 2-30만원은 기본. 근데 그만큼 쉽게 번만큼 쉽게 쓰더라고요. 약세사리랑 그런 거 사고, 먹을 거 먹고, 방 잡고 하느라 다 쓰더라고요. 달방을 구하긴 구했는데, 월세가 안 된다고 해서 하루 자고 하루 돈 내고 하래요. 하루에 4만원씩, 5만원씩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할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 노래방 도우미였어요. 좀 잘사는 사람들이 저희를 데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방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어색한 거예요. 막 어른스러운 옷 입는 것도 어색하고, 느긋느긋 소개해주는 것도 어색하고, 아저씨들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러는 것도 어색하고, 노래 불러주고 술 받아먹는 것도 그렇고. 스킨십도 있으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한 5일 일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실장님이란 사람이 접대

라나 뭐라나 막 씨부리면서 술 진탕 먹이고,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취하는데 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먹어서 토할 것 같은데 계속 먹이고, 그래서 관뒀어요. <사정이 급한 청소년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다른 일 해서 하루에 어떻게 2,30만원을 벌어요? 저희한테는 큰돈이죠. 돈은 벌어야 되고, 그 일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사정이 급한 친구들은 바로 바로 돈이 생기니까 좋죠. <그만둘 때 못 그만두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집을 안 보내줬어요. 방을 잡아줄 테니까 여기서 생활하라고 방을 정해줬거든요. 잠깐만 우리 옷 좀 사고 오겠다고 한 다음에 도망쳤죠. 그리고 나서 전화 겁나 왔어요. 너희들 장난 치냐고? 죽여 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스팸 차단하고 수신거부하고 그랬죠.

4.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I는 여전히 아르바이트가 필요했다.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아버지의 건강악화, 그리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립의 확보가 I가 아르바이트를 계속 찾게 되는 이유다. 또래들의 비교나 평가에 민감한 청소년 문화로 인해 ‘꼴리지 않기 위해’,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기도 하다.

아빠가 용돈을 주긴 주셨는데, 아무래도 내가 사고 싶은 게 많으니까 모자라죠. 그리고 지금은 아빠한테 돈을 안 받거든요. 가끔 1,2만원씩 받는 거 이외에는 안 받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돈 꾸면 다 갚아야 되요. 알바를 시작해서 돈을 받아가면 아빠가 사채업자예요. 내놓으래요. 저번 달 얼마 빌려간 거 내놓으라고. ‘알았어. 줄게.’ 그러면서 갚고... 저는 평일에는 쉬고 주말에만 수업 들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학교 다니면서 알바 하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알바 하러 가고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뿌듯하긴 한데 몸이 두 배로 힘든 거죠. <조금 덜 쓰고 그 시간에 공부에 전념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거 사면 또 다른 거 사고 싶고. 그렇다고 어른들처럼 메이커 안 따지고 막 입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메이커에 민감하니까. 남들은 다 비싼 거 입고 하는데 나만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웬지 나만 소외된 기분? 꼴리면 안 되니까.

특히 I는 아르바이트로 고정적 수입이 생기면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직접 번 돈으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 준다는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뿌듯함을 가중시켰다. I가 일방적 양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둘의 관계도 좀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솔직히 알바 안 했을 때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을 때는 (두 손을 모으며) '아, 아빠. 나 얼마만...' 이러면서 요구를 했던 말이에요. 아빠가 요즘에는 '너 돈 필요 없어?' 그러면 '나 있는데? 필요 없어. 나 아직 쓸 돈 많아. 괜찮아.'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용돈 받을 때는 짜바짜바, 돈 있을 때는 당당하게 '필요 없어. 됐어.' 아빠 눈치도 덜 봐요. 내가 가끔씩 알바비 받으면 아빠한테 웃도 사주고 그러니까. (...) 아빠가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시거든요. 제가 (담배) 피니까 아빠도 피고 싶대요. 그러면서 담배

를 안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제 담배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돛대인데... ‘아빠, 뭐야? 담배 안 핀다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티비 재밌네.’ 이러면서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열 받아서. <아빠와의 관계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좀 특별하네요?> 그렇죠. 남들은 같이 담배 피우지는 않잖아요? 자식 담배 빼어가는 부모는 없잖아요? 얼마나 특별해요? 자식 담배 돛대 빼앗아가는데... 가출했을 때는 제가 별로 연락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연락을 하니까.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화를 내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아빠가 화를 내고. 제가 아직 병이 있잖아요. 간질... 아빠는 아직도 걱정이예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서. 그래서 연락 안 받으면 정말 많이 화내요.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일정한 수입은 I에게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허락된 관참은 일자리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일자리들이 수도룩하다.

일을 구하려 해도 자리가 별로 없어요. 편의점하고 패스트푸드점이 끝.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돈 더 적게 받잖아요. 정말 짜증이 나요. 깎을 게 어딴다고. 4,86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더 까요? 웨딩홀 같은 데도 일당으로 주기는 하는데 일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년에는 5,210원이라면서요? 그때까지 꼭 일할 거예요. <시급에 대한 기대가 소박하네요?> 안되니까... 뭐 제가 6천원 이상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로 많이 받아본 게 5천원. ‘보도’는 한 시간 하고 3만원씩 버니까. 노래 몇 번 불러주고 술 잔 몇 번 받아주면 끝이니까. 그러다 보니 ‘보도 뭘까’(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도우미 할까) 하는 유혹이 생기고... 여자애들은 배달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면허 있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등 노동법 기준을 알고 있고 구제절차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근데 올해 부천에서 그 닭갈비집이랑 똑같은 브랜드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음식 억압받는 것도 많고, 사장님도 그렇고, 시급도 진짜 짜게 줬거든요. 4천5백 얼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하긴 했죠. 막 끝나는 시간인데도 아직 다음 사람이 안 오니까 조금만 더 해달라고 막 그러고, 분명 일이 끝났는데 계속 일하게 하고, 시급은 짜고...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했어요. 그래서 결국 관됐죠. 3, 4주 일하고. 그 때는 몰랐어요. 노동, 막 그런 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고 이를 빠득빠득 같았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얼마 이상을 더 줘야 된다면서는요? 그것도 못 받고 억울하죠. <노동법을 어긴 걸 알았는데 돈 받으려 안 갔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한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일했던 출석 기록 같은 거. 제가 그런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주는 돈만 받고 끝냈죠.

I의 경우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버스(부천역 광장으로 매주 한 번씩 찾아가는 이동쉼터)와 인연을 맺고, 그곳의 소개로 여성청소년 인턴십센터 <새날에오면>과 여성청소년의 자립훈련매장인 <커피동물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I는 청소년들, 특히 생활비가 급한 탈가정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 매일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위한 ‘일급제 아르바이트’ 창출이 절실한 이유이다.

닭갈비집에서는 월급으로 받았고, ‘보도’나 새날에서 일했을 때는 일급으로 받았어요. 월급으로 받을 때는 자리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30일 동안은 그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집 나온 친구들은 특히 막상 써야 하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하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일급 주는 데가 필요해요. 쉼터나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일급 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새날에 오면’ 같은 곳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시급 5천원에다가 하루 일급으로 돈을 주니까.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은 벌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거기 있는 게 규방공예 바느질이라고, 베이커리랑 켈트랑 소원팔찌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목도리 짜는 것도 생겼대요. 하루 6시간씩 정해져 있고, 30일을 다 채워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좋죠.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올해 처음 알았어요.

는 인턴십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일급제로 받았다가 최근 자립훈련매장에서 일을 할 때는 월급제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1에게는 이제 ‘예상 가능한 안정적 수익’이 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탈가정 기간 동안 수입이 불안정했을 때의 고단함,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더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때문이다.

일정한 시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저는 8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 하면 지치는 것 같아요. 쉽게 벌면 돈도 헤프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알바하는 곳도 일급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는다 했어요. 월급으로 받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돈 쓰기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일을 빠 빠지게 해서 번 돈이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바리스타 과정 거치고 있는데... 처음엔 커피집 차려놓고 가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커피 내려주는 게 멋있겠다,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신 메뉴도 계속 개발해서 손님이 ‘아 여기 다시 와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노력이니까. 그럴 자신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네요. 가출해서 수입이 들쭉날쭉 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불안정한 것보다 안전한 게 좋으니까. 월수입이 계속 다르면 헛갈리잖아요. 뭐 이 날은 거지처럼 있다가 이 날은 괜찮다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부모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탈가정을 선택하는 혹은 가정 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누적 탈가정 청소년만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약 1만명, 나머지 19만 명은 어디에 있을까? 탈가정 이후 또래들과 새로운 ‘대안가정’을 꾸리는 청소년도 있고,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도 있고, 홀로 달방을 떠도는 청소년도 있고, 여전히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도 있다. 부모와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도 있고, 더 이상 돌아갈 집과 부모가 없는 청소년도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도 있다. 어찌 됐든 청소년들이 탈가정 이후 곧장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와 생활비 문제다. 탈가정 청소년들마다 처한 조건과 욕구가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는 집을 나오자마자 ‘사는 게 다 돈이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찾아 나서지만, 높은 문턱에 걸려 진입도 못하거나 저임금, 무시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험을 한다. 먹고 살아가 하기에 절도로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성산업과 같은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탈가정 청소년들의 주거 지원 확대와 함께,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등 노동 지원 정책도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 확대, 생활비가 급한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급제 운영 등의 정책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음지의 노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의 절박한 노동

* 정리: 김성호

○ 조사 시기

- 2013년 9월~10월

○ 조사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노동자 2인에게 현재의 노동 경험, 이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 미래의 계획 등을 인터뷰하였음. 특히 소득이 공개되는 것이 가족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음.

○ 피면접자 소개

- J(18세, 남, 송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며, 16세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음. 치킨집 등에서 배달아르바이트를 주로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 홀서빙 등의 경험도 있음. 어머니와 17세, 14세, 4세의 동생 3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음. 아버지는 최근 병원에서 나왔지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 K(17세, 여, 이수○).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이며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오빠가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며, 오빠와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기존에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으며, 지역 공부방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청소년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중노동, 모욕과 폭력과 같은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상당히 확산되어있다. 배달 일을 하고 있는 J만 하더라도 대개 배달노동 청소년들의 처지와 비슷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가 끝난 뒤 6시부터 밤 11시, 12시, 새벽1시까지 '목숨 걸고' 배달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J의 일상이다.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난 경험도 여러 번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에 그나마 시급이 센 배달 일을 계속한다고 한다. 수고했다며 근로계약서도 노동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문서로 악용된 경험도 갖고 있었다.

J: 일단 판 데보다 시급이 세요. 그리고 시간도 잘 가고. 위험은 한데. 오토바이 타는 것도 재미있고.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타다 보면 질리고 이제 안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하기 싫을 때 있어요. 일하다 사고 나서 면허 정지되고, 도로특례법 위반인가? 그걸로 재판도 받기도 했어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목숨 내놓고 안타도 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니까 빨리 다닐 수 밖에 없는 거고.

야간수당이에요? 수고했다면서 몇 천원 더 얹어주시거나 치킨 구워서 가족이랑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돈을 얼마 더 주겠다고 얹어주는 건 없어요. 더 나쁜 건 돈 가끔 때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돈 계산하다가 돈 가끔 계산 안 할 때도 있어요. 원래 받던 것보다 한 5만원, 10만원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원래 달라 해야 되는데. 제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손해 보더라도 돈 몇 푼 가지고 싸우고 싶지는 않고.

계약서가... 사고 나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처음에 저도 비비큐 일하다 마지막 나갈 때. 제가 일했던 거 다 돈 받으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나간 거는 50% 깎는대요. 제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안 읽어봤으니까. 제 실수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것만 달라고 받고. 다 자기네가 유리하게. 차라리 사장한테만 잘 보이면 사고 나면 다 처리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때 성실하게만 하고 그러면 사장님이라도 관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일하는 종업원인데 손님들이 반말을 막 해요. ‘야, 이거 가져와 봐라.’ ‘야, 맥주 한 잔만’ 막 이러고. 아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학생이고 해도 초면이고 일하는 거고 직원하고 손님 사이인데.

그럼에도 J와 K처럼 기초생활 수급자¹⁸⁾ 가정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다른, 좀더 특별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이들의 노동은 음지에 가리워진 대표적 노동이다.

1. 꼭꼭 숨겨진 노동, 꼭꼭 숨겨진 노동권

불충분한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구성원들은 추가적인 생활비 마련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한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이들은 행정기관의 감시가 닿지 않는 일자리를 찾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찾은 일자리는 보통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비공식 노동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정의 감독에서 벗어난 사업장의 노동조건은 당연히 열

¹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이 제도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④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이용 대상자(수급자)로 선정된다. 수급자가 되면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급된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수준이 불충분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불충분한 급여수준으로 인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급가정의 경우 이리저리한 비공식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악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부당한 내용이 끼어들기도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그나마 소득이 높고, 작업 환경이 좋다고 입 소문이 나있는 업체들은 4대 보험 가입을 규정해놓은 곳이 많아 이들 수급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J: 제가 수급자여서 통장으로 받으면 기록이 뜬다고 현찰로 주실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봐요. 사장님이 보통은 다 해주시는데... 이름값 있는데 있잖아요? 000피자나 그런 데는 안 해주세요. 근데 또 000피자 같은 데는 (4대 보험을 안 들면) 일을 또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험을 들면 (소득이 잡히니까) 우리 집의 수급자격이 박탈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¹⁹⁾ <같은 아파트 수급자 가정 친구들도 알바를 많이 하나요?> 네. 지금도 많이 해요. 대부분 배달. 여자애들은 서빙.

이렇게 얻게 되는 임금이 수급가정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급가정 청소년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수급가정의 청소년은 나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에 따른 절차를 회피해달라는 요구를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맺어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더욱 왜곡되거나 여타의 근로계약보다 더 침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수급가정의 청소년은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한 대가의 노동이 아닌 왜곡되고 침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감내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J :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면 나라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장으로 안 받고 현찰로. 그래서 한 달치를 받으면 액수가 많으니까 이제 가져오기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주급으로 가져오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다 현찰로. 친구들은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돈을 쉽게 모으고. 부럽긴 해요. 돈 잘 모으는 애들 보면. (...) 제가 가치관이 이랬어요. 나는 일주일 살이다. 그래서 별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로 데이트 비용도 하고 살자...

나의 노동을 숨기면 결국 나의 권리도 숨길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 줄 알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 신청을 포기한다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이를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못하기도 한다. 산재나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수급자임에도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걱정해 억울해도 권리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¹⁹⁾ 보험을 들게 되면 소득이 밝혀지게 되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를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해당 소득을 현금 급여액에서 공제 후 지급하게 된다. (예: 4인가구의 가구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은 319,089원).

<2014년 최저생계비 및 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현금급여기준	488,063원	831,026원	1,075,058원	1,319,089원	1,563,120원	1,807,152원
물급여기준	115,340원	196,391원	254,060원	311,731원	369,402원	427,071원

2. 생활을 위한 일자리의 절박함

이렇듯 상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행정의 감시망을 피해야 한다는 위축감에도 불구하고 수급가정의 청소년들은 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제를 통해 지급받는 생계급여의 수준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턱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통신비, 교통비부터 시작해 가정의 다른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이들 청소년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J의 경우,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였다가 어머니가 녹내장으로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조건에서도 수급비에 기대어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만큼 J에게 일자리는 절박했다. K도 빚까지 갚으면서 수급비를 쪼개고 쪼개서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J : 오토바이 배달했죠. 수급자인데 생계비가 나와요. 아빠가 알코올중독이어서 병원 갔었는데 지금 나왔어요. 병원에 들어가게 할 돈도 없고. 들여보내 달라고 해도 안 들여보내주고.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제가 3살 때부터 맞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엄마도 때리고?> 네. 아빠 옛날에 동생한테 칼도 휘둘렀어요. 눈 옆으로 이렇게 딱 콧혔거든요. 식칼이. 제가 동생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가운데 딱 콧혔어요. 동생이 그 날부터 막 바지에 오줌 싸고. 다 큰 애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수련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기저귀도 차고 다니고. (...) 그러다가 제가 나이 좀 먹고 힘이 좀 생긴 거죠. 아빠가 엄마 먹살 잡고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잡고 밀었죠.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치료 좀 받아 보라고 그랬죠. 아빠한테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정상인데. 효도하기 이전에 아빠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십 몇 년 동안 이려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눈 실명됐다고. 녹내장 걸려가지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녹내장 걸려서 왼쪽 눈 실명됐어요. 오른쪽은 시력 계속 떨어지고. 시신경이 죽어서 눈이 자꾸 감기거든요. 눈이 썩는대요. 그래서 눈을 빼고 의안을 끼는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돈 필요한데 수술할 돈이 자꾸 쓰일 테가 있으니까는 계속 안 모이고. (...) 아빠가 계속 술 먹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는데도 안 열어줘요. 근데 아빠가 병원 안 가니까 생계비가 깎였어요. 거기다 또 나라에서는 엄마한테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연결해줘서 자격증 따러 다녔죠. 요리. 그래서 자격증 2개인가 땀어요. 엄마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일을 나가는데..... 유치원에서 애들 봐주는 일 하세요.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는 잘 몰라요. 엄마가 번 돈이 40만원이라 치면 생계비에서 그걸 빼고 수급비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불만인 거예요. 아빠가 살아있어도 일하지도 않고 벌어들이지 않고 하는데. 엄마가 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거기다 또 아빠가 있다는 거 때문에 생계비도 다 깎아 버리고. 되게 빠듯하고 생계비가 깎인 이후로 생활비도 없고 관리비 같은 것도 밀리고 핸드폰 요금도 밀리고. 핸드폰도 밀렸다고 정지한다고 나오고 두 달 정지 당했었어요. 요금 못내 가지고 이번에도 못 내면 또 정지 당하고. 거기서 엄마가 용돈 주는 거예요. 사실 용돈 받으며 살고 싶죠. (...) 엄마가 돈이 너무 없어서 저한테 빌렸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할머니 병원 때문에 서울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그래서 막 엄마가 힘들어 하기는 해요.

K :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한 번에 확 할 수 있는 알바가 필요해서,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 알바 하면 많이 줘야 4,500원? 이렇게 받으니까. 못해도 5,000원씩은 받아야 가정에 도움이 되니까. 주말 알바. 술집. 횡집. 이런 데만 찾았어요. 근데 학생이라 맨날 거절당하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 끝나고 공부방

선생님들이 차린 작은 반찬가게에서 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요. (...) 솔직히 집에 (수급제도로) 한 달에 딱 받는 돈은 이만큼인데. 막상 빚 나가고. 메울 거 메우고 그러면 남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쪼개고 해서 쓰는 게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다 제가 돈을 더 보태면 엄마도 좋고 저도 편하죠. 엄마가 맨날 돈 아깝다고 걸어 다니세요. 회사를. 다리도 안 좋은데. 엄마 카드 충전도 제 돈으로 하려고 해서.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수준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비판이다. 제도의 적용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계측방식도 다양한 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은 현재 전물량방식(Market Basket)²⁰을 택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필수품 선정에 있어 정작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이 배제되고 있으며, 그나마 선정된 필수품에 대한 비용도 터무니없이 낮기만 하다. 가족단위 외식은 3개월에 한번씩 24,000원 한도 내에서 해야 하고, 남성셔츠(반팔)는 1만원 수준의 제품이 4년의 내구연한으로 정해져 있으며, 책은 1년에 1권(9,823원), 영화는 1년에 1회 수준으로 정해놓고, 여행은 월 3천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²¹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절박함은 수급권의 보호와 추가 소득의 필요성 사이에서 안 전망 없는 외출을 타게 만들고, 이웃과의 불신과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을 낳기도 하며, 때로는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재로 작용되기도 한다.

K: 통장 아주머니가 가끔 집에 쓰레기봉투 주러 오세요. 그러면 집에 오빠가 있든. 누가 있든 니가 꼭 받아라. 통장 아주머니한테 오빠 있는 거 보여주지 말라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어서 토지공사에서 준 집인데. 거기는 이 집에 저랑 엄마랑 저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소득은 없어도 한 명 더 산다고 그러면 뭐냐고 조사 같은 거 할 테니까. 그런 거 피하려고...

3. 숨겨진 권리 속에 내일의 길을 잃어버리다

결국 개인적인 생활비와 가정의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음지의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생활환경은 미래를 위해 딛고 일어서기 위한 단단한 디딤대가 아닌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의 늪이 되기도 한다. 그들에게 차분하게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고된 노동이라도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²⁰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²¹ 김미곤 외,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K: 좀 힘들어도 많이 주는 웨딩홀이나 고기 집 같은 데 하고 싶어요. 그냥 좀 힘들어도. 제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제대로 안 서서...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면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직업을 갖고 싶은 것은 없고. 지금은 그냥 그거죠. 돈 많이 주는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우리 학교는 진짜 취업이 잘되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집안 환경 보면서 자란 게 있으니까. 저는 공부 같은 거 빨리 접고. 기술 배우고 가야 뭐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공부는 댔고 일해야죠.

힘든 현실 속에서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고자 해도 수급가정의 청소년에게 그에 필요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제공되는 정보의 일부는 부정확했으며, 내일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은 넘지 못할 벽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꿈이 있어도 현실 안에서만 꿀 수 있는 구겨진 꿈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J : 여자친구가 치어 리딩 하거든요? 스타킹 대회 가서 1승하고 미국에 가서도 1등 했더라고요. 최근에는 일본 갔었거든요? 책도 냈구요.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뭐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쫓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장난을 쳤어요. 여자친구는 국가대표. 남자친구는 국가대표 배달 이려고. 되게 쪽 팔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던 말이에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쌤한테 말해서 저도 실용음악과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노래는) 많이 듣고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일단 좀 전문적으로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데.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 그 쌤이 저보고 너는 (잘 하니까) 솔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음악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더 있었어요. 화이트 해커, 컴퓨터 보안팀 일하는 건데 해커 잡는 해커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경찰 같은 역할인데. 그게 뭔가 멋있는 거예요. 구청에 말해보니까 (거기도) 정확히는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전 고등학교 졸업 하고 바로 취업 나가고 싶어요. 대학교를 가면 전문대 가고 싶어요. 일반대 말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 파고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야죠. 직업학교에서 용접도 배우고 싶었어요. (...) 용접도 다 다른데요. 고급 기술 같은 경우는, 바다 속에서 배 용접 한 번 하면 천만 원 이천만 원 번다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 되게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다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비용 적게 들고 돈 안 드는 걸로. 지금은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악하고... 악기 배우는 게 아니니까 돈이 적게 들 것 같아서... 구청에서 만약에 그거(용접교육) 된다고 하면 같이하고...

K: 가끔. 저희 과 축제라고 하는데. 그 때마다 졸업했던 언니들이 와서. 그 중에서 좀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간 언니들이 얘기를 해줘요. 언니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고. 다 똑같아요. 공부 되게 잘하고. 전교 10등 안에서 이렇게 골라 간대요. 학교가 되게 취업 그런 거 많은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돌아가면서 많이 말씀해주세요. 너네 출결 좋아야 회사에서 뽑아간다. 아프더라도 학교에 왔다가 가라고 말씀하시고. (...) 저는 공부는 맨날 중간이에요. 컴퓨터 쪽으로 왔으니까 취직 하기는 쉽겠죠, 어디든. 근데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건 아니에요. (...)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장난 식으로 막 '삼성 가야지. 삼성 말고 회사가 어디 있냐. 깝해야 LG지.'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그런데 가서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고졸 사원으로 들어가면 처

음에는 대졸 사원의 돈의 몇 분의 몇? 반? 그 정도를 받는대요. 고졸 사원이 4년 정도 일하면 대졸 사원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대요.

4. 절망의 사다리를 걷어낼 수 있을까

열악한 수급제도와 숨겨진 노동은 청소년 노동자의 미래의 꿈까지 움아매는 절망의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현재의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소박한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당장 어머니의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한 J에게도, 빚을 갚느라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어머니가 한 푼도 집에 돈을 가져오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는 K에게도 미래는 불투명하고 고단해 보였다.

J : 저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도움 받는다고 저희가 끝까지 도움 받아서 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건데. 나중에 되면, 제가 결혼했을 적에 그 때는 제가 알아서 벌어서 수급자는 폐자, 다시 수급자가 되잔 말자. (...) 어떻게 해든 살 것 같아요. 일해서. 뭘 일을 하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직업에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거나라도 해서.

K : (엄마 수입이) 저번에 들은 게 한 달에 80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뿔려 있는 구멍이 많아서 매우 느라고 한 푼도 못 받아온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정식적으로 학교에서 취업을 나가게 되면 꿈이 크죠. 첫봉 받으면 집에 있는 빚 다 갚고. 꿈이 되게 커요. 첫 월급 받는 그 순간에 꿈이 되게 커요. 근데 그것도 알바를 해서 채워질 만한 액수가 아니니까.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정직원을 해야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알바 될 생각 하고 있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나가는 돈을 다 메우고, 나가는 돈을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들이 이 절망의 사다리를 걷어내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 또는 부당한 노동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고단함을 지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마련이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생활하며 노동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 고민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심리적 지지를 통한 안정, 자존감의 회복 등을 얻게 되기도 한다.

J: 초등학교 때 장난치다가 (...) 제가 자살하는지 알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멘토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어차피 아빠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담 받아야 됐었고. 그래서 그 상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좋았지 않았나.

K : 일하면서 불이익 받은 거나 어리다고 안 좋다고 보고 그런 것들 말할 수 있는 선생님. 전문 상담사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가서 툭 털어 놓을 게 있어야 되니까. 한창 그럴 나이고.

또한 청소년 노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내외의 기구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출석요구를 한다거나 청소년 노동자와 사업주를 아무런 대비 없이 대질조사를 하는 등 비청소년의 진정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 고등학교, 교육청, 청소년 상담소, 청소년·노동단체 등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없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센터에는 상담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²²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K : 아니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는 해요. 취업 얘기... 알바나 그런 거에 불이익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한 번도 하는 것 본적도 없어요. *〈학교 밖이라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죠. 되게. 보면 알바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일하는 가게 점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니네도 나이도 어린 게 나와서 돈 받아먹고 일하고 있으면 제 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편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득노출 등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동관서나 관련기관에 진정,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에 조회, 통보 등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5. 노동, 복지, 지역 공동의 과제로

기초생활수급가정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노동측면의 과제로만, 혹은 복지측면의 과제로만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1차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병행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노동관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사건처리 절차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연대를 통해 빈곤과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의 상담과 일자리 알선, 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에서의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단체에서의 적극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지원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다.

K: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공부방으로 와야죠. 아니면 학교 상담실에 가야 되는데 학교 상담실은 예약을 잡고 가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공부방 와서 선생님 한 분 잡고서 얘기할 거 있다고 하면 다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공부방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되게 대답도 그거에 맞고 쑥쑥 집어서 해주시고. 고민이 있으면 그냥 공부방으로 와야 될 것 같아

²²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쉽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225곳 중, 지난 3년간 1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곳은 20곳으로, 나머지 205곳의 신고현황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감자료)

요. (지금 일하는 곳은) 공부방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반찬가게인데. 작은 가게인데. 선생님들도 다 아는 분이고 하나까.

J: 성당에 계신 분이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 한 달에 10만원씩 저 용돈 쓰라고 2년 동안인가 지원을 해주셨어요. (멘토 상담은) 6학년이 딱 끝나면 이제 그 때부터는 안 나오는데 쌤이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가정 청소년의 노동은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노동행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 등 복합적인 고려와 공동의 과제가 필요하다(물론 비청소년의 노동도 그렇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복지정책의 방향과 제도의 설계, 노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노동감독, 관계의 고립과 파괴를 보듬고 치유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등이 그것일 것이다. 노동과 복지와 지역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 또 실천하는 과정이 매우 절실한 현실이다.

십대 '밑바닥 노동'에 응답하다

- 토론 1 |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대안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 2 | 공공부조와 노동의 줄다리기 (김운영, 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 청소년의 노동
- 토론 3 | 주거권과 노동권의 사이에서(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탈가정 청소년과 노동

토론 1 |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대안

*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확산

엄밀히 따지면 청소년 노동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이전에도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시급제 형태의 시간제 노동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청소년 노동자는 해고, 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청소년 불안정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의미에서의 비정규직에서 더 나아가 간접고용, 특수고용이 청소년 노동자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전에는 사용자와 청소년 노동자 간에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하에서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물을 사용자가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을 청소년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청소년 노동자의 지위가 더욱 열악해지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면서 간접고용, 기간제, 특수고용의 불안정노동이 새로운 일자리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 즉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전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의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부재로 인한 청년 실업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자리에도 청소년보다 조건이 좋은 노동자가 물리는 현실이다. 예컨대 청소년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성인 남성이 차지하고 청소년 노동자는 더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턴제라는 무급노동이 청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청소년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2. 달라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정책과 집행 부재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새로운 양상을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여전히 ‘학습권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근로감독 강화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사업주 교육을 하더라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무급 인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무급인턴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하에서는 노동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수고용 하에서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며

무급인턴 역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도 마찬가지다. 성인, 그 중에서도 주로 남성을 노동자로 상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3. 대안

가.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고 불안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편견, 정치적 힘의 결여 등의 이유로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과 더불어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주변인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전체 불안정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즉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고 불안정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청소년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에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①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 상 사용사유제한조항을 신설하고, ② 직업안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간접고용 규제의 입법화를 추진하며, ③ 같은 맥락에서 파견법상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제로 전환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사용자사업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며 ④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시 세액 공제, ⑤ 정규직 중심의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을 전면 실시하여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① 근로기준법 등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② 파견법 및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 주체 및 신청기간, 비교대상을 확대하고, ③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④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⑤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기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도 추진해야 한다.”²³

나. 청소년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을 제한하고 불안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면서 동시에 당장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소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소년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가 청소년육성의 하나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언급하고 있고 동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에 근거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분열을 가져 오거나 도리어 청소년 노동자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²³ ‘한국의 노동구조와 비정규직 개혁과제’, 고영국, ‘사람과정책’, 2011. 참조

1)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 보호는 주로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조항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변화하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게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형식적이다. 한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이 있기는 하나 동법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라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청소년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에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장치, 특히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파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청소년인 경우 사용자업주 간에 직접고용 의제 조항 마련, 파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청소년인 경우 사용자업주의 무과실 책임, 청소년이 노동자인 경우 차별시정 신청 주체에 노동조합 등 포함, 청소년이 노동자인 경우 각종 사회보험료 면제, 청소년의 무급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 간의 분열이나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개별 노동 법령 보다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독일처럼 청소년노동자보호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무별로 노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청소년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무는 특정이 가능하다. 서비스(식당,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호텔 등), 배달, 택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업무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별로 노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안전조치, 건강 및 보건조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압박을 취하는 행위, 인권적 차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치 등 업무(작업)별 청소년 노동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²⁴ 여기에 더 하여 배달대행 시 해당 업체의 사용자 책임, 택배노동 시 야간노동 금지, 호텔서빙 시 호텔의 사용자 책임, 이벤트 노동 시 교육 시간 근로시간 간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일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3) 괜찮은 일자리 제공

규제와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는 경로를 보면 결국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실무경험과 일자리에서의 기술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은 국제 개발이나 과학기술 등과 같은 전문화된 영역에서 청소년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여름 근로체험 활동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임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공공부문 고용주,

²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이경상 외 4, 2011. 11.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비영리 단체 등이 15세에서 30세까지 학생들에게 여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캐나다 청소년 센터가 여름 동안 청소년과 고용주를 지원한다”²⁵. 우리의 경우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에 청소년도 포함되지만 그 중 위기청소년(‘학교 중도탈락이나 가출, 폭력, 학대/범죄 피해, 성매매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만 해당된다. 이외에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관철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주를 지원하는 대신 청소년이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확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금지 업종을 포함하여 그 업종이나 업무가 청소년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야간노동 등은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와 근로기준법상 사용금지업소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연소근로자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및 ‘아동 근로 보호에 관한 명령’은 무거운 중량(항상 7.5kg을 초과하거나 때때로 10kg을 초과)의 운반·이동,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 아닌 작업 성과와 작업 속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를 잊게 만들고 고용금지 업소에 일하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청소년 노동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확대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²⁵⁾ 이경상 외 4 앞 논문. 제96쪽

토론 2 | 공공부조와 노동의 줄다리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 청소년의 노동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

우리나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제 1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법 제 4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모든 이들은 최저생계비만큼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충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상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세한 조항들로 이 권리를 제한한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다. 아니면 ‘추정소득’이 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1) 가족의 사적 부조를 중심에 둠
- 2) 강한 노동 강제를 갖고 있음

이번 수급가정 청소년 인터뷰 결과를 통해 이 두 가지 특징 모두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최저생계비와 비현실적인 제도의 결과가 이들의 삶에 일으키는 영향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낮은 최저생계비

- 현행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03,403원, 4인 가구 기준 1,630,820원이다. 소득인정액²⁶이 0원일 경우 최대 현금급여는 1인 가구 488,063원, 4인 가구 기준 1,319,089원 이다. 최저생계비는 그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져왔다. 98년 제도시행 초기 97년 계측조사 결과는 평균소득의 40%정도였지만 210년에는 30%정도로 떨어졌다.
- 낮은 최저생계비는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한국의 빈곤선 자체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수급가정 청년들에게 수급비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는 동시에, 탈수급의 기준은 낮으나 이것이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 수급권과 소득의 관계

-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소득이 잡히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당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공제제도가 2012년부터 생겼지만 청소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생 근로소득공제의 이용 실태에 대한 결과보고는 아직 없지만 이것이 수급가정 청년들의 노동을 양지로 끌어내는데 많은 성과를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휴학을 하면 추정소득이 부과되는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낮은 복지 수준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을 하게 되면 낮은 복지급여마저 박탈당하거나 훼손될 딜레마에 처해 있음.

3) 가족부양의 원칙

- 공공부조는 가족의 문제와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K의 경우에도 함께 사는 오빠의 존재를 숨겨야 했고, J의 경우에도 진로나 본인의 고민에 대해 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망에서 해소하고 있다. 비단 수급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중산층 및 상류층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정작 가족간의 상호 부조를 가장 강제 받는 이들은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능력을 갖는(가졌다고 판단되는) 즉시 가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추정소득, 가구 밖으로 나갔을 때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통한 간주부양비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²⁶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이기 때문에 소득 혹은 간주된 소득을 제외하고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에는 노동소득뿐 아니라 친척이나 지인 등에 의한 정기적인 사적 부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등의 실제 소득이 아니더라도 추정하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 한 가계의 상황은 마법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실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일제조사를 통한 최근 3년간 수급탈락 가구의 1년 내 수급재진입확률은 11%에 이른다. 즉, 열 가구 중 한 가구가 탈수급 후 1년 만에 다시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조사 없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크겠지만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기초생활수급 내에 머무르기엔 노동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하기엔 가족들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노동의 권리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 이런 문제들은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한다. 빈곤층은 비공식 노동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과 멀어지게 되고, 불안정성 심화시키는 것임. 청소년 혹은 수급가구 노동가능연령층 구성원의 노동이 비공식 노동,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노출되는 것을 통해 이런 경험이 어떻게 지속될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 흔히 이야기하는 인구학적 의미의 ‘근로 능력층’이 아니더라도 수급자들에게 노동의 욕망은 존재한다. 부족한 수급비의 한계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폐지를 주었다고 수급비를 깎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도엔 권리는 없고 모욕만 남는다.
- 수급자에게 노동할 권리는 단지 ‘자유롭게 일 할 권리’ 이상일 것이다. 지향과 관심을 반영한 일자리, 건강 등을 위해받지 않을 환경, 적절한 임금, 나의 조건에 맞는 노동 시간·종류 등. 이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인간의 권리를 구성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게는 ‘일 하거나 제도 밖으로 나가라’는 회초리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노력은 빠져 있다. 이는 ‘자활을 돕는다’는 법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빈곤문제, 사각지대를 반복하는 일 이다.
-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받을 권리(기초생활보장권) 확대와 제대로 일 할 권리(노동권)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둘은 서로 침해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동반 상승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두 가지의 권리를 충돌시키고 있으며, 이는 노동능력에 대한 낙인(도덕적 해이, 복지병, 부정수급 등)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이후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기초생활보장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은 바로 이를 시사한다. 근로능력 유무로 검열 받고 재단 당하는 공공부조는 시혜적 성격을 끊어낼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권리 보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토론 3 | 주거권과 노동권의 사이에서

: 탈가정 청소년과 노동

* 변미혜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거리에서 청소년들과 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는 거리로 나오면서 거리의 친구들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면 삶의 대안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꿈꾸며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러나 ‘알바’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이 있었지만 ‘노동권’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 친구들은 이미 거리로 나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노동은 무슨 의미일까? ‘땀을 흘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라 정의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이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이었고, 또 다른 절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였다.

○ 탈가정 청소년의 상황과 노동 현실

여러 이유로 집을 나오게 된다. 이 친구들의 집을 나오게 되는 과정은 이미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 되었기에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생존을 위한 탈출이고, 외로움의 끝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삶의 대안이고, 어떤 이에게는 자립의 시작이었다(물론 십대의 자립은 선택인 경우가 거의 없다.).

당연히 얼떨결에 시작된 십대 친구들의 자립(?)은 꿈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겨우 일을 구할 수 있더라도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은 24시간 후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겨우 오늘 밤 잘 곳을 구하는 것이 그 날의 최고의 목표일 수 밖에 없다.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월급’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라?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다. 나이 차별, 학력 차별로 일자리는 근처도 가지 못한 채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겨우 근처에 가게 된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는 부모동의서, 보건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미 집을 나오는 순간 불가능한 서류들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들은 서비스업?!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이 친구들의 심리상태는 이를 견디기에 한계를 곧 만나게 된다. 하루하루 불안정한 상황과 일상... 녀 다운이 되고 만다.

그렇데 몇 끼를 굶거나 거리에 나 앉게 되는 일은 쉽게 일어난다. 그런 친구들에게 무서운 위험과 위기의 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게 된다.

○ 차별 속의 차별

거리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라고 그들의 노동 경험을 일반화하기가 또 어렵다. 어려운 근로환경 중에서도 이들은 또 다른 차별, 성차별에 놓이게 된다. 거리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와 여자 청소년의 경우가 또 다르다. 물론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그 모든 일자리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겠지만, 거리에서 만나는 얼마 되지 않는 선택의 순간에서, 그녀들은 또 배제되어 버린다.

탈가정 청소년 중 여성 청소년이 거리에서 겪는 고통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진다. 폭력 속에서 더 커다란 폭력을 만나게 된다.

츄고, 배고프고, 씻고 싶고, 피로한 몸을 둘 곳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성매매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어려워진다. 배가 고프고, 실 곳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15만원 고수익(?)의 일자리는 유혹적이지 않을 수 없다. 폭력상황에 노출된 일. 쉽게 돈을 번다고? 그들은 그 돈을 쉽게 써 버리고 싶다. 쉽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그렇게 써 버리고 마는 것이다.

거리에 나오는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만나게 되는 것은 고작 1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어느 순간 이들은 '폭력'을 '노동'으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

십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를 과연 어린 친구들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의 성을 사는 어른들, 그런 행위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사회 자체가 폭력인 것이다. 아무런 보호 없이 성매매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던 날... 그 순간이 이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순간이며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감추기 어려운 순간이 되어버리게 되었다.

○ 거리에서 만나는 사회적 자원들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보호시설을 거부하는 청소년이 늘자 이들의 욕구에 맞춰 일시쉼터, 문지마쉼터, 이동쉼터, 거리아웃리치 등 다양한 노력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20만명의 탈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그 노력이 너무 미비하며 때로는 사업이 한시적이어서 이제 홍보가 되었다 싶으면 그 활동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도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동반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막상 거리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러한 정보조차 만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 사회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고 있다. 가출팸, 친구집, 거리의 어른 등은 보호시설 보다도 더 많이 이용되어 지고 있으며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피해는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미비한 자원에서도 탈가정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작년부터 시도된 '새날에 오면 인턴십센터'는 이들의 현실에 맞춤형으로 단기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날에만 연락하면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고, 일급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매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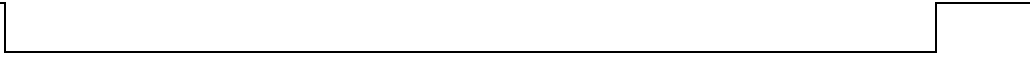
이 친구들의 활동시간에 맞춰서 야간시간에 바리스타 아카데미를 운영한 '십대여성자립매장 커피동물원'도 탈가정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개별 단체의 고군분투하는 노력과 실험들이 있기에 그나마 아주 적은 수지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들의 협력 속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20만 명 중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이다.

○ 탈가정 청소년의 노동.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 탈가정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와 폭력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인턴십, 단기형 일자리, 청소년 자립매장, 청소년자활지원센터 등)과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개별 단체들의 단편적인 시도들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와 기업, 개별 단체들이 협력해야 가능할 것이다.
- 돈벌기 뿐만 아니라 거리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일자리 연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거리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탈거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각종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 또한 특별히 탈가정 청소년들의 안정된 노동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형태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획일적인 모형으로만 보호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의 노동정책과 연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MEMO



MEMO

